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제 I 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및 기능

제1장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및 기능	3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5
2. 추진 목표		6
3. 연혁		7
4. 지원 근거		8
가. 법적 근거		8
나. 사업 대상자		8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9
6. 추진 체계		9
가. 추진 체계		9
나. 추진 체계도		10
다. 추진 기관 역할		10
7. 추진 절차		14
가. 사업 추진 업무 흐름도		14
나. 사업 대상자 지원 업무 흐름도		15
8. 적용 범위		16



제Ⅱ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운영안내

제1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19
1. 사업 개요		21
가. 사업 목적		21
나. 법적 근거		21
다. 지원 내용		21
라. 지정 주체		22
2. 사업수행기관 운영관리 체계		22
가. 인력 관리		22
나. 인력의 안정적 운용		24
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30
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직 운영		32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운영		33
가. 사업목적		33
나. 사업대상자		33
다. 서비스 제공		33
4. 세부사업내용		35
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35
나.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건사업		42
다.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45
라.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50

5.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영	54
가. 재정관리 총칙	54
나. 예산 지원	54
다. 예산 편성	54
라. 예산 집행	57
마. 결산 보고	64
6. 종사자 교육 및 성과관리(안)	65
가. 종사자 교육	65
나. 성과 관리(안)	66
7. 행정 사항	67
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고체계	67
나. 개인정보 보호 준수	67
다. 행정사항 및 일정	68

제2장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69

1. 사업 개요	71
가. 사업 목적	71
나. 사업 목표	71
다. 추진 전략	71
라. 사업운영 방향	72
마. 법적 근거 및 정책	72
바. 연혁	75



2. 사업 운영관리 체계	77
가. 담당 인력 관리	77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수)	79
다. 지역자원과의 연계	82
라. 멘토링 제도	83
3. 사업 내용	85
가. 계획 수립	85
나. 사업 대상자	85
다. 대상자군 분류 기준	86
라. 대상자군별 서비스 내용	87
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제공 과정	89
바.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92
사.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94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97
5. 행정 사항	99
가. 주요 일정	99
나. 성과 평가	99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100
라.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01
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 집행	101

제Ⅲ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서비스

제1장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105
1. 사업 목적		107
2. 사업 대상		107
3. 사업 운영		107
제2장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113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15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116
3.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교육 안내		117
제3장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119
1. 사업 목적		121
2. 사업 운영		121
3. 제공서비스		121
제4장	권역재활병원	125
1. 사업 목적		127
2. 법적 근거		127
3. 사업 대상		127
4. 권역재활병원 운영현황		128



제5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29

- 1. 사업 배경 및 목적 131
- 2. 법적 근거 131
- 3. 사업 대상 132
- 4.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정 현황 132

제6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133

- 1. 사업 목적 135
- 2. 법적 근거 135
- 3. 사업 대상 135
- 4. 기타 참고사항 136

제7장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139

- 1. 사업 목적 141
- 2. 사업 개요 141
- 3. 장애친화 산부인과 기능 142

참고 자료 143

서 식 281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제 I 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및 기능			
제1장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및 기능			
10	다. 추진 기관 역할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① _____,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기획 ● 신설	다. 추진 기관 역할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① _____,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및 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운영 지원 ※ 관리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용 추가
제 II 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운영안내			
제1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21	다.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년(4년차 지속 지정여부 심의하여 결정)	다.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년(4년차 재지정 심의 이후 지속 지원 여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 * 매년 모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성과평가 실시 * 단 정책변경, 현장지도감독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중도 해지 가능	내용 변경
23	2) 업무종사자 자격기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은 자격증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단, 지역상황에 따라 인력채용공고 3회 이상 공고시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경력3년)로 채용하고, 채용후 3년 이내에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후 사회복지사 1급	2) 업무종사자 자격기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사(1급)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며, ※ 단,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시 지역상황에 따라 인력채용공고 3회 이상 공고시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으로 경력 3년 이상 이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채용가능	내용 변경 * 사회복지사 자격 추가 * 의료사회복지사 채용기준 완화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으로 경력 3년 이상이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채용가능																																		
24	나. 인력의 안정적 운용 1)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정부기조와 부합되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하도록 노력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관계부처 합동, '17. 7. 20.)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이며, 민간위탁사업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적 업무가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됨	나. 인력의 안정적 운용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기조와 부합되게 공공부문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작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 참고 - 인적속성이나 업무·직무 특성 고려	내용 변경 및 추가																																
25	2) 종사자보수(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편성과 운영 (종사자 보수총액) <연차에 따른 기본급 최저 기준표> <table><tr><th>근무기간</th><th>1호봉</th><th>2호봉</th><th>3호봉</th><th>4호봉</th><th>5호봉</th><th>6호봉</th></tr><tr><td>기본급 (봉급)</td><td>2,713,180원</td><td>2,943,770원</td><td>3,026,190원</td><td>3,117,430원</td><td>3,161,070원</td><td>3,250,650원</td></tr></table>	근무기간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기본급 (봉급)	2,713,180원	2,943,770원	3,026,190원	3,117,430원	3,161,070원	3,250,650원	2) 종사자보수(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편성과 운영 (종사자 보수총액) <연차에 따른 기본급 최저 기준표> <table><tr><th>근무기간</th><th>1호봉</th><th>2호봉</th><th>3호봉</th><th>4호봉</th></tr><tr><td>기본급 (봉급)</td><td>2,781,000</td><td>3,017,360</td><td>3,101,840</td><td>3,195,360</td></tr><tr><th>근무기간</th><th>5호봉</th><th>6호봉</th><th>7호봉</th></tr><tr><td>기본급 (봉급)</td><td>3,240,090</td><td>3,295,180</td><td>3,377,560</td></tr></table>	근무기간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기본급 (봉급)	2,781,000	3,017,360	3,101,840	3,195,360	근무기간	5호봉	6호봉	7호봉	기본급 (봉급)	3,240,090	3,295,180	3,377,560	내용 변경 및 추가
근무기간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기본급 (봉급)	2,713,180원	2,943,770원	3,026,190원	3,117,430원	3,161,070원	3,250,650원																													
근무기간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기본급 (봉급)	2,781,000	3,017,360	3,101,840	3,195,360																															
근무기간	5호봉	6호봉	7호봉																																
기본급 (봉급)	3,240,090	3,295,180	3,377,560																																
25	<table><tr><th>수당의 종류</th><th>지급액</th></tr><tr><td>가족수당</td><td>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td></tr></table>	수당의 종류	지급액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table><tr><th>수당의 종류</th><th>지급액</th></tr><tr><td>가족수당</td><td>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td></tr></table>	수당의 종류	지급액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	내용 변경 및 추가																								
수당의 종류	지급액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수당의 종류	지급액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																																		
33	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직 운영 ● (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내 관련 부서들과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의료서비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기능적 협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상황에 따라 중앙장애인	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직 운영 ● (병원) 작동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내용 추가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보건의료센터와 협의후 팀구성 및 업무 조정 가능 - 내용추가	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 내 공공부문 또는 공공의료본부 조직 산하에 배치·연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 등을 위해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공공의료본부 등) 필수보건의료 협의체(원내 및 원외)에 적극 협조									
34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운영 라. 신설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운영 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및 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활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상자 및 사업관리, 관련 기관 연계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회 서비스 정보시스템(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홈페이지(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www.nrc.go.kr/hmpd/main.do) 활용 *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사용자 매뉴얼 등 시스템 사용 관련 추가 안내 예정	내용 추가								
36	4. 세부 사업내용 3) 사업구성 <table><tr><th>구분</th><th>사업내용</th></tr><tr><td>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td><td>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운영</td></tr></table>	구분	사업내용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운영	4. 세부 사업내용 3) 사업구성 <table><tr><th>구분</th><th>사업내용</th></tr><tr><td>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td><td>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활용</td></tr></table>	구분	사업내용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활용	내용 변경
구분	사업내용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운영										
구분	사업내용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활용										
39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 의료정보플랫폼운영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사업 내용</td><td>• 내용 추가</td></tr></table>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내용 추가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 등 <u>사회 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및 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활용</u>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사업 내용</td><td>• <u>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 보건관리시스템 및 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상시 업데이트</u></td></tr></table>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u>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 보건관리시스템 및 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상시 업데이트</u>	내용 변경 및 추가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내용 추가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u>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 보건관리시스템 및 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상시 업데이트</u>										
43	②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임신준비 및 임신한 여성장애인으로 분만후 6개월까지	②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임신준비 및 임신한 여성장애인으로 분만후 6개월까지(유·사산포함) * 단, 담당자의 종합적 판단하에 필요시 분만후 1년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내용 추가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50	라.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4) 사업 구성	라.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지원 4) 사업 구성	내용 추가 * 타 진료과 진료 연계 등 내용 추가										
	<table><tr><th>구분</th><th>사업 내용</th></tr><tr><td>진료, 재활 의료 서비스</td><td>④ 신설</td></tr></table>	구분		사업 내용	진료, 재활 의료 서비스	④ 신설	<table><tr><th>구분</th><th>사업 내용</th></tr><tr><td>진료, 재활 의료 서비스</td><td>④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td></tr></table>	구분	사업 내용	진료, 재활 의료 서비스	④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		
구분	사업 내용												
진료, 재활 의료 서비스	④ 신설												
구분	사업 내용												
진료, 재활 의료 서비스	④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												
56~ 57	5.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영 ④ 예산과목 및 내역	5.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영 ④ 예산과목 및 내역	내용 삭제 및 추가										
	<table><tr><td>운영비 (210)</td><td>관리 용역비 (15)</td><td>• 신설</td></tr><tr><td>유형 자산 (430)</td><td>자산 취득비 (01)</td><td>•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신규 개소 센터에 한해 지원) ※ 신설</td></tr></table>	운영비 (210)		관리 용역비 (15)	• 신설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신규 개소 센터에 한해 지원) ※ 신설	<table><tr><td>운영비 (210)</td><td>관리 용역비 (15)</td><td>• 전산운영 등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동안 외부 민간 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용역</td></tr><tr><td>유형 자산 (430)</td><td>자산 취득비 (01)</td><td>•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 인건비 제외한 사업비의 5% 내에서 배정 가능</td></tr></table>	운영비 (210)	관리 용역비 (15)	• 전산운영 등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동안 외부 민간 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용역	유형 자산 (430)
운영비 (210)	관리 용역비 (15)	• 신설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신규 개소 센터에 한해 지원) ※ 신설											
운영비 (210)	관리 용역비 (15)	• 전산운영 등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동안 외부 민간 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용역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 인건비 제외한 사업비의 5% 내에서 배정 가능											
64	신규 작성	7) 자산관리	내용 추가										
제2장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73	1. 사업 개요 2) 정책 • 국정과제 47-2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확대	1. 사업 개요 2) 정책 •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실현(복지부)	내용 변경										
76	바. 연혁 내용추가	바. 연혁 2023 : 5th CBID(Community Based Inclusive Development) AP Congress 개최(캄보디아)	내용 추가										
78	2. 사업 운영관리 체계 가. 담당 인력 관리 ② 재활전담인력 • 교육이수(선택)	2. 사업 운영관리 체계 가. 담당 인력 관리 ② 재활전담인력 • 교육이수(필수)	내용 변경										
80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수) 4) 구성 •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재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 기관, 장애인 단체, 지역의사회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 팀장, 담당 자로 구성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수) 4) 구성 •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재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 기관, 장애인 단체, 지역의사회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 팀장, 담당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무 담당자로 구성	내용 변경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81	7) 회의수당 ● 회의 참석위원에게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	7) 회의수당 ● 회의 참석위원에게 1일당 <u>최대</u>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	내용 변경
82	다. 지역자원과의 연계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연계	다. 지역자원과의 연계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연계 (<u>필수</u>)	내용 변경
87	3. 사업 내용 라.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 지역센터가 지정된 지역의 보건소 CBR사업은 대상군별 필수 서비스를 운영하되, '22년 지정된 (경기 북부, 충남, 전남)의 보건소는 '23. 1월부터 대상군별 필수 서비스 운영	3. 사업 내용 라.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 지역의 보건소 CBR사업은 대상자 군별 필수 서비스를 운영한다.	내용 변경
89	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제공 과정 	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제공 과정 	내용 변경
99	5. 행정 사항 가. 주요일정 내용 및 일정 변경 ※ 신설	5. 행정 사항 가. 주요일정 내용 및 일정 변경 ※ 23년 성과(정성, 정량) 평가 예정 : 보건소 운영 점검 실시	내용 변경
100	나. 성과평가 ● (실적기간) 2023. 1.1. ~ 6.30.까지 ● (보고방식) 공문에 의한 수기 제출 ● (보고기한) 2023년 5~7월(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성과평가 ● (실적기간) 2023. 1.1. ~ <u>12.31.까지</u> ● (보고방식) 공문에 의한 수기 제출 ● (보고기한) <u>2024년 1~4월(상세일정 추가 안내 예정)</u>	내용 변경
101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내용 변경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내용 변경	내용 변경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제Ⅲ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서비스			
제1장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108	<참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현황	<참고 1> 장애인 건강검진서비스 운영개시 기관 <참고 2> '24년 상반기 건강검진 서비스 예정기관 <참고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 공공보건 의료기관 현황	내용 변경
제2장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115	가. 사업개요 중증장애인이~	가. 사업개요 장애인이~	내용 변경 * 사업 대상 확대
116	가. 사업개요 중증장애인이 ~ 다. 사업지역 삭제	가. 사업개요 장애인이~	내용 변경 * 사업 대상 구체화 및 사업지역 확대
제7장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141	● 지원현황	● 지원현황 세부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서식			
제1장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289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내용변경
291	<서식 2> 일반정보 등록	<서식 2> 일반정보 등록	내용변경
292	<서식 2-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등록/관리	<서식 2-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등록/관리	내용변경
297	<서식 5> 상담기록지	<서식 5> 상담기록지	내용변경
298	<서식 6>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서식 6>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내용변경
300	<서식 7-1> 서비스 계획	<서식 7-1> 서비스 계획	내용변경



페이지	2023년	2024년	비고
302	<서식 7-2> 서비스 제공기록지	<서식 7-2> 서비스 제공기록지	내용변경
304	<서식 8> 세부서비스 제공기록지	<서식 8> 세부서비스 제공기록지	내용변경
306	신규	<서식 10>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	추가
328	신규	<서식 14>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계획	추가
330	신규	<서식 15>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록지	추가
332	신규	<서식 16>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추가
제2장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404	<서식 2> 상담기록지	<서식 2> 상담기록지	내용변경
409	<서식 4> 재활기록지 Ⅱ	<서식 4> 재활기록지 Ⅱ	내용변경
416	<서식 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평가지	<서식 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평가지	내용변경
434	<서식 10> 경과기록지	<서식 10> 경과기록지	내용변경
435	<서식 11>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서식 11>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내용변경
436	<서식 12>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사후관리 기록지	<서식 12>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사후관리 기록지	내용변경
439~440	<서식 13-1, 2>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 II	<서식 13-1, 2>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 II	내용변경
441	<서식 13-3> 서비스 회송서	<서식 13-3> 서비스 회송서	내용변경
450	신규	<서식 15> 비대면 건강보건관리서비스 평가지	추가
451	<서식 16>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종결지	<서식 16>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종결지	내용변경
452	신규	<참고> 사례관리 시 참고 서류	추가

제 I 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및 기능



제1장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및 기능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5
2. 추진 목표	6
3. 연혁	7
4. 지원 근거	8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9
6. 추진 체계	9
7. 추진 절차	14
8. 적용 범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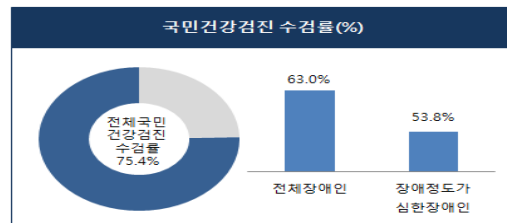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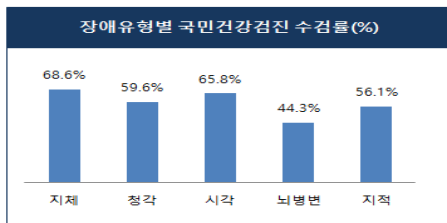
제1장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및 기능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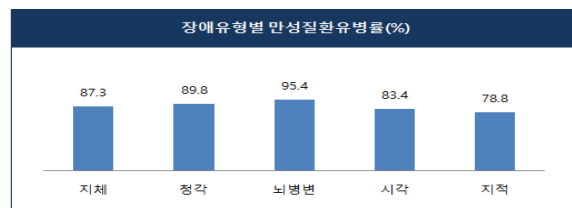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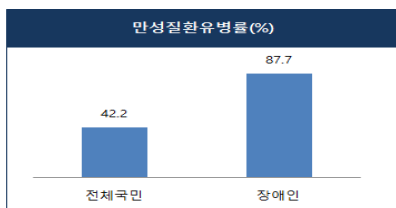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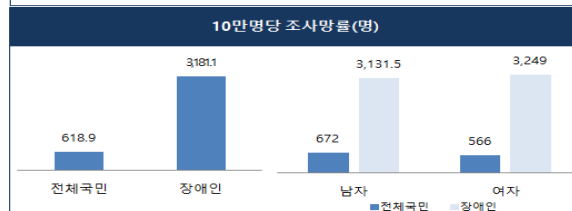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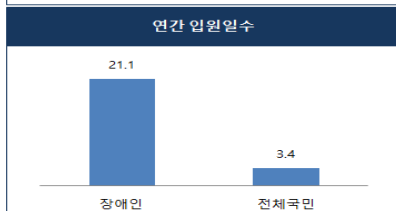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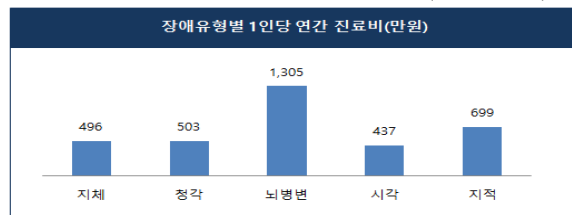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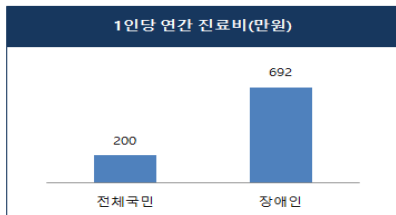
가. 장애 이해 부족 및 건강보건관리의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인 건강격차 심화

- 재활 치료 및 기능유지 등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부족
- 장애인 편의시설·교통편 등 물리적 접근 어려움과 의료인의 장애 이해부족으로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가 어려워 건강상태 열악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된 수검률('22년 기준)〉



〈출처 :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보건통계('21년 기준)〉



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재활의료 인프라 및 낮은 사회복귀율

- 시기적절한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부족
- 재활의료·복지의 지역사회 전달체계 미비로, 입원기간과 사회복귀율이 선진국과 큰 격차

* 입원기간, 사회복귀율에 대한 한국 vs 선진국 비교

구 분	미국 등		한국	
	입원기간	사회복귀율	입원기간	사회복귀율
척 수	50일~7개월	89.0%	12~31개월	15.3%
뇌졸중	30일~64일	67~78%	5.6~7.8개월	22.4%

〈출처 : 척수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다. 수도권 중심의 회복기 재활 인프라 편중에 따른 지역 간 건강격차 심화

- 사회복귀를 돕는 회복기 재활인프라 및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 장애아동의 경우, 민간재활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내 공급부족 및 생애주기별 지원관리 체계 부족

* 만 7세 미만에서 연간 50건 이상 재활치료 진료비를 청구한 민간기관 223개소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

2 추진 목표(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방향성)

- 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특성에 따른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
- 나.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 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해 장애인·가족에게 적극 홍보하고,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3 연혁

- '13. 5월 :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회복병원체제 강화」 국정과제 49-5 지정 및 「공공의료체제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국정과제 50-5 지정
- '15.12월 : 장애인 보건관리체제 마련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6. 2월 : 법 시행을 위한 신규제도 모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건강권보장 추진 TF 구성·운영'
- '16. 2~6월 : 전문가,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 아젠다별 '공공재활의료포럼 운영'(총 4차)
- '16. 4월 :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 연구 시행('16. 4 ~ '17.12 총 5건)
- '17. 5월 :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국정과제 42-5 지정
- '17. 8월 :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10월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실시('17.10 ~ '18.12)
- '17.12월 : 법률 위임사항 및 구체적 시행을 위한 「장애인건강권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장애인건강권법률」 시행('17.12.30.)
- '18. 3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18. 3월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국립재활원)
- '18. 4월 : '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지정(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경상남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병원)
- '18. 5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18. 5 ~)
- '18. 7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소 지정(서울의료원, 대청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병원)
- '19. 4월 : '19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지정(서울특별시 서울재활병원, 강원도 강원도재활병원,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

- '19. 5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소 지정(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대자인병원, 진주고려병원, 조은금강병원, 서귀포의료원)
- '20. 6월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20. 6 ~)
- '20. 7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지정(부산 동아대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 '21. 8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지정(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 '21. 11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개소 지정(국립재활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연세일신병원)
- '22. 10월~11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지정(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홍성의료원, 순천의료원)
- '22. 11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5개소 지정(청주의료원, 경북안동병원, 좋은삼선병원, 순천의료원, 경남밀양병원)
- '22. 11월 : 장애친화 산부인과 2개소 지정(성애병원, 이대목동병원)

4 지원 근거

가.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나. 사업 대상자

-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이하 “예비 장애인”이라고 함)’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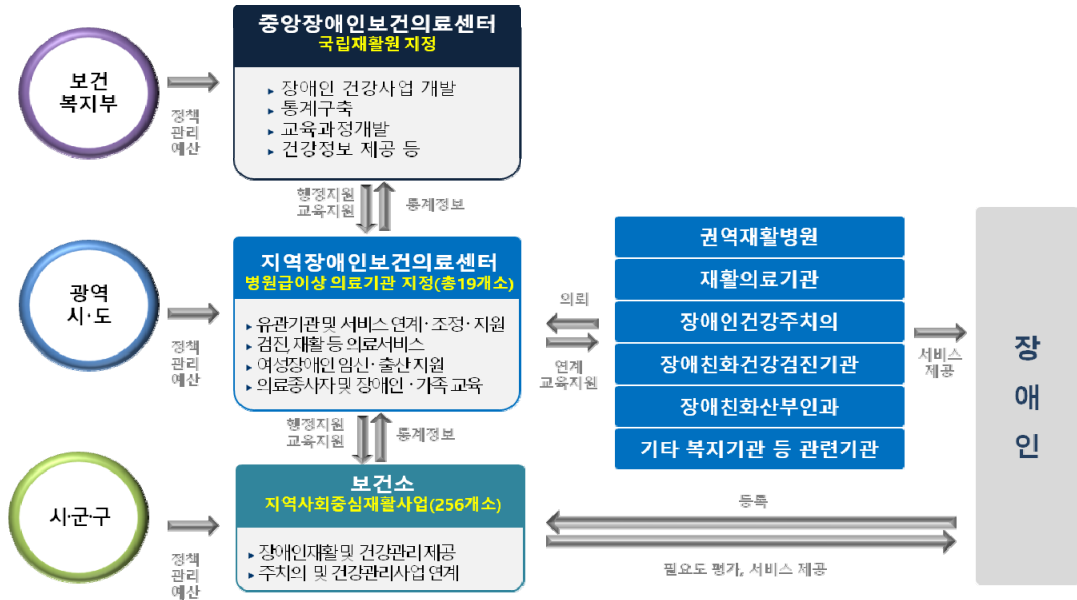
- 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6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추진 주체	기능 및 역할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 수립, 법령·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 지원, 운영지침 수립 및 지도·감독 ▶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 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평가지원 및 교육·훈련 ▶ 장애인건강보건 관련 기획, 연구,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재활의료기관과 협력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홍보 및 국제협력 ▶ 장애예방·진료·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역지자체 (건강보건의과, 장애인과)	▶ 예산지원, 관리감독 ▶ 사업 활성화 협력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홍보 ▶ 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지원, 교육·훈련 ▶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초지자체 (보건소, 장애인복지과)	▶ 대상자별 특화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과 자립능력 증진 ▶ 보건의료-복지자원 개발·연계 및 의료인·주민·가족의 장애인식개선

나. 추진 체계도



다. 추진 기관 역할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함)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기술제공과 시·도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CBR)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총괄 역할 수행

●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검진, 재활운동 및 체육 등 협의회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기획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CBR) 사업 총괄 기획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및 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운영지원

* 관리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운영 지원 및 평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CBR) 사업 수행지원, 사업계획 이행 관리, 모니터링, 평가

③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 장애인 주치의 교육, 보건소,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④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지원 등

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 이행 관리

- 중앙센터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시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중앙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성과 평가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은 사전보고 후 승인받아야 함
※ 중앙센터장은 보건소CBR사업에 있어서도 이행관리를 동일하게 실시함
- 지역센터장과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사업이행을 조사·보고하고, 반기별(6월말 및 12월말)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제1항)]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사향의 홍보
- 장애의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국제협력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⑥ 중앙센터장은 지역센터장의 사업이행 조사를 위해 다음의 권한을 가짐
 -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의료수행기관 지정 관련 각종 심사회의에 참관 가능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정기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의 시설·장비에 대한 실물·대장의 열람과 지역센터 종사자 또는 의료진과의 면담
 - 기타 사업이행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 ①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수행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연계 및 기술지원
 -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장애인건강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차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필요도 평가 연구 지원 및 계획수립 지원
 - 자조 모임 운영 등 장애에 대한 경험과 건강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 공유 지원
- ② 지역 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대상 교육·훈련
 -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장애인 건강검진·건강주치의 및 여성장애인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③ 지역 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 일반 진료·재활진료, 건강검진, 주치의 등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 건강검진, 건강주치의, 산부인과 진료가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내 의료서비스 연계 제공
- ④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 지원 업무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하 “지역센터장”이라 함)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하는 평가,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사업계획 및 실적, 예·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 이행관리·감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이행과 기능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사업관리 이행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이행조사를 할 경우 해당 시·도와 협력하여 조사팀을 구성해야 함

② 시·군·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장애인의 통합적 상담·안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케어회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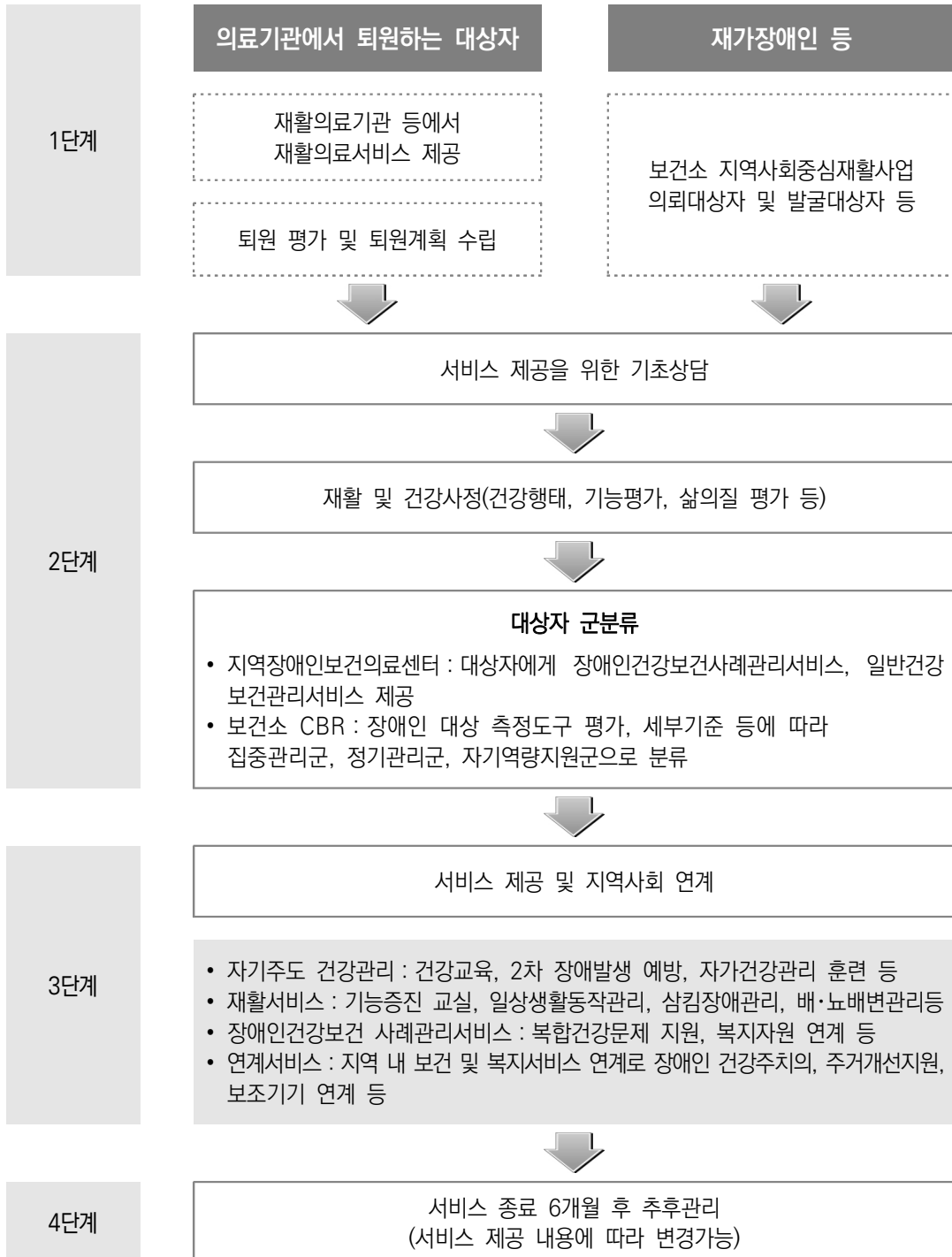
7 추진 절차

가. 사업 추진 업무 흐름도

[전체사업 절차도]

사업 단계	사업 절차	주관 기관
사업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위원회
	사업수행기관 지정·통보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국고 보조금 신청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
	국고 보조금 교부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사업시행·관리	조직 및 사업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직 및 사업 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추진 중간보고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평가 보고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 및 장비부문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 설계 및 장비계획(심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 변경(심의) or 장비변경·추가(심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성과 관리	공사 및 구매완료보고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적보고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나. 사업 대상자 지원 업무 흐름도



8 적용 범위

- 가. 이 지침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 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업무를 위탁한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보건소장)에 적용함
-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르며, 이 지침이 관련 법규와 다르게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를 우선 적용함
- 다. 이 지침이 지정된 공공의료수행기관의 내부규정과 상이한 경우,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라. 이 지침은 별도의 개정 배포 시까지 유효함

제 II 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운영안내



제1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1. 사업 개요	21
2. 사업수행기관 운영관리 체계	22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운영	33
4. 세부사업내용	35
5.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영	54
6. 종사자 교육 및 성과관리(안)	65
7. 행정 사항	67



제1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나. 법적 근거

-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및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기간 : 3년(4년차 재지정 심의 이후 지속 지원 여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
 - * 매년 모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성과평가 실시
 - * 단 정책변경, 현장지도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중도해지 가능
- 사업추진방식 : 위탁 운영
- 수행주체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 병행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대상기관의 명칭

〈일반명칭〉 ○○○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병원 지정)

〈영문명칭〉 Regional Health & Medical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라. 지정 주체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지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함) 지정

2 사업수행기관 운영관리 체계

가. 인력 관리

1) 인력 구성 원칙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은 재활의학전문의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교수 이상 직급으로 병원장이 임명하되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음
 - ※ 지역센터장 변경 시, 시·도지사의 지정서 변경(「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고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은 지정받은 의료기관 진료조직과 기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전담자로 상시 관리체계로 운영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담당자는 15명 내외로 두되, 그 구성·운영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직제에 따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 6명 이상의 종사자를 두고, 운영기획·건강보건·의료지원 팀으로 각각 구성·운영



2) 업무종사자 자격기준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사(1급)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단,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시 지역상황에 따라 인력채용공고 3회 이상 공고시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으로 경력 3년 이상이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채용 가능

- 행정직의 경우 컴퓨터 자격 소지자(한글·엑셀·파워포인트)로서 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기자격기준으로 종사자를 채용하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 내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종사자의 직렬 및 경력 3년 컴퓨터 자격 이외의 자격요건 조정 가능

3) 업무종사자 채용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원칙
 - 지역센터장은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행정직 각 직렬별로 반드시 1명 이상 채용 하되, 필수직렬 3명 이외의 인력은 병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채용

- 채용위원회의 구성 주체는 관할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기타 취업(사이트 중 2곳 이상) 등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채용 위원회의 채용 원칙에 의해 채용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에 인적사항(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요구 및 질문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절차,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 실시

- 채용 확정 이후 채용공고 완료 및 합격자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 채용위원회 구성 및 업무종사자 현황(입사, 미채용 인원, 퇴사 등)을 시·도지사 및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나. 인력의 안정적 운용

-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기조와 부합되게 공공부문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 7. 20.)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이며, 민간위탁사업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적 업무가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참고
 - 인적 속성이나 업무·직무 특성 고려

2) 종사자 보수(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편성 및 운영

*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해당연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별도 통보) 안에서 지급(「장애인건강권법」 제22조)

- 당년도 예산에 명시된 종사자 보수액(직렬별 동일 보수 지급)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최저 금액임
 - 지정된 의료기관은 별개의 보조금 사업으로 인력을 운영(별도 임금테이블)하되, 기관 내 유사경력 직원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부담으로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음(별도의 수당규정 신설 등)
- (종사자 보수 총액) 근로기준법 규정 등을 참조하여, 기본급여(봉급)와 기본 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월 10시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으로 구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신규 채용되는 업무종사자는 근무 1년을 1호봉으로 인정(초임호봉은 1호봉)하되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임금상승률을 호봉증가분으로 산정
 - ※ 신규 채용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근무경력도 호봉에 반영



〈연차에 따른 기본급 최저 기준표〉

근무기간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기본급(봉급)	2,781,000	3,017,360	3,101,840	3,195,360	3,240,090	3,295,180	3,377,560

※ 지역센터장 수당은 상한액 월 200만원

※ 센터 내 최대 1명 팀장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팀장은 해당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추가 수당 지급가능

- 기본근로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월 10시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이외 별도 수당을 신설하지 않음

* 단,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체규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시·도 및 보건복지부 승인 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월 봉급액의 120%	월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센터장이 정하는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10시간 이내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정액급식비	재직 중인 종사자	14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단, 월중 휴직, 복직, 채용 등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 지도과'에 문의

- 다만, 인건비 항목의 남은 예산범위 내에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비 지급과 시간외 수당 지급액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시간(월 11h~52h)의 시간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퇴직급여 제도의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퇴직급여제도 운영주체는 업무 종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지급방식을 결정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 ※ 퇴직급여 제도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됨
-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3조~제23조

구 분	개 념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일 기준 최근 3월 간의 임금/최근 3월 간의 일수 - 재직일수 = 입사일(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 사용자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 확정되며, 사용자 부담금은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 변동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퇴직금의 운용)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업무종사자의 퇴직으로 불용된 퇴직 적립금은 해당연도의 특별수입으로 처리하되, 예산과목 인건비-보수 항목의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편성하여 사용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업무종사자가 자가주택 구입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금의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사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3) 사회보험의 가입

● (사회보험 가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재직 중인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 사업주의 사회보험부담금은 해당연도 사업예산의 고용부담금(320)에서 지출
※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4) 업무종사자 해고의 제한

- 업무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 업무종사자 해고 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업무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단, 일시보상(「근로기준법」 제84조)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 (일시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제받는 것

5)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 업무종사자 해고 시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다만, 천재, 사변, 「장애인건강권법」과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단 결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업무종사자의 귀책사유

-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자가 근로자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물품을 파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법으로 반출한 경우
- 기타 자신의 귀책사유로 범죄를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고 예고의 적용예외

- 월급 근로자로서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자
-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종사한 자

●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시 업무종사자는 운영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건강권법」과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단 결정 등의 사유로 해고된 업무종사자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의 재추진에 따라 재입사를 원하는 경우, 그 업무종사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6) 업무종사자의 복무

※ 업무종사자의 복무 관련, 지침에 명시된 사항 이외는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중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영리업무 판단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참조)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근로자의 연차사용 장려를 위한 연차축진 제도 운영

-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해당 종사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고지
- 종사자는 고지일 기준 10일 이내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 ※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축진제도 미대상이나, 해당 연차에 대해 차년도(2년차)의 연차 외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함
 - ※ 인건비 항목의 남은 예산범위 내에서,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비 지급 가능

7)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종사자의 질병·부상, 출산·육아휴가 등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음
-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종사자의 채용기준 및 보수체계를 준용하며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 ※ 단, 인건비와 사업비 간의 예산 자체전용은 원칙상 어려우며 복지부 승인 후 집행

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1)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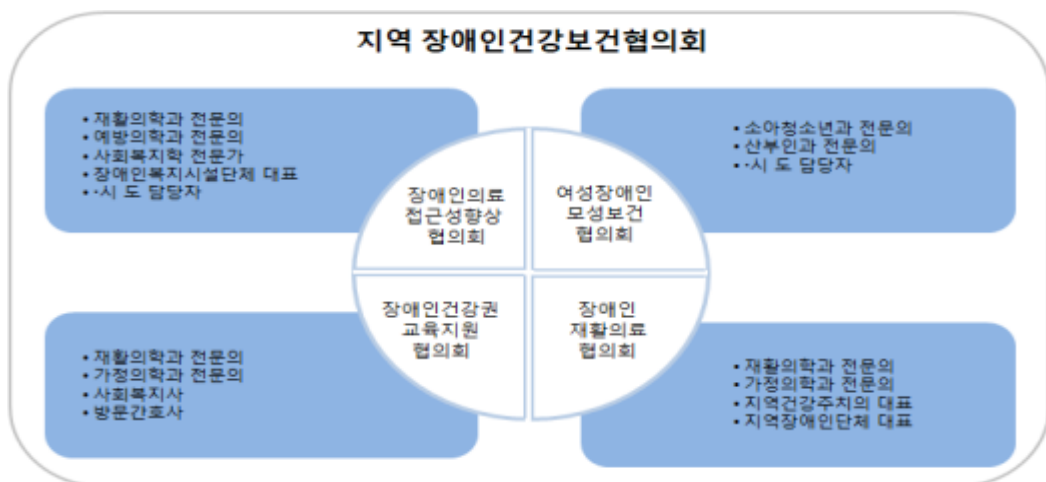
- (목적) 지역센터장 소속 하에, 사업대상자에게 보다 적실성 있는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 자문 및 사업방향 논의
 - 보건소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지정받은 의료기관 내 의료서비스 제공 조직과의 연계 업무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예산활용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장비 개선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공공부문, 의료기관, 장애인단체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각 분야별로 전체 구성인원의 1/3을 넘지 않도록 함
 - ※ 당연직 : 지역센터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 담당공무원
- (위원장) 지역센터장
- (장애인단체) 지역장애인단체장, 여성장애인단체장
- (공공부문) 장애인 건강분야 공무원(시·도)
- (전문가) 장애인 건강 전문가(학계 및 연구자)
- (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 대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표, 지역의사회 등
- (복지분야)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장애인복지시설대표 등
- (운영) 연 2회 정례회의 개최(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위원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지역센터장은 장애인건강위원회 운영회칙을 마련하여 운영[참고 6]
 - ※ 구성 및 회의록[서식 24], 운영위원 위촉장[서식 25] 참조

2) 지역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 (목적)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필요 사항을 지역사회 내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사업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장애인당사자가 포함된 관련자 10명 내외
- (기능) 사업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적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업무 협의
 - 지역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의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간 연계·소통의 장(소 집, 운영, 필요서비스 욕구파악, 결과공유, 실행독려 등)을 마련하여 운영
 - 협의회 개최 시 사례관리 대상자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 필수
 - *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를 위한 사례회의는 대상자에 따라 위원 재구성 및 회의 운영
- (운영)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의견 수렴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필요시 수시 협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비밀유지) 협의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협의회 종류)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협의회, 장애인 재활의료 협의회,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협의회, 교육지원 운영 협의회 등 최소 2개 이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상황에 맞춰 구성

※ 지역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서식 26] 참조

< 지역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예시 >



※ 지역 내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 실무 네트워크 구성(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예시

의료접근성 향상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재활의료서비스	장애인건강권 교육사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 · 지역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관 대표 · 지역장애인 단체 대표 · 지역 장애인복지관 대표 · 장애당사자 또는 그 가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 · 보건소 모성보건사업 담당자 · 지역 내 산부인과 전문가 · 지역 내 여성장애인 단체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 분만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 · 장애인재활의료기관 대표 · 보건소 CBR 사업 담당자 · 재활의학 전문가 · 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내 교육 담당자 · 지역 장애인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복지 담당자 및 건강 증진 담당자 · 보건소CBR사업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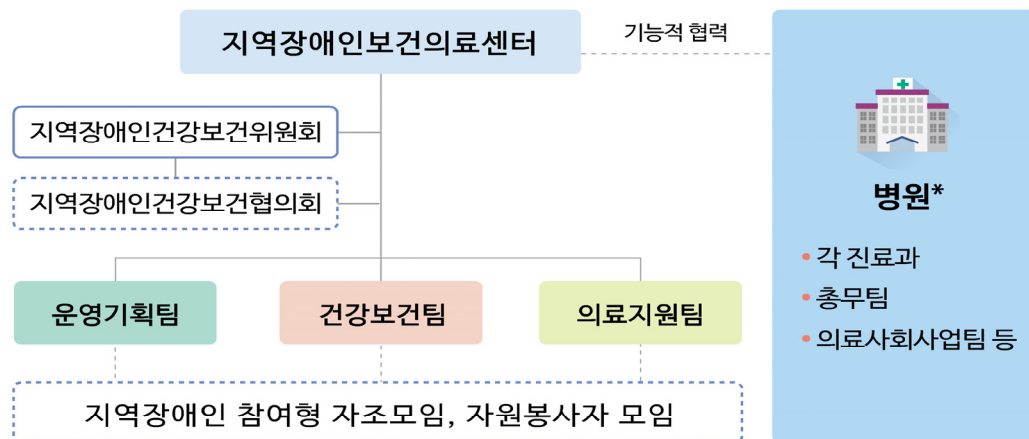
※ 보건소 CBR사업은 각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업대상자가 있는 보건소의 담당자 참석

3) 중앙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 (목적)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방향 등 역할 논의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 (구성) 보건의료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관련기관 15명 이내로 구성
- (운영) 반기별 1회 정례회의 개최(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중앙센터장 소속의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는 광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역별 상향 평 균을 위한 조율·지원 등을 목적으로 별도 구축·운영

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직 운영



*병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전체



- (운영기획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행정·재정관리 업무, 정책기획 지원, 협의체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조직 운영 등
 - (건강보건팀)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장애인 건강권 관련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 참여형 건강소모임 운영 등
 - (의료지원팀) 장애인 의료이용 정보플랫폼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건강검진 사업 지원,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등
 - (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내 관련 부서들과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의료서비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기능적 협력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상황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의후 팀구성 및 업무 조정 가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 내 공공부문 또는 공공의료본부 조직 산하에 배치·연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 등을 위해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공공의료본부 등) 필수보건 의료 협의체(원내 및 원외)에 적극 협조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운영

가.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사업대상자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이하 ‘예비장애인’이라고 함)

다. 서비스 제공

장애인 대상 측정도구 결과를 입력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되, 담당 인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시 군 분류 조정 가능

1)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서비스

- 보건의료적 복합문제가 있으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렵고(의료접근성 저하 포함), 돌봄자가 부재하거나 돌봄자 역량이 미흡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사정, 욕구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 보건의료적 복합문제가 있음
 -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움
 - 돌봄자가 없거나 있어도 고령 혹은 아동, 장애 등으로 돌봄역량이 미흡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타 기관에서 주사례관리를 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는 담당인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조정가능

2) 일반건강보건관리서비스

- 보건의료적 문제에 대해 단기간(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교육, 정보제공(복지정책, 관련기관안내 등) 등 직접서비스 제공
 - * 전출 등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시 관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대상자 이관하여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미동의관리로 분류하고 필요시 정보 제공
 - * 대상자 이관, 사망, 전출, 서비스 거부 시 서비스 종결 후 퇴록 처리

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활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상자 및 사업관리, 관련기관 연계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장애인 건강보건관리, www.ssis.go.kr)사용 및 홈페이지(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www.nrc.go.kr/hmpd/main.do) 활용
 - *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사용자 매뉴얼 등 시스템 사용관련 추가 안내 예정

4 세부사업내용

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1)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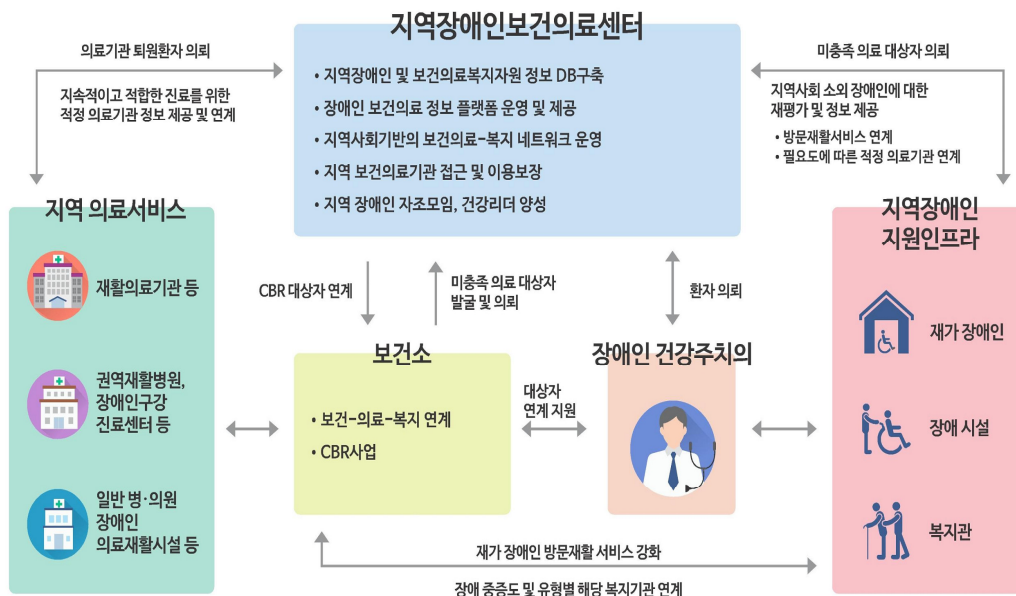
제3조(정의)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 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2) 사업 원칙

- (수요자 중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 시간,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
- (연속성)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접근가능성)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 함
- (이용 가능성)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갖추어,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 함

3) 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지원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 -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③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활용
	⑤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⑥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⑦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4) 세부 사업 내용

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지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 내용	• 관내 보건소 CBR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역량강화, 자원연계, 교육사업 지원
대상	• 해당 지역 보건소 CBR사업
연계 자원	• (보건의료·건강) 지역 내 의료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치료기관, 보조기기 센터, 구강진료센터 등 • (복지)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콜택시 등
세부사업	• 역량강화 - (사업담당자 역량) 사례관리 방법, 평가도구 적용방법 등 교육 - (사업운영 역량)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자문, 보건소별 필수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보건소 간담회 정례화, 보건복지 지역자원 정보제공 등 • 자원연계 - 보건의료기관(장애인 건강주치의, 건강검진, 구강진료센터 등) 자문·연계 - 긴급 입원 및 집중재활치료 등 지원(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 교육사업 지원 - 교육강사풀 공유,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장애인 및 가족 교육사업 지원
중·장기 추진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내실화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구분	사업 내용
목표	• 장애인(예비장애인)의 보건의료관련 욕구에 맞춰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대상	• 자체발굴 및 연계(의료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되는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연계 자원	• (보건의료·건강) 지역 내 의료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치료기관, 보조기기 센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 (복지)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장애인콜택시 등 • (지자체 전달체계) 지역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좋은 이웃들, 사회적 경제기업 등

구분	사업 내용
세부 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적 복합문제(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가 있으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렵고 (의료접근성 저하 포함), 돌봄자가 부재하거나 돌봄자 역량이 미흡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사정, 욕구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대상자 거주지역 보건소와 함께 사전 서비스 계획 수립 (* 세부내용은 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 가이드 개정판, 2023 참고) - 재활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장애인의 의뢰 및 발굴 → 지역 센터는 상담을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 파악(의료문제, 건강보건관리, 교육 및 훈련 등) → 제공 프로그램별 팀 회의를 통한 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대상자 관리진행 및 종료 여부 결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비스 지원(예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진료, 대상자 평가·상담, 장애인주치의 연계, 건강관리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 건강관련 문제 이외에 폭력 등 안전문제,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 법률 및 권익보장에 관한 문제 등 복지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대상자 소재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및 ‘동주민센터 복지팀(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 (일반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적 문제에 대해 단기간(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교육, 정보제공(복지정책, 관련기관 안내 등) 등 서비스 제공 • (의료기반 자조모임 운영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공적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제공,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기반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다과 등 지원 가능) ※ 필요시 지역사회 내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협회, 복지관 등 관련 기관 안내 • (자원봉사자 양성(활용)) - 주민이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모집 및 활용
중·장기 추진	• 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 대상 및 연계 확대 • 장애유형별 자조모임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구분	내용
사업 내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세부 사업	- 지역 내 사업별, 제공주체 기관별 리스트를 사전 확보하여 자원조사단계에서 활용 - 자원조사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자원 총량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자원 발굴 목표 및 방법 등을 기획 - 장애유형 및 중증도에 맞는 민관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도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기관과 연계 제공 - 복지자원 현황을 지자체 자원관리담당 및 민간과 공유하여 파악된 자원정보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연계한 수요자 지원현황 모니터링 실시 - 지역 복지욕구 대비 부족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집중 개발 ※ 자원정보를 분류하여 협력기관(지속적 관계형성 가능한 업무협약된 기관)과 일반기관(잠재적 협력기관)으로 관리(업무협약서[서식 27])
중·장기 추진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연계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확립

④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 등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보건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활용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지역 사업대상자 DB구축(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 지역 내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자원 정보 및 통계자료 구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및 장애와 건강 다(多)있소) 상시 업데이트
정보 DB구축 및 제공 사항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관내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과 대상자 의뢰-회송 절차를 구축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의 DB' 구축 - 지역 내 장애유형별, 지역별의 보건의료·건강·복지 분야 정보 및 통계
세부 사업	- 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의 DB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정보 제공으로 보건의료정보플랫폼 역할 수행
중·장기 추진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 데이터 수집 관리 및 관련 특성에 대한 연구 진행

* <참고> 지역장애인 건강관련 통계 주요 자료원

정보 및 통계 목록	자료원	비고
• 지역별 등록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 수,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등록정보	보건복지부>정보>통계>승인통계>장애인현황 KOSIS(국가통계포털)>장애인현황 행정안전부>정책자료>통계>주민등록인구통계	직접 확인가능
• 지역 내 장애인 건강 주치의 현황 정보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직접 확인가능
•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국민건강보험>정보공개	해당 기관별 정보요청 후 관련자료 생성과정 필요
• 장애인 질병 현황 장애인 만성질환 현황 장애인 다빈도질환, 동반질환	국민건강보험>정보공개	
•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장애인 의료이용량, 진료비, 미충족 의료이용률 등	국민건강보험>정보공개	
• 장애인 조사망률, 사망원인 분포, 평균사망연령 등	통계청>KOSIS통계표>장애인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질병분류정보센터>통계>사망원인통계(질환별, 지역별)	
• 장애인 주요 편의시설 현황	복지로(www.borjiro.go.kr)>복지지도>편의시설	직접 확인가능
• 장애인 관련 주요현황	공공데이터포털>장애인 관련 검색	직접 확인가능

⑤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시·도 단위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지원
사업 대상	• 지역 내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세부 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장기 추진	• 지역 내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보건의료-복지 총괄·조정 역할 강화



⑥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연계 및 지원) 등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제공 -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 연계
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세부 사업	- 사업내용 수행을 위한 현황조사로 개선점 도출 -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 지역 내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연계하여 방문진료 지원
중·장기 추진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장애인 대상 의료 행위 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

⑦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연계

구분	내용
사업 내용	지역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의료이용 실태 모니터링
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세부 사업	- 지역 내 의료기관이용을 위한 교통편의 등 자원연계 - 지역내 의료이용 현황조사 후 개선점 도출
중·장기 추진	지역 내 또는 시외 의료기관 이용 시 교통편의 연계 지원 및 유관기관 구축체계 마련

나.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건사업

1)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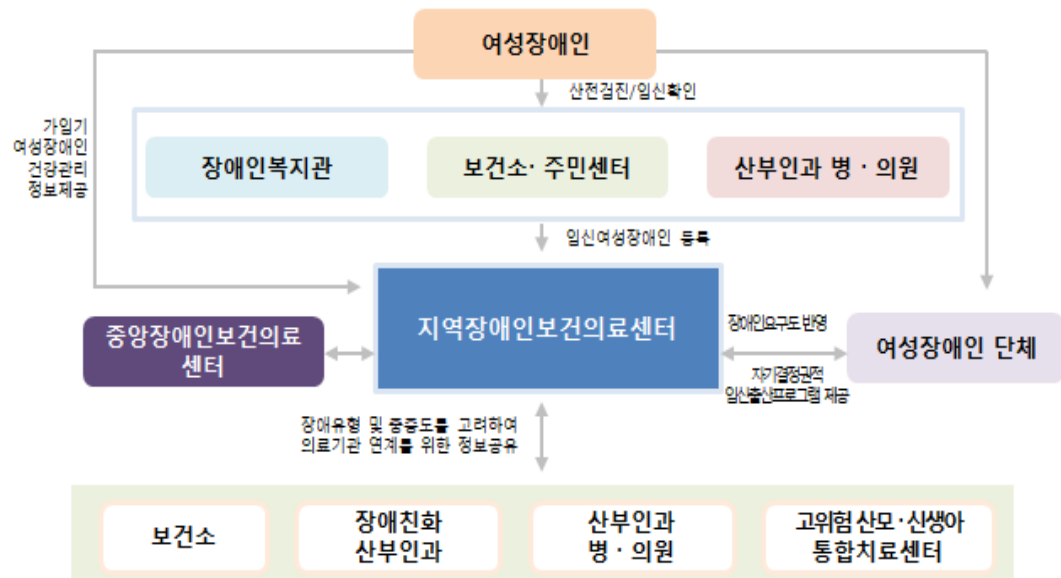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 보건사업 제공 체계 >





2) 사업 구성 (※ 산부인과와 직접 진료가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내 의료서비스 연계 제공)

구분	사업 내용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①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DB 구축)
	②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③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당사자 및 가족 교육)

3) 세부 사업 내용

①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DB 구축)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역 내 산부인과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임신 여성장애인을 등록하여 필요시 건강관리 수행
사업 대상	• 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임신 진단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유·사산 포함) ※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건소 산모 및 영유아 전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연계할 경우,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가능
세부 사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임신부의 건강정보를 상호 의뢰 • 의료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뢰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신규프로그램으로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로 연결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호 인력을 교육 • 임신출산 여성이 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반드시 징구
중·장기 추진	• 장기적으로 모든 임신여성장애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류

②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 산전·산후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 대상	• 임신준비 및 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분만 후 6개월까지(유·사산 포함) ※ 단, 담당자의 종합적 판단하에 필요시 분만 후 1년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세부 사업	• 전문의(산부인과·여성건강전문)에 의한 임신준비 및 산전·산후관리와 건강관리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관리 포함 •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 여성건강(산부인과) 진료, 보건교육(학대 폭력 등 포괄적 사정 포함), 심리상담 및 진료 의뢰, 전화상담, 통합사례관리와 연결
중·장기 추진	• 장애여성 친화 산부인과 지정 등으로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

③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당사자 및 가족 교육)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특화된 당사자, 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운영								
사업 대상	• 지역 내 여성장애인과 가족								
세부 사업	•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 장애유형별 임신·출산계획, 임신 전 주의사항, 산전 프로그램, 검진 방법, 약물관리, 의료기관 선정방법 등								
	<table><tr><th>구분</th><th>회차별 주제(예) ※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기획 가능</th></tr><tr><td>임신 준비</td><td>1차시 : 나도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2차시 : 계획된 임신을 준비하세요 3차시 : 자신에게 맞는 산부인과 고르기과 이용 팁 4차시 : 알아두면 유익한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및 복지 서비스 5차시 : 선배 여성장애인과와의 만남</td></tr><tr><td>임신 중</td><td>1차시 : 임신주수별 변화와 산전검사 2차시 : 장애유형별 임신 중 내 몸 건강관리 3차시 : 출산과정의 이해와 분만 방법 4차시 : 출산용품 준비하기 및 육아용품 만들기 체험 별 도 : 임신부의 남편(함께하는 남편 교실)</td></tr><tr><td>출산 후</td><td>1차시 : 산후관리 2차시 : 유방관리 및 수유방법 3차시 : 월령별 발달과 아기 돌보기 4차시 :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td></tr></table>	구분	회차별 주제(예) ※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기획 가능	임신 준비	1차시 : 나도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2차시 : 계획된 임신을 준비하세요 3차시 : 자신에게 맞는 산부인과 고르기과 이용 팁 4차시 : 알아두면 유익한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및 복지 서비스 5차시 : 선배 여성장애인과와의 만남	임신 중	1차시 : 임신주수별 변화와 산전검사 2차시 : 장애유형별 임신 중 내 몸 건강관리 3차시 : 출산과정의 이해와 분만 방법 4차시 : 출산용품 준비하기 및 육아용품 만들기 체험 별 도 : 임신부의 남편(함께하는 남편 교실)	출산 후	1차시 : 산후관리 2차시 : 유방관리 및 수유방법 3차시 : 월령별 발달과 아기 돌보기 4차시 :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구분	회차별 주제(예) ※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기획 가능							
	임신 준비	1차시 : 나도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2차시 : 계획된 임신을 준비하세요 3차시 : 자신에게 맞는 산부인과 고르기과 이용 팁 4차시 : 알아두면 유익한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및 복지 서비스 5차시 : 선배 여성장애인과와의 만남							
	임신 중	1차시 : 임신주수별 변화와 산전검사 2차시 : 장애유형별 임신 중 내 몸 건강관리 3차시 : 출산과정의 이해와 분만 방법 4차시 : 출산용품 준비하기 및 육아용품 만들기 체험 별 도 : 임신부의 남편(함께하는 남편 교실)							
	출산 후	1차시 : 산후관리 2차시 : 유방관리 및 수유방법 3차시 : 월령별 발달과 아기 돌보기 4차시 :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 청소년기, 갱년기 등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의 산모 및 건강관리교실 내실화								
중·장기 추진									

4)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과의 연계

- ① 해당 지역 내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여성장애인 서비스 제공(전문의료서비스, 지속적인 건강관리, 자원 연계 등)
- ②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원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교육, 비장애인 교육 시 연계·협의 하여 시행(권장)
- ③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연구 수행(권장)

다.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1)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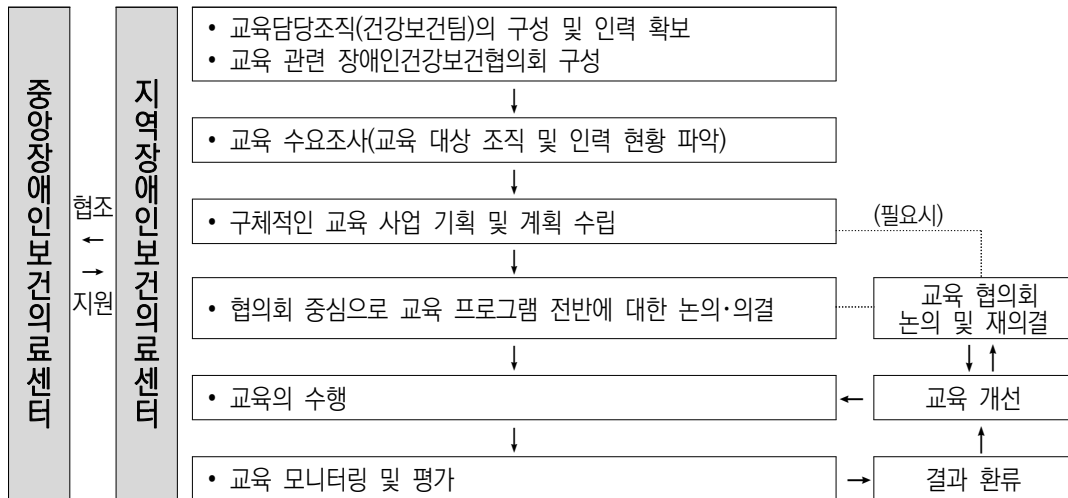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사업 수행 과정 >



☆ 교육 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구성 예시

- 지역센터장(위원장) 및 지역센터 내 교육 담당자(간사)
- 지역 장애인단체의 담당실무자(위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담당자(위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과 소속 해당 담당자(위원)
-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 CBR사업 담당자(위원)

2) 사업 구성

① 장애인 건강권 교육운영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교육 운영
사업 대상	• 의료인, 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관련 보조인력, 예비의료인 등
세부 사업	• 장애인 건강권관련 교육운영 - 교육시간: 1~2시간 - 교육운영: 연 4회 이상 - 교육내용: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 정책, 장애인과 의사소통 등
중·장기 추진	•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 예비의료인 등 교육대상 확대

②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운영
사업 대상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관련 보조인력 등
세부 사업	• 장애인 건강교육 교육운영 - 교육시간: 1~2시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육내용: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 관리, 보조기기, 재활운동 등
중·장기 추진	• 장애유형별 교육 대상 및 내용 확대

③ 기타 교육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상황 및 수요자의 요구 등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

< 세부교육구성 예시 >

대상자 분류	이수 교육과정						교육이수 시수* (단위 : 시간)
	건강권 이해	장애 이해	의료기관 이용	진료	건강관리	여성 장애인	
일반 의료 서비스 제공인력	●	●	●	●	●		2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통)	●	●	●	●			2
임신, 출산 관련 의료인	●	●	●	●	●	●	3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비의료인	●	●	●				2
관련 학과 학생	●	●	●		●		2
장애인·가족	●	●	●		●		2
행정기관·공공기관 관련 인력	●	●	●				2

* 교육이수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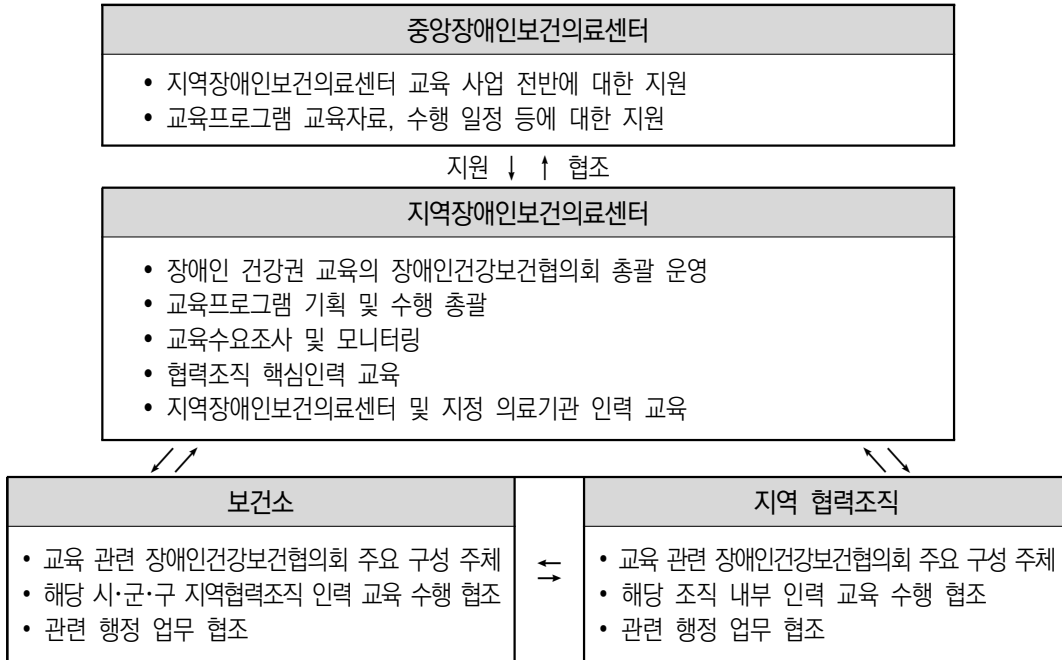
3) 교육사업 수행 과정

- ①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교육대상 조직, 인력에 대한 현황, 교육 필요 주제, 교육일정 등과 관련한 교육 수요조사를 수행
- ② 교육 수요조사 결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교육계획(안)을 바탕으로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
- ③ 필요시 관련 지역장애인건강관리 협의회에서 수립된 사업수행계획에 대해 논의·의결
- ④ 협의된 계획에 따라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지속 관리하고 이를 통한 피드백,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을 수행

4) 교육사업 수행 및 협력 조직 구성·역할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권 교육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는 간사 조직으로서 지역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수행하는 역할
 - 사업 초기에는 교육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지역의 교육관련 실적, 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수행
 - 실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 핵심인력 교육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부 인력 교육 수행
- (보건소)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의 주요구성 조직이며, 해당 관할 시·군·구내 지역협력조직의 인력 교육을 수행
 - 기타 지역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행정 실무(장소 섭외 등) 지원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협력조직)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의 주요 구성조직으로 해당 조직 내부 인력교육을 수행
 - 기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에 협조

< 교육사업 수행 및 협력조직 구성·역할 >



5) 교육 수요조사, 교육주제, 교육강사 운영

- (교육 수요조사)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목적, 목표, 교육대상, 주제 등 관련은 협의회에서 논의·의결

* 연간 교육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 중양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의 하에 작성 요함

구분	내용
수요조사 항목	- 지역의 교육이 필요한 조직 및 대상 현황 - 필요한 교육 주제 - 기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조사 시기	교육사업 시작 전 또는 필요시 교육사업 수행 완료 이후
조사 방법	행정자료, 표본 설문·면담조사, 간담회 등 복합자료 활용 (서식 22. 참고)
재조사 주기 및 내용	1년 마다 추가 또는 제외 대상자 등을 재산정



● (교육 주제) 교육 대상자의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공(예시)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준용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 활용

교육 주제	주요 내용(예시)
건강권 이해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장애인 건강권법에 대한 이해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과 관련된 사항
장애·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장애의 개념 및 장애의 분류 - 기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사항 - 장애인의 건강수준(전국 및 지역) 등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의료기관 방문, 진료, 행정처리 과정별 장애인 의사소통, 편의지원 등 응대요령, 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대상 진료 일반	-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제공할 때 필요 및 준비사항 - 주요 장애유형별 장애인 진료 시 의사소통, 편의지원 등 응대요령
건강관리	- 장애유형별 건강관리방안 - 만성질환 등 질환별 건강관리 방안 등 - 감염성 질환 관련 예방과 건강관리 방안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금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 규칙적 식사 등 건강관리 방안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관련 신체변화와 건강관리(장애유형별) - 여성장애인의 부인과 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 방안
여성장애인 진료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현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관련 특이 사항 및 진료 시 편의지원 등

● (교육 강사)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강사진(풀)을 확보하여 수행하되, 강사진은 장애인 인권, 보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세부 강사진 자격조건 등은 협의회에서 논의·의결

※ 확보된 강사진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관리

라.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1) 법적 근거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시·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사업 원칙

- 지속적 관리, 치료의 접근성 보장,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환자중심의 접근, 협력적인 팀구성, 조기중재, 지역사회연계, 질향상과 모니터링을 기본 요건으로 함

3) 제공시점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급성기 치료 이후부터 장애등록 전/후의 예비장애인 및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 과정 및 장애인 대상의 의료서비스

4) 사업 구성 (※ 지역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직접 의료서비스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며, 이후 대상자를 위한 건강보건관리 필요시 「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진행)

구분	사업 내용
진료, 재활 의료 서비스	①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② 장애 소아청소년 재활의료 서비스 지원
	③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④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
건강검진	⑤ 건강검진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5) 세부 사업 내용

- ①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역할로서, 지역 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직접 또는 연계체계 활용)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대상자 평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업 대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센터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 ※ 우선순위 1순위 :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건강보건관리사업 대상자 2순위 : 지역 내 보건소 CBR사업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대상자 3순위 : 지역 내 협력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4순위 : 기타 지역 내 자원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세부 사업	- 지정된 의료기관은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해당 대상자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에게 공유되도록 조치 - 장애유형별로 의뢰 시점에서 대상자 평가, 서비스 제공, 퇴원계획 수립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 지역사회관련 서비스 연계 실시 〈 급성기 이후 의뢰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제공 흐름도 〉  〈 모병원 전문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 장애인 당사자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당사자 및 보호자를 면담함 - 구체적인 치료계획 수립 - 생애주기, 발병시기, 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른 전문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급성기 이후 기능회복시기의 집중재활 프로그램 운영 - 퇴원평가 시행 및 이에 따른 퇴원준비 지원 및 퇴원계획 수립

구분	사업 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 • 사회적 지원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종사자가 지역 내 유관기관, 보건소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서비스 의뢰함 〈 지역 내 의뢰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흐름도 〉 <pre> graph TD A[의뢰된 장애인 및 보호자 면담] --> B[건강 사정 및 평가] B --> C[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C --> D[진료의뢰 또는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진료, 재활,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제공] D --> E[사회복귀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E --> F[•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지역사회 연계(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pre>
중·장기 추진	• 의료체계(급성기-회복기)에서 의뢰되어 오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코디네이터 기능(회복기-유지기의 연계) 내실화

② 장애 소아청소년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소아청소년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업 대상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장애인
세부 사업	• 지정된 의료기관은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대상자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직에게 공유되도록 조치 • 지역 내 신생아 및 소아청소년 재활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계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6개월 후 대상자 건강상태, 지원현황, 연계기관 이용 현황 등 사후관리 • 공공소아청소년재활프로그램 운영 개발·운영·보급 ※ 예시 : 장애소아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가이드북 제작 및 제공 - 장애소아청소년 대상 주간재활 프로그램 - 장애소아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장애소아청소년을 위한 보조기기 체험 프로그램 - 장애소아청소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 지역 의료자원과 연계한 소아청소년장애 전문치료 등 서비스 제공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와 연계 - 해당 지역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중·장기 추진	• 지역 내 소아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지원 체계 구축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연계 방안 수립



③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직접 또는 연계)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서, 또는 지역 내 주치의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사업 대상	• 중증장애인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기센터 이용자
세부 사업계획	• 직접수행일 경우, 일반건강관리, 주장애편리, 통합관리로 구분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포괄적 관리 • 연계 수행일 경우, 지역 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정보제공 및 주치의에게 환자연계 및 의뢰
중·장기 추진	• 만성질환, 2차 장애 관리율 제고에 따른 건강지표 개선 • 의뢰·연계, 협진 등을 통한 의료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④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타 기관과 연계하여 기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 장애인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기센터 이용자
세부 사업 계획	• 치과,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진료 연계 필요시 의뢰 및 연계
중·장기 추진	• 의뢰·연계, 협진 등을 통한 의료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⑤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및 자가건강관리 지원(직접 또는 연계)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연계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 중증장애인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기센터 이용자
세부 사업 계획	• 직접수행일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유소견 수검자의 요청 시 직접 진료 및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 구축 • 연계수행일 경우,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안내·홍보 및 사후관리서비스 의뢰 체계 지원
중·장기 추진	•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예방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표준화

5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영

가. 재정관리 총칙

-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비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정부보조금과 병원 자부담과 계리)
- 정부보조금을 운용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 및 관리
- 정부보조금 소 처리과정(교부신청, 집행관리, 정산 등)을 e나라도움(www.gosims.go.kr)으로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 및 표준화, 회계 투명성 확보
-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12월31일)까지 완결해야 함

나. 예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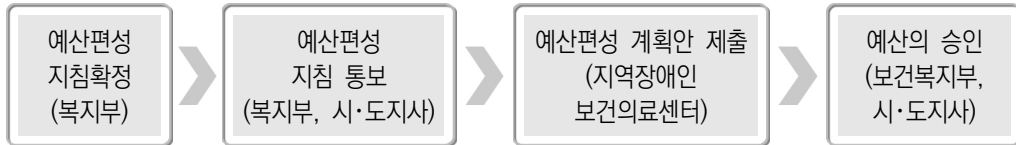
- 1) 지원 근거 : 「장애인건강권법」 제22조제1항제1호
- 2) 지원 범위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국비 100%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국비 50%, 지방비 50%
- 3) 지원 금액

당년도 확보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예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상반기 사업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연도 초에 확정통보한 배정액은 변경 가능

다. 예산 편성

- 1) 회계연도
 - 회계연도(1.1~12.31)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2) 예산편성 절차



- ① 지역센터장은 익년도 사전통보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익년도 예산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각각 법인 이사회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하고 익년도 공문으로 안내하는 시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②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장에게 제출받은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동시에 지역센터장은 지정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연간 예산내용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장은 지역 장애인건강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④ 예산과목 및 내역

※ 아래의 예산편성 과목 및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내역 등은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편성

구분	예산과목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인건비	인건비 (110)	보수(01)	• 직원에 대한 보수(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다만, 인건비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시간(월 11~52h)의 시간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지정 의료기관 자체부담에 한해, 승인한 별도 기타 수당 편성 가능 • 퇴직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일용임금 (04)	• 임시직(일용직, 기간제)에 대한 보수 - 육아휴직, 병가휴직, 단기업무종사자 대상

구분	예산과목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기본 경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 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자산취득비에 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입 및 용역제공 대가 등 - 수당(운영위원, 자문위원 등), 회의참석비, 강사료, 원고료, 통번역료, 자문료
		공공요금 및 제세(02)	- 우편료, 전신전화료·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인터넷 및 웹하드 사용료, 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 자동차세 등, 화재·자동차보험료, 신원보증료 등 기타 보험료
		피복비(03)	상시착용근무 피복(작업복 포함)
		특근매식비 (05)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에 대한 매식비(1식 7천원)
		임차료(07)	- 교육 및 행사 대관비, 복합기 렌탈비, 정수기 렌탈비, 승용차 및 버스 렌탈비 ※ 사무실 임대료 지출 불가
		유류비(08)	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유류(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포함)
		시설장비 유지비(09)	건물관리비,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15)	전산운영 등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동안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용역
		기타운영비 (16)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내 출장경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공식회의 및 행사 식음료비, 연회비 등 제 경비
		관서업무추진비 (02)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 소요경비
	연구비 (260)	연구비(01)	전산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기타 연구용역(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등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사업주의 4대 사회보험 부담금



구분	예산과목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기본 경비	건설비 (420)	시설비(03)	• 시설 개보수(신규 개소 센터에 한해 지원)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인건비 제외한 사업비의 5% 내에서 배정 가능
사업비	사업별 구분/ 사업별 필요 항목 작성		• 사업별 소요되는 예산 내역 작성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 여성장애인의 모성보건 사업 -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사업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부담해야하는 행정처리 및 공과금 등 발생비용에 대한 대치금으로 사업비(인건비 제외) 총액의 5% 이내에서 일반수용비로 행정지원비 제공 가능

라. 예산 집행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할 것)

1) 예산 집행의 책임 : 수탁기관의 장(위탁기관의 장은 관리 감독 책임)

2) 예산 집행의 방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
- 예산 집행 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하며 보조금 전용카드와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함(인건비는 본인통장으로 입금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한 곳 (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사용이나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치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운영비는 이월이 불가하므로, 당년도 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지출결의서는 내부결재를 득하되 내역은 육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하며, 예산집행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 첨부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인정
 -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 사업비 명세서
 - 현금출납원장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분류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유흥주점,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실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기원,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업무추진비(240목) 집행은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할 것



3) 집행기준의 단가

- ※ (주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아래 기준 단가를 참고하여 적용, 아래 기준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종사자는 업무 지역 외 출장은 중요사유가 아닌 경우 자제하여야 하며, 여비 부족이 발생할 경우 해당연도 사업 예산상의 이유로 출장에 대한 여비는 조정지급 가능

● 여비 기준

- (근무지내 출장) 반경 12km 내 및 거리와 상관없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행정구역 내의 경우 10,000원(4시간 미만), 20,000원(4시간 이상)
 - (근무지외 출장) 일비(25,000원), 교통비(실비), 식비(25,000원), 숙박비* 지급
- * 숙박비: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 7만원

- *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교통비는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한 철도·버스·항공 등의 운임만 해당하며, 출장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요금(택시, 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일비 내에서 처리)
- * 업무용 차량으로 출장 시, 여비의 교통비 지급 불가, 조정된 일비 지급 가능
- *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opinet 사이트를 통한 리터당 시세 및 지도 검색을 통해 실비차원의 연료비와 통행료 지급 가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여비 지급 관련 Q&A

질문 1. 왕복 12km 이상의 경우 근무지내 출장인가요? 근무지외 출장인가요?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왕복 약 68km)을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 일반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은 같은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또는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설치주체(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라도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반드시 출장 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 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지정주체(시·도지사)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 여비 지급방법은?

답변 :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2만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출장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 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 근무지와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는 여비 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지와 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한 후에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임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지급 가능합니다.(단, 일비 1/2 감액)

●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상한	지 급 대 상
특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 (매시간)	200,000원	
일반 I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사이버대학 포함) 이상 2.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약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각 병원의 전문의 이상
	초과 (매시간)	100,000원	7.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동일분야 실무경력자, 강의 유경험자 8.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동일분야 실무경력자 9.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및 문화, 예술, 종교, 방송인
일반II	최초 1시간	150,000원	1. 5급 이하 공무원 2. 대학전임강사(급) 이하
	초과 (매시간)	100,000원	3. 연구기관 연구원 4. 특별강사, 일반강사 I 이외의 강사
보조 강사	최초 1시간	50,000원 이내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초과 (매시간)	30,000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강사료는 1일, 1인 최대 60만원 범위 내 지급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행사에 한하여 지급하되,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강의는 제외



● 심사·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심사 위원	1일, 건	200,000원 이내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 이상 심사 시 50% 추가지급 가능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시 300,000원 이내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200,000원 이내	1.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4. 전문의료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200,000원 이내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00,000원 이내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협의회	1일 (2시간 초과 시)	1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서면심사 100,000원)	1.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시험 위원	2시간 초과 시	1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연구, 사업결과보고 등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동시 지급 불가

● 원고료 기준

- (적용대상)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강사료 지급이 되지 않는 자
- (적용범위)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중 하나만 적용하여 지급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A4 용지 1면(20,000원) • 200자 원고지 1매 4,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A4 6매분(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45매까지)에서 지급 가능

● 내부 강사료 기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속의 병원 내부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 시 적용하며, 원외 강의 시 출장여비와 중복 지급 불가(단, 교통비는 실비지급 가능)

구분		강사료
교수직 (전문의)	최초 1시간	150,000원
	초과(매시간)	100,000원
	* 단, 교수직이 없는 병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교수직으로 지급	
일반직	최초 1시간	100,000원
	초과(매시간)	50,000원

※ 다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직원을 강사 요원으로 활용 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가능

* 일정요건 ① 소속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0이상을 차지 ②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각 소속 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강사료는 1일, 1인 최대 60만원 범위 내 지급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4) 예산 전용

- 사업비의 목별 20% 이내는 비목별 전용권 위임 대상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 각 과목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하며, 20%를 초과 시 시·도지사의 승인 후 집행
- 다만, 인건비와 사업비 간의 예산 자체전용은 원칙상 어려우며, 시·도 및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집행
 - ※ 세목 및 세부내역간은 행정절차 및 병원내규에 따라 자체 전용 가능

5) 예산의 이월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까지 이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후 이월(복지부 이월 미승인 시 사업비 반납 조치)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

6)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 (국고보조금의 용도와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설치주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교부결정의 취소) 설치주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설치주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7) 자산관리

- (소유권과 관리책임) 사업예산으로 구입한 자산의 소유권은 관할 시·도에 있고, 관리 책임은 센터장에게 있음

※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등을 준수하여야 함

마. 결산 보고

- 정산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 정산으로 처리하되, 연말정산 후 정산결과(결산)를 다음 연도 2월 둘째주까지 시·도지사와 중앙센터장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집행적정성 여부와 집행실적을 검토하고, 최종 정산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 세부일정은 추후 공문으로 추가 안내
 - 지자체는 사업비 정산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회계감사*를 통해 회계검증을 받게 할 수 있음
 - * 사업기관은 위탁정산 회계법인 수수료 집행가능(계좌이체수수료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관 자체 부담액으로 처리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장을 통하여, 정산이 완료된 자료를 기초로 집행 내역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 가능
- 회계연도 종료 후 국고보조금 결산 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국고로 반납
 -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발생이자)를 포함
 -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및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6 종사자 교육 및 성과관리(안)

가. 종사자 교육

1) 교육과정

- 신규종사자 의무교육(총 12h)은 집합(8h), 온라인(2h), 장애체험교육(2h) 구성
 - 기존종사자 의무교육(총 14h)은 집합교육(14h)으로 구성
- * 집합교육은 필요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교육 내용

구 분	실무기본교육	실무향상교육	워크숍
목적	장애인 건강권법 이해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에 대한 업무수행	실무 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기회 확대
대상	○ 당해연도 신규직원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무자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시·도 담당자 등
시기	○ 연중	○ 5월~11월	○ 12월
시간	○ 온라인교육 2시간 ○ 교육 8시간 ○ 장애체험교육 2시간	○ 교육 14시간	○ 연 1회
내용	○ 온라인교육 - '장애와 인권' 2시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강의) ○ 집합교육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종사자 교육 8시간(사업운영 지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등) - 필요시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 4시간(공통교육) ○ 장애체험교육 - 장애 체험	○ 집합교육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종사자 교육 14시간(문제 중심적 다양한 해결방안 등) ※ 교육내용을 종사자가 기 습득한 내용일 경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교육 선택 가능 - 필요시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 4시간(공통교육)	○ 사업운영 기획 ○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등 토의

* 교육시기, 시간,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성과 관리(안)

1) 사업의 평가는 구조 - 과정 - 결과 항목으로 확인

* 사업지정년도에 따라 평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분류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조		• 전담 조직 구성	배점
		• 시설 확보(회의실, 건강상담실, 교육실 등) 확보	배점
		• 전담 실무인력 확보(여성, 교육,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배점
과정	기획 및 재활사업	•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운영	배점
		• 지역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여성, 교육 실무네트워크) 운영 * 사례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협의회 제외	배점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지역 여성장애인 임신·분만 협력체계 구성	배점
	교육 사업	• 교육 운영실적	배점
		• 교육 모니터링 결과 환류 적용	배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지역장애인에 대한 보건소 CBR사업으로 연계시킨 비율	배점
		• 보건소(CBR)에서 의뢰한 사례의 자원연계 비율	배점
		• 지역자원 연계 비율	배점
	결과	• 지역장애인의 정보이용건수	배점
		• 이용 지역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배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우수사례	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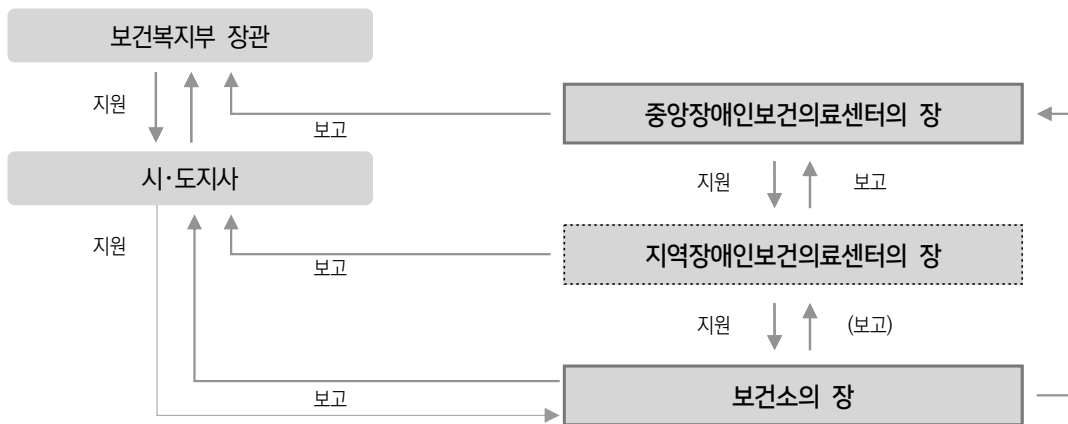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행정 사항

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고체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시·도지사 및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하는 평가,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

<보고 체계도>



나. 개인정보 보호 준수

(※ Ⅱ.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개인정보보호 참조)

다. 행정사항 및 일정

● 사업수행에 대한 행정 보고사항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음

제출사항	제출주체	제출처	제출 시기	방법	서식
지정 운영 계획 보고 (변경 시 포함)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사유발생 시	서면	없음
사업계획서	지역센터장	시·도지사	1월 셋째주까지	대면· 서면	서식32
	시·도지사 중앙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	1월 넷째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역센터장	시·도지사	1월 셋째주까지	서면	서식30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1월 넷째주까지		
실적보고서 (성과평가항목 포함)	지역센터장	시·도지사 중앙센터장	반기별 (7월, 1월 둘째주내)	서면	서식34
	시·도지사 중앙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	반기별 (7월, 1월 셋째주내)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역센터장	시·도지사	다음연도 1월 중	서면	서식35, 서식36
	중앙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	다음연도 1월 중		
예산전용	중앙센터장 지역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사유 발생 시	서면	서식33

※ 세부일정은 추후 공문으로 추가 안내

<참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심볼 디자인 및 의미 등

심볼 디자인	의미	색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함께 돕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표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이미지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표현)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블루계열의 색상과 휴식과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린색을 사용,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부여

제2장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1. 사업 개요	71
2. 사업 운영관리 체계	77
3. 사업 내용	85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97
5. 행정 사항	99

제2장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나. 사업 목표

- 지역장애인 중, 보건의료 미충족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건 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공공조직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의뢰
 - 맞춤형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원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재활의료기관 등에서 의뢰되는 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보건소로 연계되는 예비장애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사회복귀 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협력으로 대상자 발굴 및 인적·물적 자원 연계
 -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원으로 대상자의 사회참여 증진

다. 추진 전략

- 장애인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의 연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조정 기능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의 지역 내 전달체계 확립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관내 보건소 간 보건의료-복지 연계와 조정기능을 구축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내실화로, 지역 내 자원 발굴·개선 및 서비스 지원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
- 장애 감수성 및 인식제고를 위한 장애인과 그 가족, 의료인 및 업무담당자의 교육 등 실시

라. 사업운영 방향

-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전달체계의 기반 구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과 보건소 CBR사업 전담인력의 단계적 확충
 - 전달체계가 구축된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CBR사업 구분 운영
-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보건소 CBR사업 기능 강화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운영 내실화
 - 수요자를 위한 질적 서비스 지원에 중점

마. 법적 근거 및 정책

1)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2) 정책

-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실현(복지부)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1~2030, 중점과제 21. 장애인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장애인 건강 목표치

지표명	2018기준	2030목표
21-1.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통계를 강화한다.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DB구축 및 건강통계 산출	0%	100.0%
21-2.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한다.		
- 성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69.9%
- 성인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71.6%
- 성인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67.5%
-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54.0%	59.0%
- 성인남성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55.8%	60.8%
- 성인여성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51.2%	56.2%
- 중증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18.1%	23.1%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수	8개	100개
21-3.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제고시킨다.		
- 장애인 연간음주율(만 20세 이상)	44.4%	43.4%
- 장애인 현재흡연율(만 12세 이상)	18.3%	16.3%
- 장애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만 12세 이상)	22.8%	24.8%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률	23.8%	33.8%
- 장애인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율	46.5%	42.5%
21-4. 장애인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요인일 관리한다.		
장애인 비만 유병률(만 20세 이상)	43.4%	42.4%
장애인 고혈압 유병률(만 20세 이상)	44.9%	44.9%
장애인 당뇨병 유병률(만 20세 이상)	21.4%	21.4%
- 장애인 골다골증 유병률	13.8%	13.8%
21-5. 장애인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한다.		
- 장애인 우울증 유병률	12.1%	12.1%
- 장애인 스트레스 인지율	58.1%	48.1%
- 장애인 자살 시도율	1.4%	1.4%
- 장애인 자살 사망률	61.2명	51.2명
21-6. 장애인의 건강보건의료서비스의 수혜율을 높인다.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비율	11.1%	100%
- 장애인 미충족 의료 이용률	17.2%	17.2%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수혜율	4.7%	5%
21-7.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	90%	90%
-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률	0%	0%
- 장애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16.2%	18.2%
-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58.6%	60.6%



바. 연혁

- '93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보건소 대상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실시
- '95~'97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 시범 실시
- '98~'99 : 경기도 내 전체 보건소 시범사업 실시
- '00 : 거점보건소 16개소 선정 및 사업실시(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 '04~'06 : 거점보건소 45개소 확대('04. 20개소, '05. 25개소, '06. 45개소)
- '08. 10. :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일부 통합 운영
- '11 : 거점보건소 60개소 확대
- '14~'16 : CBR사업 운영보건소 170개소 확대('14. 113, '15. 142, '16. 170개소)
- '17 : CBR사업 운영보건소 254개소로 전국 확대(필수사업으로 지정)
- '18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마련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지정(서울남부, 경남, 대전)
- '1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추가 지정(서울북부, 강원, 전북) 및 CBR사업 인력 60명 충원(서울, 대전, 강원, 경남)
- '20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추가 지정(부산, 인천, 경기, 제주) 및 CBR 사업 인력 60명 충원(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상도, 제주)
- '21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추가 지정(대구, 광주, 충북, 경북) 및 CBR 사업 인력 28명 충원(부산, 경기, 경북, 서울, 강원, 충북)
- '22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추가 지정(경기 북부, 충남, 전남) 및 CBR사업 인력 43명 충원(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WHO의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연혁

- 1978 : 알마타 선언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
- 1989 : “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BR 매뉴얼 출판, WHO
- 2004 : CBR 공동보고서 “CBR Joint Position Paper” 작성
- 2006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지역사회 개념 강조
- 2009 : 1st CBR AP Congress 개최(방콕)
- 2010 : CBR 뉴가이드라인 제시
- 2011 : 2nd CBR AP Congress 개최(필리핀)
- 2012 : 1st CBR World Congress 개최(인도)

주제: The theme was using CBR as a mean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15 : 3rd CBR AP Congress 개최(일본)
- 2016 : 2nd CBR World Congress 개최(말레이시아) 주제: Empowering and Enabling
- 2017. 1월 : 국립재활원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지정
- 2017. 2월 : Rehabilitation 2030 a call for action
- 2019 : 4th CBID(Community Based Inclusive Development) AP Congress 개최(몽골)
- 2023 : 5th CBID(Community Based Inclusive Development) AP Congress 개최(캄보디아)

● WHO CBR Matrix



● CBR Matrix 보건소 활용 예시





2 사업 운영관리 체계

가. 담당 인력 관리

- 직제상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구성이 원칙이며, 기본인력과 연계인력으로 구성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통합건강증진사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
 - 기본인력 : 재활사업 담당공무원 1명, 재활전담인력 1명 이상
 - 연계인력 :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 의사, 간호사, 치료사는 필수인력으로 구성을 권장하며, 운영점검 시 인력구성 기준사항에 포함되어 평가
- 직제상 팀 구성이 어려운 경우, '기능형'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구성
 - 기본인력과 연계인력을 포함시켜 총 5명 이상 구성하고 재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필요시 활용

1) 기본인력

① 재활사업 담당공무원

- 자격기준
 -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재활사업 담당자로 지정하고 담당자 교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
 - ※ 담당자 교체 시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에 통보
- 담당업무
 - 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및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운영
 - 재활전담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등
- 교육이수(필수)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과정이수

② 재활전담인력

● 자격기준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정규직(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등) 채용 원칙
※ 다만, 보건소 사정에 따라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 우선 채용 가능

● 담당업무

- 등록장애인 관리체계에 따라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내소자 관리
-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포함)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및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운영 지원 등

● 교육이수(필수)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과정이수

●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재활전담인력은 신규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함

* 내소자 관리,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제공, 사후관리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필요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임
- 고용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및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17. 7. 20.)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이며, 민간위탁사업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적 업무가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됨



2) 연계인력

- 재활사업 관련하여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구성하여 협력

※ 단, 보건소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다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사나 병원급 이상에서 전문의 1인을 연계자원으로 확보하여 기능형 팀의 일원으로 함(지역 외의 인력을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전담자의 요청에 따라 관리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자문, 재활 평가, 관리계획 지시 및 팀원 교육 등 수행
- 팀원 중 1명은 내소 장애인 관리 담당으로 지정
- 내소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은 전담자의 요청에 따라 재가 맞춤형 재활관리 제공
-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전체 주기적인 사례관리회의(서비스 계획 점검 등)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수)

※ 보건소별 상이한 업무 인력 규모, 지역사회의 자원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협의체 구성 가능

1) 목적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지를 돕고자 조직된 민관협력 협의체로, 지역 보건의료-복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2) 기능(업무총괄조정 또는 개별 사례관리를 위한 실무협의 기능 가능)

- 장애인의 의학적으로 취약한 신체기능 향상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적용과 당사자 주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무 수행

3) 역할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방향 논의
-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 지역자원 간 정보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강화
-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4) 구성

-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지역의사회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 팀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무 담당자로 구성
 - 위원장(호선)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지역 내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체장 또는 실무 담당자로 구성
 - 최초 협의체 구성기관은 5개 기관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예시 ■

▶ 협의체 소속 기관(10개 기관)

기관명	기관 분류	기관명	기관 분류
○○구 보건소	행정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행정기관	○○주거시설	장애인주거시설
○○시립병원	의료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주민 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지사	공공기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치료사 협회
○○재활병원	의료기관	○○장애인부모회(참관)	장애인 당사자 단체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할
○○○ 보건소	• 재활협의체 회의 준비, 방문재활서비스, 사례기록지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사례당사자 연계
○○시립병원	• 가정의학 전문의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연계
○○재활병원	• 재활협의체 자문, 재활전문 의 진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보험공단○○지사	• 사례 당사자 연계
○○장애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방문재활 사례 의뢰 등
○○주거시설	• 장애인 거주 시설, 자원봉사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학문적 조언, 방문재활 사례기록지 연구 사업 공동 진행 등
○○장애인부모회	• 장애인 당사자 입장 전달 등



5)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은 대상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

6) 운영

-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 필요시 서면회의(비대면회의) 운영
- 참여기관, 협의내용, 운영현황 반드시 작성
 - ※ 부록 <서식 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서식 8>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록 활용

7) 회의수당

- 회의 참석위원에게 1일당 최대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다만, 지자체별 법령, 조례에 따라 지급액 조정 가능)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가능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 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8) 비밀유지

-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논의한 주제 및 관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 부록 <참고 8> <참고 9> <참고 2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참조

다. 지역자원과의 연계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연계(필수)

- 대상자 : 재활욕구 및 보건의료관련 복합적 요구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

* 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문제를 가진 자

- 사업내용 : 보건소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를 위한 사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연계 및 기술 지원

- 세부사업 : 보건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례관리 요구도 사정 → 보건소에서 사례관리 대상 장애인의 의뢰 → 지역센터는 요구도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파악(의료문제, 건강보건관리, 교육 및 훈련 등) → 제공 프로그램별 팀 회의를 통한 계획수립 → 대상자 관리진행 및 종료 여부 결정 → 결과회송

2)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 재활관련 대학이나 재활 병·의원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 수행
- 자문의사 지정 : 보건소 연계병원 자문의사 지정
- 자문내용
 - 보건소 재활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자문
 - CBR 관련 조사 연구사업 수행 자문
 -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자문(사례회의)
 - 재활실무 교육

3) 전국 보조기기센터와의 연계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기능형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에 연계하여 팀 접근 회의를 통한 대상자 발굴·연계



● 연계내용

- 대상자 발굴
- 보조기기 서비스 : 보조기기 개조·제작, 구매 전 체험, 보조기기 유지관리(점검, 수리, 세척)
- 보조기기 교육 : 이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보조기기 사용/훈련 교육
 - ※ 부록 <참고 17>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참조

4) 지역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

-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필수 사항)하여 정기적인 협력 회의 개최
 - 행정기관 : 장애등록 및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지원 의뢰
 - 의료기관 :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의뢰
 - 복지기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후원 및 가정봉사 의뢰
 - 교육기관 : 장애아동 조기발견, 장애아동 교육

5) 자원봉사자 연계

-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 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함
- 신체위생 및 재활훈련, 장애인 및 가족 정서지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함

라. 멘토링 제도

1) 목적

- 멘토 보건소의 사업운영 및 우수사례 정보를 멘티 보건소와 공유하여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내실화

2) 운영

- 시·도는 권역별 멘토 보건소를 매년 지정하여 국립재활원에 통보
- 임기는 멘토 보건소 지정 후 1년(연임 가능)
- 멘토 보건소 담당자가 교체되어 멘토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 가능
 - ※ 멘토 보건소 활동내용에 따라 운영점검 시 가점 차등 부여
 - ※ 멘토 보건소는 부록 <참고 24> 기관별 연락처 참조

3) 선정기준

- 우수기관 및 사업유공자 포상 등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보건소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가 우수한 보건소
- 멘토 보건소 역할이 가능한 사업경력 1년 이상인 사업 담당자
- 기타 멘토 보건소로 추천된 보건소

4) 역할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전반,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등 정보공유
- 신규 보건소 및 담당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견학 프로그램 등 기획
- 지역의 의견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지역(권역) 간담회 운영

- 목적 : 지역(권역) 내 재활병원, 시·도, 보건소 등 재활관련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호 교류 및 연계 협력 강화
- 운영 : 시·도 사업담당자가 주도, 지역 멘토 보건소와 협력하여 연 2회 간담회 개최
- 시·도 역할
 - 지역(권역)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운영하여 멘토-멘티 보건소 실무자 간의 연계 강화하고, 의견수렴하여 중앙에 건의
 - 관내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 등 멘토 지역의 거점역할 수행 지원



3 사업 내용

가. 계획 수립

지역 의료기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지역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참여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운영
-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CBR의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 수립
- 프로그램별로 평가지표와 효과 설정

나. 사업 대상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대상자는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이며, 지역사회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중 5%**를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자(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로 확보

*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부록 <참고 3>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통계자료 참조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예비장애인)
 - * 모든 의료기관은 퇴원환자에게 보건소 CBR사업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 체계와 「개인정보 참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갖추어야 함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 등록 장애인

사업 대상자 이관 기준

-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는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제외
-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비장애인은 타 사업으로 이관
 - ※ 발달장애인은 필요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 및 연계
 - ※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황은 부록 <참고 24> 기관별 연락처 참조

다. 대상자군 분류 기준

- 장애인 대상 측정도구 평가를 입력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를 하되, 담당인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시 군 분류 조정 가능
 - ※ 부록 <서식 5> 기능평가 및 <서식 6> 삶의 질 평가 활용

■ 대상자 군 분류 기준 ■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대상 기준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 기준	기능평가(MBI) 49점 이하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미만	기능평가(MBI) 50~74점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이상	기능평가(MBI) 75점 이상
퇴록 기준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는 정기관리군으로 전환 • 서비스 미 제공기간 총 2년 초과 시 • 전출, 사망, 말소, 주거불명 시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전환 • 서비스 미 제공기간 총 2년 초과 시 • 전출, 사망, 말소, 주거불명 시	• 프로그램 종료 시 • 전출, 사망, 말소, 주거불명 시
서비스 제공	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평가 횟수	연 2회	연 2회	연 1회
재활 기록지	재활기록지 I, II	재활기록지 I, II	재활기록지 I

※ 단, 자기역량지원군은 최초 1회 평가 이후 필요시 재평가를 실시한다.



라. 대상자군별 서비스 내용

- 군별 필수 서비스는 주장애진료와 함께 총체적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CBR사업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 지역의 보건소 CBR사업은 대상군별 필수서비스를 운영한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는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필수·선택 서비스 및 세부프로그램 종류, 횟수 등을 조정 가능
-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대상자 중 지체(척수)·뇌병변 장애유형 등 집중·정기관리군을 주대상으로 함
 - 단, 자기역량지원군은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제공 가능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 목적 : 퇴원 이후에 처음 겪는 장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 주요내용 : 건강관리, 재활훈련,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임
 - 나를 이해하기, 일상생활 동작관리,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건강관리 운동,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 대상자 : 재활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뇌병변·지체 장애인(예비장애인)
- 운영기간 : 총 8회(최소 4회)
- 운영시간 : 1시간 이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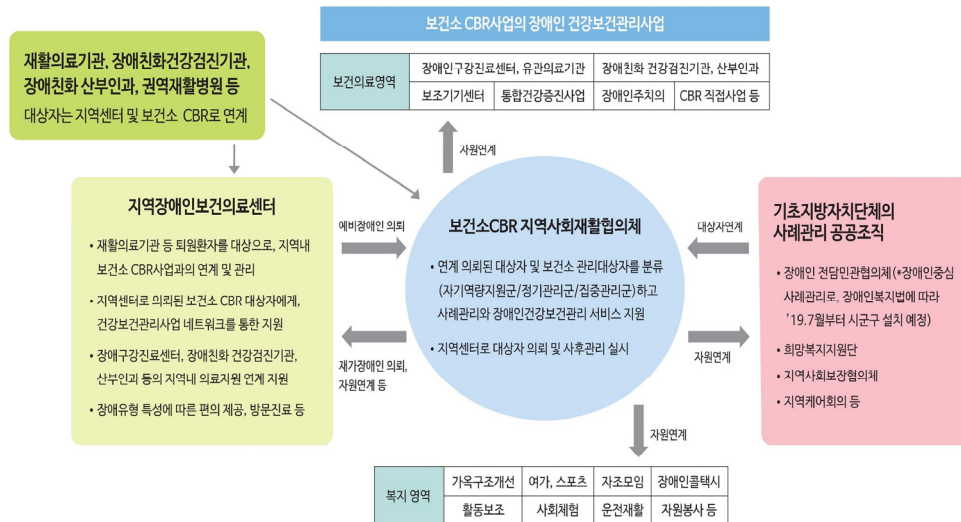
■ 대상자 군별 서비스 분류 ■

서비스 구분	군 분류		세부 프로그램(예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① 건강관리 서비스	필수	선택	① 배뇨·배변관리 ⑥ 연하관리 ② 욕창·피부관리 ⑦ 호흡관리 ③ 영양관리 ⑧ 만성질환관리 ④ 구강관리 ⑨ 기타 ⑤ 통증관리
② 재활훈련 서비스	필수	선택	① 재활운동교육 ④ 2차장애예방교육 ② 일상생활동작훈련 ⑤ 생활안전교육 ③ 관절구축예방교육 ⑥ 기타
③ 사회참여 서비스	선택	선택	① 외출/나들이/체험 ④ 가족소모임 ② 동료상담/자조모임 ⑤ 기타 ③ 스포츠/레크레이션
④ 자원연계 서비스	필수	선택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③ 의료기관과연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④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⑤ 자활센터와 연계 ⑥ 장애인단체와 연계 ⑦ 행정기관과 연계 ⑧ 교육기관과의 연계 ⑨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⑩ 장애인 운전 지원 ⑪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⑫ 보조기기센터와 연계 ⑬ 건강검진 지원 ⑭ 기타
⑤ 자기역량 서비스	선택	필수	①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② 기타
⑥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필수	필수	① 프로그램 소개 ⑤ 건강관리 운동 ② 나를 이해하기 ⑥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③ 일상생활 동작관리 ⑦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④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⑧ 마무리

※ 부록 <참고 1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 관련 활용가능한 매체 참조

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제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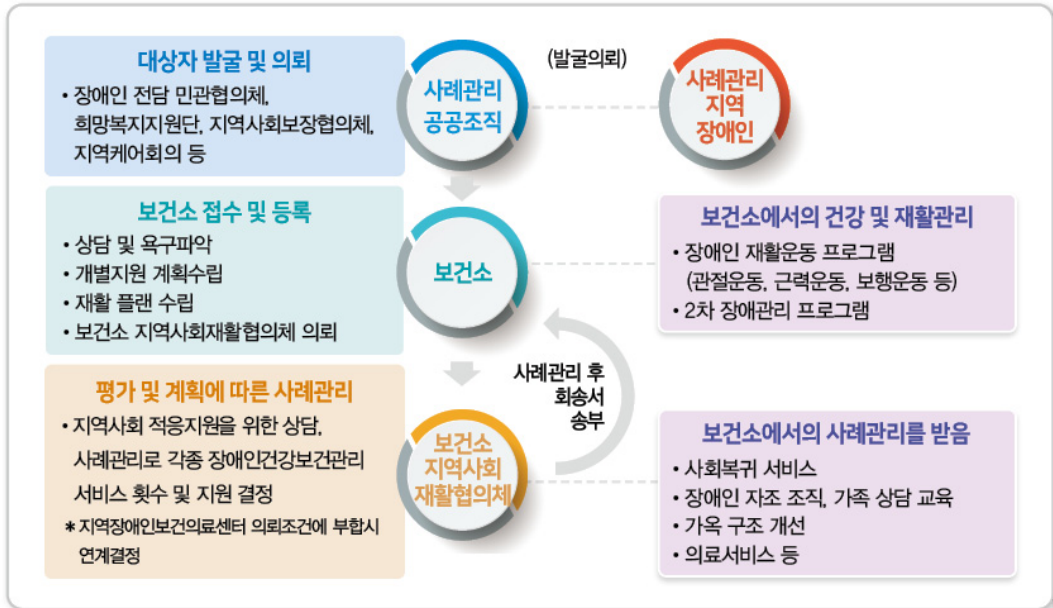
1)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과정



2)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예비장애인의 경우



3) 지역사회 장애인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4) 사업 대상자 관리체계

과정	내용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공공조직을 통한 장애인 확보				
↓					
대상자 등록 및 군 분류	<table> <tr> <td>대상자 등록</td><td> -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된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로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td></tr> <tr> <td>군 분류</td><td>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3개 군) - 장애인 측정도구 기능평가(MBI), 삶의 질(EQ-5D)을 측정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 ※ 필요시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군 분류 조정 가능 </td></tr> </table>	대상자 등록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된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로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군 분류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3개 군) - 장애인 측정도구 기능평가(MBI), 삶의 질(EQ-5D)을 측정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 ※ 필요시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군 분류 조정 가능
대상자 등록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된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로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군 분류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3개 군) - 장애인 측정도구 기능평가(MBI), 삶의 질(EQ-5D)을 측정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 ※ 필요시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군 분류 조정 가능				
↓					
초기상담	- 초기상담 및 재활사정(기능평가 및 삶의 질 평가 등)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 부록 <서식 4> 재활기록지(I, II) 활용 - 자기역량지원군 : 부록 <서식 4> 재활기록지(I) 활용 -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재활 요구도 파악				
↓					
서비스 계획수립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재활 요구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장애상태별 적절한 서비스 연계 제공 - 전문인력이 판단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조정 가능				
↓					
재평가 및 사후관리	- 재활서비스 제공 후 적절한 평가(만족도, 기능평가 등) 실시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는 군 재분류 시행 - 서비스 미제공 기간 총 2년 초과 시, 전출, 사망, 말소, 주거불명 시 퇴락처리				

바.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1) 상담 목적

-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은 초기면접부터 종결까지 퇴원과정과 퇴원직후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로 정보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직업재활이나 진료, 건강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으로 장애인의 건강 관리 및 재활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함

2) 상담 대상자

- 병·의원에 입원한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3) 상담 절차 및 방법

- (상담절차) 대상자 접수확인 → 대상자 정보수집 → 상담계획 및 안내 → 초기상담 → 과정상담 → 종결상담
 - ※ 초기상담 이후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대상자는 과정상담 및 종결상담 생략 가능
- (상담장소) 병·의원, 가정
- (사용매체) 직접 방문, 전화 영상통화 등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흐름도

과정	내용	기간(예시)
대상자 접수확인	회복기재활병원 등 발송된 서비스 의뢰서 확인	입원기간 내
↓		
대상자 정보수집	- 의뢰목록 내 우선순위 선정 - 서비스이력 등 타기관의 자료수집	입원기간 내
↓		
상담계획 및 안내	상담일정 및 내용 계획·안내	입원기간 내
↓		
초기 상담	- 초기상담 실시 후 관련 시스템에 기록 ※ 부록 <서식 3> 연계병원 퇴원상담기록지 활용 - 상담결과 공유(가족, 연계기관 등)	입원기간 내
↓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대상자는 과정 및 종결상담 생략 가능	퇴원 후
↓		
과정 상담	- 과정상담 실시 후 관련 시스템에 기록 ※ 부록 <서식 2> 상담기록지 활용 - 상담결과 공유(가족, 연계기관 등)	퇴원 후 2일 이내
↓		
종결 상담	- 종결상담 실시 후 관련 시스템에 기록 ※ 부록 <서식 2> 상담기록지 활용 - 상담결과 공유(가족, 연계기관 등)	퇴원 후 15일 이내

사.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1) 사례관리 개념

-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는 보건의료 관련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함

2) 사례관리 목표

- 장애인(예비장애인)의 보건의료 관련 욕구에 맞춰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례관리 대상자

- 중증도가 심하고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 기관 단순 의뢰 및 서비스 제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전체가 아닌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선정

타 부서(기관) 의뢰 기준

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 기준

- 재활욕구 및 보건의료관련 복합적 요구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인 경우
- * 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문제를 가진 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를 위한 사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연계 및 기술 지원

②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기준

- 대상자 상담 및 평가 시 건강관련 문제 이외에 폭력 등 안전문제,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 법률 및 권익보장에 관한 문제 등 **복지관련 복합적 문제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의 참여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보건 연계 부문을 지원
- ※ 부록 <참고 15> 희망복지지원단 안내자료 참조

③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뢰 기준

- 재가 장애인 중 방문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부서로 의뢰 및 연계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4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안내서」에 따라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 부록 <참고 16> 방문건강관리 지침 관련자료 참조



4) 사례회의의 운영

- 분기별 1회(대상자 선정, 종결 시 필수로 진행하되, 사례관리 수행 중 필요시 수시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공공기관은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 지원 운영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상자 정보 공유
- 동원 가능한 자원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이 연계할 자원을 함께 선택
-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을 개발할 것인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의뢰할 것인지, 제외대상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 ※ 하나의 결론으로 합의되기 어려운 경우, 2가지 이상의 안건으로 재회의를 소집
- 사례회의의 정리 및 차후 일정 조율

5) 서비스 점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과정상의 어려움 파악, 서비스 제공 내용, 대기기간 등 파악하여 모니터링 사항을 기록
 - ※ 부록 <서식 11>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종결지) 활용

6) 서비스 종결

-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및 사례관리 목표가 달성된 경우 종결
- 대상자의 여건에 의한 종결(타 시·군·구 전출, 거절이나 포기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미종결 경우 필요시 사례회의의 재실시

7) 사후관리

- 서비스 종료 6개월 후 추후관리 실시(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 관리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절차 ■

순 서	내 용
대상자 선정	- 중증도가 심하고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 기관 단순 의뢰 및 서비스 제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전체가 아닌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선정
↓	
건강보건상담	초기상담 시 대상자의 욕구 및 환경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례회의 안건 선정
↓	
사례회의 개최	- 대상자 선정 등 전문적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방안으로 사례회의 개최 - 대상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며, 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서비스 제공 내용, 지역 내 자원 연계방안 등 논의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 - 여러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주관기관이 총괄적으로 서비스 제공시기, 방법 등 조정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과정상의 어려움 파악, 서비스 제공 내용, 대기기간 등 파악하여 모니터링 사항을 기록
↓	
종결	-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및 사례관리 목표가 달성된 경우 종결 - 대상자 여건에 의한 종결(타 시·군·구 전출, 거절이나 포기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미종결 경우 필요 시 사례회의 재 실시
↓	
사후관리	- 서비스 종료 6개월 후 추후관리 실시(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 관리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가. 목적

- 시·도, 보건소, 복지관, 재활의료기관 등의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사업 실무자들이 장애인 재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수요자 중심의 전문분야별 교육을 제공하고 역량 강화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관

- 국립재활원

다. 대상

-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복지관 등 재활사업 업무 관련자
- 권역별재활병원을 포함한 재활의료기관(시설)의 보건·복지·의료 인력
- 그 밖의 장애인 재활 관련 종사자 및 이해당사자

라. 과정별 개요 (※ 일정은 별도 공문 통보)

- 각 과정별 일정 및 내용은 국립재활원 교육지원 홈페이지(nrc.go.kr)와 안내 공문을 통해 확인
- 실시간 교육 이수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교육시간 인정(이러닝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이러닝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플랫폼(inhealth.kohi.or.kr)에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

구 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목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기술습득	지역사회중심재활 관련 종사자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교육대상	• 장애인 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 장애인 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 교육과정에 따라 면허(자격)이 필요할 수 있음
교육시기	• 3월 ~ 11월	
교육시간	각 과정별 교육 시간 참고 ※ 총 14시간(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교육 인정시간)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내용	• 실시간 교육(대면/비대면)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이해 등 • 이러닝 교육 - 재활사업 실무자 사례관리 기본과정 등	• 실시간 교육(대면/비대면) - 재활사업 실무자 사례관리 과정(사례중심) - 건강운동생활 • 이러닝 교육 - 일상생활운동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마. 추진절차

주 관	추진절차	일정
국립재활원	•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12월~2월
↓		
국립재활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연중 교육계획 통보	3월
시·도 및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 각 세부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안내 발송 (국립재활원→시·도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계획에 따른 각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조사 실시 → 결과 보고서(만족도 조사 포함) 작성 → 부서장 내부 결과보고	3월~11월
↓		
국립재활원	• 연중 교육 수행 결과 취합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통보 • 연중 교육 수행 결과 국립재활원장 보고	12월



5 행정 사항

가. 주요 일정

시기	수행내용	해당기관
'23년 12월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24년 1월	사업계획 제출	지자체
'24년 1~12월	사업운영, 자체평가, 모니터링 및 교육	지자체
'24년 1~2월	하반기 실적보고('23년 7~12월 실적)	지자체
'24년 1~5월	운영점검 실시('23년 1~12월 실적)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4년 7~8월	상반기 실적보고('24년 1~6월 실적)	지자체
'24년 9월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 성과대회 개최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4년 12월	사업 만족도 조사('24년 1~12월)	지자체
'25년 1월	하반기 실적보고('24년 7~12월 실적)	지자체

※ 주요 일정은 변동 가능

※ 23년 성과(정성, 정량) 평가 예정 : 보건소 운영점검 실시

나. 성과 평가

- (목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가 구축된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사업 차이를 반영하고, 지역 간의 사업 내실화를 통한 평균 상향 운영
- (평가결과 반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장관표창 등 포상 지원(성과 평가 결과활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성과지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서울, 부산, 대전,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충북, 광주, 대구, 경북, 경기 북부, 전남, 충남)과 그 외 지역은 별도 구분 평가

- 멘토 보건소는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 및 산식은 별도 공문 통보

- (실적기간) 2023. 1. 1. ~ 12. 31.까지
- (보고방식) 공문에 따른 수기 제출
- (보고기한) 2024. 1~4월(상세일정 추가 안내 예정)

구분	운영점검 지표 I	운영점검 지표 II	멘토 보건소 추가지표
해당 지역	울산, 세종 (6개소)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충북, 광주, 대구, 경북, 전남, 충남 (252개소)	지역 내 멘토보건소 (16개소)
지표	총 11항목 (정성지표 5항목, 정량지표 6항목)	총 13항목 (정성지표 8항목, 정량지표 5항목)	총 2항목 (정량지표 1항목, 정성지표 1항목)
점수	총점 102점	총점 102점	(추가점수 2점)

※ 최종 순위 집계 시 운영점검 지표 II는 100점으로 환산 처리

※ 평가 지표 수는 변동 가능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구분	실적기간		보고방식	해당기관	제출기한
재활사업 및 대상자관리	연중		PHIS 입력	보건소	연중
반기보고	상반기	'24.1.1.~6.30.	공문에 따른 PHIS 입력	보건소	'24년 7월
			실적 확인 후 공문제출	시·도	
	하반기	'24.7.1.~12.31.	공문에 따른 PHIS 입력	보건소	'25년 1월
			실적 확인 후 공문제출	시·도	
만족도 조사	'24.1.1.~11.30.		공문에 따른 PHIS 입력	보건소	'24년 12월

※ (PHIS 등록 시 유의사항) PHIS 사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



- 재활사업 및 대상자 관리 : 재활기록지 I, II 및 재활서비스 등 입력
 - 군 분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를 퇴록 처리 후 재등록하도록 함
 - 사업 반기보고 : 지역사회 총 인구 수 및 등록장애인 수^{※※}
 - 사업 만족도 조사

- 보건사업 - 지역사회중심재활 - 대상자관리 - 만족도 조사관리
 - 보건사업 - 지역사회중심재활 - 현황 - 만족도조사 입력대장(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만족도조사 입력 목록조회 가능 - 조회된 만족도조사 입력 목록이 엑셀다운로드)
- ※ PHIS 사용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
 ※※ 지역 내 총 인구수 및 등록장애인 수 국가통계포털(KOSIS) 사용하여 확인
- 지역 내 총 인구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 지역 내 등록장애인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conn_path=I2

라.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일원화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부록 <서식 1>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활용
 - ※ 개인정보 처리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 집행

-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의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인건비 지급기준 포함)에 따름
 - ※ 참고 항목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4. 운영수당
여비	1.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소모품	11. 프로그램 재료비
일반보상금	1. 사회보장적수혜금 10. 행사실비보상금
인건비	



제Ⅲ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서비스



제1장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제1장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1 사업 목적

-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개선 또는 제거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
- 장애인의 건강 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2 사업 대상

- 사업 대상자는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1~3급)을 수검하는 검진기관은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1인 기준) 62,920원의 가산비 지원

3 사업 운영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의 요청 범위에 따라 건강검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
-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장애유형별 4종)을 검진실에 배치하고, 홈페이지로 안내 및 예약 편의 제공
- 시·청각 장애인 등 검사 진행 시 영상모니터 및 시각 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검진 서비스 제공

<참고 1>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개시 기관

구 분			연락처
서울	1	서울의료원	02-2276-7000
	2	국립재활원	02-901-1400
부산	3	부산광역시의료원	051-607-2101, 2192, 2193
	4	부산성모병원	051-933-7651, 7672, 7673
	5	연제일신병원	051-978-2066 / 051-862-2002
인천	6	인천광역시의료원	개인 032-580-6037 / 단체 032-580-6033, 6034
대전	7	대청병원	(대표전화) 1899-6075
경기	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777, 0780, 0781
강원	9	원주의료원	033-760-4586
충북	10	청주의료원	043-279-0110
경북	11	안동의료원	054-850-6277, 6278
	12	경북권역재활병원	053-230-8910, 8912
경남	13	마산의료원	055-249-1234~5
	1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1570
제주	15	중앙병원	064-786-7282~3
	16	서귀포의료원	064-730-3020

<참고 2> '24년 상반기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예정 기관

구 분		연락처
부산	좋은삼선병원	051-310-9500
전남	순천의료원	061-759-9420
경북	경북안동병원	054-840-0433
경남	진주고려병원	055-751-2421
	조은금강병원	055-330-0222
	경남밀양병원	055-355-3993



<참고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연번	소관	기관명	일반 검진	암 검진						구강 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1	복지부	국립정신병원(서울)	○	-	○	-	○	-	-	○
2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	○	○	○	○	○	-	○
3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	○	○	○	○	○	○
4	복지부	서울적십자병원	○	○	○	○	○	○	○	○
5	복지부	인천적십자병원	○	○	○	○	○	○	-	○
6	복지부	상주적십자병원	○	○	○	○	○	○	○	-
7	복지부	통영적십자병원	○	○	○	○	○	-	-	-
8	복지부	거창적십자병원	○	○	○	○	○	○	-	-
9	복지부	영주적십자병원	○	○	○	○	○	○	○	-
10	복지부	국립암센터	○	○	○	○	○	○	○	○
11	교육부	강원대학교병원	○	○	○	○	○	○	○	-
12	교육부	경북대학교병원	○	○	-	○	○	○	-	○
13	교육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	○	○	○	-	-
14	교육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	○	○	-	-
15	교육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	○	○	○	-
16	교육부	부산대학교병원	○	○	○	○	○	○	○	○
17	교육부	전남대학교병원	○	○	○	○	○	○	-	-
18	교육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	○	○	○	○	○
19	교육부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	○	○	○	○	○	-	-
20	교육부	전북대학교병원	○	○	○	○	○	○	○	○
21	교육부	제주대학교병원	○	○	○	○	○	○	○	○
22	교육부	충남대학교병원	○	○	○	○	○	○	-	-
23	교육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	○	○	○	○	-	-
24	교육부	충북대학교병원	○	○	○	○	○	○	○	-
25	교육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	-	-	-	-	-	○
26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	-	-	-	-	-	○

연번	소관	기관명	일반 검진	암 검진						구강 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27	교육부	양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	-	-	-	○
28	교육부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	-	-	-	-	-	○
29	교육부	전북대학교치과병원	-	-	-	-	-	-	-	○
30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	-	-	-	-	○
31	교육부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	-	-	-	-	○
32	과기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	○	○	○	○	○	-
33	과기부	한국원자력의학원	○	○	○	○	○	○	○	○
34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	○	○	○	○	○	○
35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	○	○	○	○	○	-
36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	-	○	○	-	-	-
37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	○	○	○	○	-	-
38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	○	○	○	○	○	-
39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	○	○	○	○	○	○
40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	○	○	○	○	○	○
41	보훈부	중앙보훈병원	○	-	-	-	-	○	-	○
42	보훈부	부산보훈병원	○	○	○	○	○	○	○	○
43	보훈부	광주보훈병원	○	-	○	○	-	○	○	○
44	보훈부	대구보훈병원	○	○	○	○	○	○	-	○
45	보훈부	대전보훈병원	○	○	○	○	○	○	○	○
46	경찰청	경찰병원	○	○	○	○	○	○	-	-
47	서울시	보라매병원	○	○	○	○	○	○	○	○
48	서울시	서남병원	○	○	○	○	○	○	○	○
49	서울시	서북병원	○	○	○	○	○	○	-	○
50	서울시	동부병원	○	○	○	○	○	○	-	○
51	서울시	어린이병원	○	-	-	-	-	-	-	○
52	서울시	은평병원	○	-	-	-	-	○	-	○
53	부산시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	-	-	-	-	-	-	-

연번	소관	기관명	일반 검진	암 검진						구강 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54	대구시	대구광역시의료원	○	○	○	○	○	○	-	○
55	인천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	○	○	○	-	-	○	○
56	경기도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	○	○	○	○	○	○
57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	○	○	○	○	○	○
58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	○	○	○	○	○	○
59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	○	○	○	○	○	○
60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	○	○	○	○	○	-
61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평택)	○	-	-	-	-	-	-	-
62	강원도	강릉의료원	○	○	○	○	○	○	○	○
63	강원도	속초의료원	○	○	○	○	○	○	○	○
64	강원도	영월의료원	○	○	○	○	○	○	○	○
65	강원도	삼척의료원	○	○	○	○	○	○	○	○
66	충북	충주의료원	○	○	○	○	○	○	○	○
67	충남	공주의료원	○	○	○	○	○	○	○	○
68	충남	홍성의료원	○	○	○	○	○	○	○	○
69	전북	군산의료원	○	○	○	○	○	○	○	○
70	전북	남원의료원	○	○	○	○	○	○	○	○
71	전북	마음사랑병원	○	-	-	-	-	-	-	-
72	전북	남원노인요양병원	○	-	-	-	-	-	-	-
73	경북	포항의료원	○	○	○	○	○	○	○	○
74	경북	김천의료원	○	○	○	○	○	○	○	○
75	제주	제주의료원	○	○	○	○	○	○	-	-
76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	○	○	○	○	○	-	-
77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	○	○	○	○	○	-	-
78	부천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	-	-	-	-	-	-	-
79	정선군	정선의료재단군립병원	○	○	○	○	○	○	-	-
80	문경시	시립문경요양병원	○	-	-	-	-	-	-	-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제2장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제2장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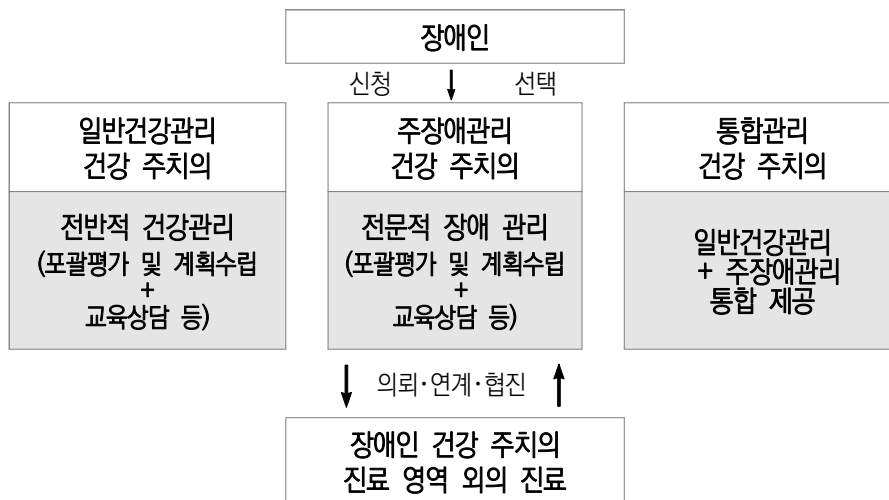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가. 사업개요

-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경증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만 참여가능

<장애인 건강 주치의 운영모형 >



나. 사업대상

-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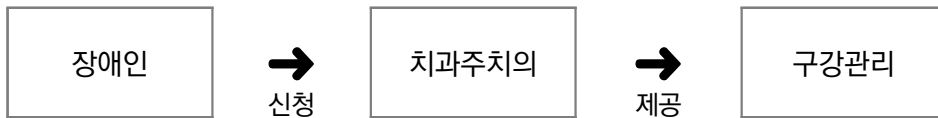
*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가. 사업개요

- 장애인이 치과 주치의로 등록·신청한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함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념도 >



나. 사업대상

-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정신 장애인'으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여 치과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약물 진정, 행동 조절이 필요 없이 물리적 숙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자

<참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연락처

기 관	구 분		연락처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과주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개선부	033-736-378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033-739-1698,1660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사업과	02-901-1305



3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교육 안내

가. 교육 목적

- 장애인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 구강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이해 및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인 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나. 과정 개요

- 교육주관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교육대상 :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플랫폼(mydoctor.kohi.or.kr)에서 온라인 교육
 - * 주치의 수강신청 및 교육이수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플랫폼 운영 일정 확인 필요
- 교육내용

<'24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교육>

교육과정	교육 대상	차시
건강주치의 일반·통합관리 교육	일반건강관리·통합관리 주치의	10차시
건강주치의 주장애관리 교육	주장애관리 주치의	4차시
치과주치의(구강건강관리교육)	치과주치의	5차시
방문간호사교육	건강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간호사	4차시
치과위생사교육	치과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치과위생사	4차시
선택교육*	전체	2차시

*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교육은 아니지만, 건강주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선택 교육과정 운영

<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흐름도 >



다. 지역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지역선택 ⇒ 검색

The screenshot displays the NHI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 '건강iN' logo is visibl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여기요', '건강iN', '정책센터', '국민과함께', and '공단요모조모'. The '검진기관/병원찾기' (Find Examination/Healthcare Institution) link is highlighted in the left sidebar.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서울특별시' (Seoul Special City) and '강북구' (Gangbuk-gu). The search results show a list of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A 건강의집 의원' (A Health's House Clinic) and 'B 콧마가정의원' (B Comma Family Hospital).

제3장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제3장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1 사업 목적

-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하여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

2 사업 운영

- 회복기 재활환자 대상으로 집중재활을 통한 기능회복 및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추진
 - (회복기재활환자)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자로서 그 범위를 고시로 지정(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3 제공서비스

- 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 적정 입원기간 보장, 재활전문치료팀에 의한 통합치료계획 수립, 주기적 기능평가, 환자맞춤형 재활치료, 지역사회 연계·주택방문 등 퇴원계획 수립

<참고>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23.3.1~26.2.28)

지역	의료기관명	연락처
서울 (7)	국립재활원	02-901-1700
	드림요양병원*	02-430-1122
	로이병원	1644-7541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02-3284-7777
	제니스병원	02-3436-8888
	청담병원	02-2104-2000

지역	의료기관명	연락처
부산 (6)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051-363-2331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051-960-0100
	워크재활의학과병원	051-714-4119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051-325-9700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051-629-8000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051-744-0123
인천 (3)	미추홀병원	032-430-6200
	브래덤병원	032-456-7600
	서송병원	032-551-0114
대구 (5)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053-715-7575
	남산병원	053-250-1100
	대구보건대학교병원	053-320-1900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053-620-7300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053-740-1000
대전 (4)	다빈치병원	1566-9852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042-717-7575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042-607-1234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042-824-6900
광주 (3)	광주365재활병원	062-950-9500
	우암병원	062-260-2700
	호남권역재활병원	062-613-9000
경기 (11)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555
	로체스터재활병원	031-879-7575
	린병원	031-8005-1300
	마스터플러스병원	031-879-2200
	분당베스트병원	1899-0175
	분당러스크재활병원	031-716-0007
	에스알씨(SRC)재활병원	031-760-3636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031-554-7727
	일산복음미래병원	031-977-6633
	일산중심병원	031-810-2000
	휴앤유병원	031-202-0114



지역	의료기관명	연락처
강원 (1)	강원특별자치도병원	033-248-7700
충북 (4)	씨엔씨푸른병원	043-291-8114
	아이엠재활병원	043-284-0675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043-265-0051
	첼로병원	043-211-9090
충남 (2)	천안재활병원	041-575-7100
	SG삼성조은병원	041-571-7581
전북 (1)	드림솔병원	063-250-8000
경북 (2)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054-710-6000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북주회복병원	1666-9640
경남 (3)	예손재활의학과병원	055-791-7575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0507-1421-7022
	희연병원	055-270-2500
제주 (1)	제주권역재활병원	064-730-9000

*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종별전환 후 지정 예정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제4장

권역재활병원





제4장 권역재활병원

1 사업 목적

- 전문재활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재활의료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적 의료불균형을 해소
- 민간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하여,
 - 잠재적 장애유발 질환이나 손상으로 급성기 치료 후 잔존장애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 함
- 국립재활원과 현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의 공공의료재활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최대화 시켜 조기 사회복귀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7조(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무)

3 사업 대상

-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우선 선정가능

4 권역재활병원 운영현황

구분	기관명	대표 번호	위치	규모	연면적	병상수	사업비 (건축비)	건축 기간	개원 일	운영 기관
경인	경인권역 재활병원	032 -899 -4595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지하1층 지상4층	16,645㎡	150병상	국고 185억 지방비 185억	'07 ~ '09년	'10. 9.30	대한 적십자사, 인천광역시
강원	강원특별 자치도 재활병원	033 -248 -771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	지하 1층 지상 5층	11,089㎡	165병상	국고 135억 지방비 135억	'06 ~ '12년	'12. 10.31	강원대학교 병원
충청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042 -338 -2352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	지하 3층 지상 8층	17,542㎡	152병상	국고 135억 지방비 135억	'09 ~ '12년	'13. 4.10	충남대학교 병원
호남	호남권역 재활병원	062 -613 -9066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90	지하 1층 지상 4층	16,500㎡	156병상	국고 135억 지방비 135억	'10 ~ '12년	'13. 1.23	조선대학교
영남	영남권역 재활병원	055 -360 -420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지하 2층 지상 6층	13,699㎡	150병상	국고 135억 지방비 135억	'09 ~ '11년	'11. 10.18	양산부산 대학교 병원
경북	경북권역 재활병원	053 -230 -8800	경상북도 경상시 미래로 120	지상 4층	26,472㎡	150병상	국비 135억 지방비 189억	'18~ '20년	'21. 3.30	경북대학교
제주	제주권역 재활병원	064 -730 -90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지하 2층 지상 7층	19,019㎡	150병상	국고 135억 지방비 135억	'09 ~ '13년	'14. 1.21	서귀포 의료원

※ 건립·개원 예정 : 가칭 「전북 권역재활병원」, 「충남 권역재활병원」('17년 선정, '26년 개원 예정)

제5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제5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 사업 배경 및 목적

1) 어린이 재활의 중요성

- 재활은 ‘급성 질환을 치료한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의료로서, 전문재활병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의료의 일종’으로 기능적 향상과 합병증 예방, 삶의 질 증진이라는 점에서 중요
- 특히 소아는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맞물려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추어 연고지에서 지속적인 의료 제공이 중요

2) 사업 추진 배경

-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필요
-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2 법적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등)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3 사업 대상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우선 선정가능

4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정 현황

종별		지역	기관명	선정년도
건립	병원	충남권	충남대병원	2018
		경남권	창원경상대병원	2020
	의료센터	전남권	호남권역재활병원	2021
			목포중앙병원	2021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2019
			원주의료원	2020
		경북권	계명대 동산병원	2021
			안동의료원	2021
		충북권	청주의료원	2020
		전북권	전주예수병원	2019
지정 (운영중)	병원	수도권	서울재활병원	202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21
	의료센터	제주권	제주권역재활병원	2021

병원: 접근성 좋은 중심지, 소아재활거점기능 수행/의료센터: 지역 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외래 중심 치료

지정: 기존의 우수한 소아재활 전문병원

* 건립기관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 중

제6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제6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1 사업 목적

-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의 운영 및 기능개보수 지원

2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 등)

3 사업 대상

-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아래 해당하는 자는 무료 진료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입양특례,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노숙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4 기타 참고사항

- 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해당년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추진(단, 신축 지원은 불가하며, 국고보조비율 : 30%)
- 의료장비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참고】의 목록의 장비를 우선 구매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관련 사항은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참고
- 나.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관련 사업 추진 시 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개정 '11.3.30, 시행 '12.3.31) 이후, 장애인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의 설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운영 지침을 준용

참고 지역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 병원급 9개소, 의원급 10개소

시·도	시·군·구	시설명	의료재활시설 병원 연락처
서울	성동구	성동재활의원	02-2204-9970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마포구	넥슨어린이재활병원	02-6070-9000
	관악구	SRC재활병원	031-760-3622
		SRC부설의원	02-871-3636
	강동구	주몽재활의원	070-8255-0356
부산	영도구	천성의원	051-412-4408
대구	수성구	인제재활병원	053-752-8683
인천	미추홀구	인천재활의원	032-866-0102
	연수구	경인권역재활병원	032-899-4000
대전	유성구	성세병원	042-820-1234
		대전재활병원	042-717-7575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033-248-7700
충북	청주	충북재활의원	043-271-8150
경북	안동	경북재활병원	054-858-8410
경남	창원	홍익재활병원	055-286-1518
	거제	마하재활병원	055-633-3000
제주	제주	제주춘강의원	064-745-8800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제7장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제7장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원내용 :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관련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 지원현황

연번	지정연도	소재지	종별	기관명	연락처
1	2021	서울 종로구	상급종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8
2	2021	부산 부산진구	상급종합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051-890-6777
3	2021	광주 동구	상급종합병원	전남대학교병원	062-220-6372
4	2021	울산 동구	상급종합병원	울산대학교병원	052-230-1124
5	2021	경기 고양시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577-0013
6	2021	충북 충주시	종합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043-840-8312
7	2021	전북 전주시	종합병원	예수병원	063-230-1504
8	2021	경북 구미시	종합병원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054-450-9970
9	2022	서울 영등포구	종합병원	성애병원	02-840-7121
10	2022	서울 양천구	종합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1666-5000

3 장애친화 산부인과 기능

● 진료

- 권역 내 여성장애인 진료의 거점 역할 수행
- 24시간 265일 여성장애인 고위험 분만, 응급진료 시행
- 여성장애인 평생 건강관리 연계서비스 제공

● 교육

- 원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교육 : 여성장애인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장애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시행
- 지역사회 내 여성장애인 및 가족 교육
- 심포지엄 및 세미나, 성과보고회 등

● 연구

- 여성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 수행

*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타 권역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방자치단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과의 연계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의 연계 :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연계 : 「장애인 건강권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상호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참고 자료





참고 자료 목록

참고 목록		페이지
참고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47
참고 2	장애등급제 폐지 개요	193
참고 3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통계자료	195
참고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 심의기준 (예시)	202
참고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위탁약정서 (예시)	203
참고 6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운영회칙 (예시)	209
참고 7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매뉴얼	212
참고 8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	216
참고 9	OOO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	217
참고 1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도·점검표	225
참고 11	관련 기관 종사자 의무사항	227
참고 12	중증 대상자의 건강보건관리 필요도 평가도구 (예시)	228
참고 13	유용한 평가도구 (예시)	231
참고 14	○○시·군·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규정 (예시)	234
참고 15	희망복지지원단 안내자료	236
참고 16	방문건강관리 지침 관련자료	238
참고 17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240
참고 1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 관련 활용가능한 매체	243
참고 19	장애발생예방교육 (손상예방교육) 안내자료	254
참고 20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259
참고 21	보건소-공단 간 시스템 연계 안내	260
참고 22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63
참고 23	개인정보 보호 안내	269
참고 24	기관별 연락처	271



참고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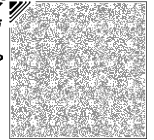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걱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1.>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13.>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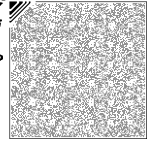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 6. 13.>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3.>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3.>	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본조신설 2023. 11. 28.]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3. 그 밖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2.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년 이내에(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9. 27.〉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의 명칭·개설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 현황 3.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⑥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항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⑨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⑩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 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 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 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 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 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 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 다.<개정 2023. 9. 27.> ⑪ 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 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 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 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 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 추도록 할 수 있다.<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2023. 9. 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진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9. 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⑥ 공단은 검진기관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장애	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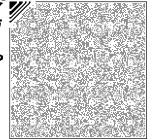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2.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 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 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 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 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 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 강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2.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 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 장애인에 대한 진료·상담·검사 시의 유의사항 4.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3.>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1. 28.>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礙)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등록 등)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건강보험증(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환수하려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우 4.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19. 6. 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6. 4.>]	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이하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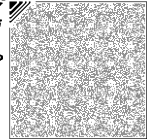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 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평가 2.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개선 3. 그 밖에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2. 1. 21., 2023. 9. 27.〉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신설 2022. 1. 21.>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 1. 21.> 1.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1. 21.>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21. 6. 30.] 제13조의3(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③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21. 6. 30.] 제13조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등의 위탁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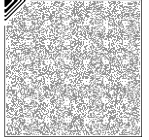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병상·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 2.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조직·인력수급·시설·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13조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 인력의 채용 관련 사실 증명 서류 3. 그 밖에 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2의6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2.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년 이내에(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갖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 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 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결정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 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 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 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 지 제6호의4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 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 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 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 지 제6호의5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보 조인력 현황. 이 경우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해야 한다. 3.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2의6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13조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6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업무 위탁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가.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나.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다.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2. 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여성장애인 복지, 산부인과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5제1항 또는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 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 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 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6. 4.>]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 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다.〈개정 2019. 6. 4.〉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과 방문 진료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의료비의 환수에 관한 사무 ②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 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 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 한 사무 ③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 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 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 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 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④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6.13.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1호, 2023.11.28.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12.1. 일부개정]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6. 4.>]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6. 4.>]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참고 2 장애등급제 폐지 개요

1. 추진배경

- 장애등급제는 '88년부터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확대에 기여했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 이를 보완하고자,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는 종합 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1단계('19.7월) 일상생활지원 → 2단계('20년) 이동지원 → 3단계('22년) 소득·고용지원

국정과제 42-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3. 주요 내용

- (장애등급의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부등급을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분류는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만 단순 구분함
- (종합판정도구의 도입)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지원함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서비스 누락 발굴 및 연계 강화,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함

4. 단계적 확대 방향

-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적용)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1단계) 장애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맞는 종합판정도구 마련·적용('19년)
 - (2단계) 장애인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분야로 종합판정도구 확대('20년)
 - (3단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소득·고용지원 분야까지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 지원체계 완성('22년)
-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서비스 발굴·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지속 확충
 -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그간의 추진 경과>

- (전문가 연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마련을 위해 '14년 이후 총 7회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장애계,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장애계 의견수렴)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14.4~8월, 16차), 장애인 단체 간담회·설명회, 장애인정책협의체 등* 장애계 의견수렴
 - * ('15년) 총 25회, ('16년) 총 15회, ('17년) 총 27회(민관협의체 포함) 등
- (시범사업) 종합조사도구 모의적용을 위해 3차례 시범사업 실시('15~'17년), 장애계·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 * (1차) '15.6.~12월, 6개 시·군·구, 약 25백명 장애인 참여
 - (2차) '16.6.~11월, 10개 시·군·구, 약 4천명 장애인 참여
 - (3차) '17.4.~10월, 18개 시·군·구, 약 4천명 장애인 참여
- (법적근거 마련)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7.12.19. 공포)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8.12.31. 공포) 및 시행규칙('19.6.4. 공포) 개정완료
- (민관협의체 운영) 종합조사도구 등 등급제 폐지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17.10.~'19.6월 11차 회의 개최)



참고 3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통계자료

1. 진료비 관련

- '21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7.7조원으로, 장애인 연간 진료비는 전체국민 평균(200만원)의 3.5배(692만원)

구 분	진료 실인원	총 진료비 (천원)	본인부담금 (천원)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
				총 진료비 (원)	본인부담금 (원)	
전체	2,552,987	17,677,480,641	2,946,297,973	6,924,234	1,154,059	16.7
지체	1,152,680	5,718,115,377	1,177,340,916	4,960,714	1,021,394	20.6
뇌병변	240,185	3,134,893,679	549,902,730	13,051,996	2,289,497	17.5
시각	242,690	1,060,342,436	212,597,597	4,369,123	876,005	20.0
청각	402,546	2,023,787,749	430,053,584	5,027,470	1,068,334	21.2
지적	22,218	155,280,837	27,078,332	6,988,966	1,218,757	17.4
자폐성	202,249	715,270,580	80,148,463	3,536,584	396,286	11.2
언어	30,969	50,594,302	11,742,285	1,633,708	379,163	23.2
정신	102,779	987,384,730	72,434,028	9,606,872	704,755	7.3
신장	100,682	3,176,821,528	298,727,798	31,553,024	2,967,043	9.4
심장	5,063	75,074,039	9,056,400	14,827,975	1,788,742	12.1
호흡기	11,219	114,825,365	18,379,600	10,234,902	1,638,257	16.0
간	14,335	265,773,759	29,925,776	18,540,199	2,087,602	11.3
안면	2,570	8,107,660	1,511,782	3,154,732	588,242	18.6
장루·요루	15,769	144,430,712	22,367,857	9,159,155	1,418,470	15.5
뇌전증	7,033	46,777,888	5,030,826	6,651,200	715,317	10.8

※ 전체인구

* 산식 : 본인부담금(천원) = 총진료비 - 급여비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원) = (본인부담금/실인원)*1000

진료비 구간별	2021		급여비 (천원)	본인부담금 (천원)	1인당 연평균	
	실인원 (명)	총 진료비 (천원)			총 진료비 (원)	본인부담금 (원)
계	47,786,043	95,437,556,651	71,556,873,840	23,880,682,811	1,997,185	499,742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20 시·군·구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실적(총계)

2. 입원일수 관련

● '21년 장애인 1인당 입원일수는 전체 인구(3.4일) 대비 6.2배(21.1일) 수준

구 분	적용인구	입원일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
전체	2,629,451	55,542,766	21.1
지체	1,186,136	13,743,898	11.6
뇌병변	244,938	16,482,356	67.3
시각	250,400	2,358,597	9.4
청각	409,466	4,760,509	11.6
지적	22,910	564,310	24.6
자폐성	221,018	3,853,516	17.4
언어	33,600	127,571	3.8
정신	103,788	10,189,985	98.2
신장	100,785	2,597,521	25.8
심장	5,092	78,577	15.4
호흡기	11,287	200,251	17.7
간	14,376	184,454	12.8
안면	2,703	13,286	4.9
장루·요루	15,888	269,812	17.0
뇌전증	7,064	118,123	16.7

● '20년 장애인 1인당 입원일수는 전체 인구(3.4일) 대비 6.3배(21.5일) 수준

*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 산식: 입원일수/적용인구

※ 전체인구

구 분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
전체(건강보험)	51,412,137	2.7
전체(의료급여)	1,516,525	28.1
전체	52,928,662	3.4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2021 의료급여통계※ 전체인구



3. 만성질환 관련

● '21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율은 전체인구(42.0%) 대비 2.2배(87.7%) 수준

구 분	전체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 질환	대뇌 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 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 신부전증	관절염
2021년	87.7	51.8	32.7	41.3	0.4	19.3	17.2	39.3	9.7	12.9	24.6	6.1	40.4
지체	87.3	54.7	33.7	34.0	0.4	19.3	12.9	37.6	9.5	13.1	27.1	2.5	48.8
뇌병변	95.4	62.2	34.3	55.4	0.4	20.9	60.2	62.4	8.4	9.5	17.6	3.5	29.4
시각	83.4	51.3	33.7	32.4	0.4	18.1	13.6	32.5	9.9	12.7	24.7	3.3	38.9
청각	89.8	60.6	34.3	42.5	0.6	24.2	17.5	39.6	11.1	13.1	23.7	3.5	48.5
지적	78.8	38.8	22.1	41.1	0.3	16.3	30.5	33.6	14.1	12.2	16.5	2.3	24.6
자폐성	71.4	15.1	13.9	49.4	0.2	5.0	4.4	23.4	2.7	11.0	16.7	0.7	15.8
언어	70.9	1.8	3.5	66.7	0.0	1.3	0.4	15.2	0.5	4.5	6.6	0.1	2.7
정신	99.4	26.1	28.3	98.3	0.4	8.6	5.0	62.0	4.4	15.2	25.6	1.1	21.4
신장	99.1	81.3	62.1	29.1	0.9	42.6	14.8	39.3	13.9	22.4	31.3	89.8	29.9
심장	97.4	64.2	38.8	28.8	0.4	85.7	14.1	32.1	11.7	17.8	24.3	9.0	30.7
호흡기	89.3	52.2	31.5	35.5	2.7	32.5	11.0	34.7	15.9	12.1	23.1	3.6	33.8
간	96.4	44.1	45.0	18.9	0.6	14.2	7.6	25.5	47.8	10.5	82.7	8.2	26.5
안면	71.4	33.0	21.8	24.9	0.5	9.8	7.4	25.1	9.0	12.3	23.2	0.9	34.3
장루요루	94.9	52.9	33.8	32.9	0.6	20.9	11.6	35.0	66.8	12.6	24.8	8.1	37.2
뇌전증	99.0	21.7	17.3	97.2	0.3	8.8	13.0	45.6	6.8	14.9	22.6	1.1	32.8

※ 전체인구 (12개 만성질환 비교)

구 분	전체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 신부전증	관절염
2021	42.0	14.8	7.5	7.8	0.1	3.7	2.3	7.2	3.8	3.3	4.2	0.6	10.5

※ 출처 : 건강보험통계(2021),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4. 건강검진 수검률

- '21년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시, 전체인구(73.3%) 대비 22.1%p 낮음(51.2%)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구분	장애인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1,193,333	752,157	63.0
장애중증도			
중증	397,611	203,582	51.2
경증	795,722	548,575	68.9
장애유형			
지체	587,134	414,746	70.6
뇌병변	94,819	40,686	42.9
시각	118,268	80,534	68.1
청각	180,851	112,191	62.0
지적	8,167	4,588	56.2
자폐성	84,219	43,794	52.0
언어	6,729	3,140	46.7
정신	44,410	18,979	42.7
신장	43,822	19,521	44.5
심장	2,117	1,209	57.1
호흡기	4,674	2,390	51.1
간	6,842	4,210	61.5
안면	1,422	1,045	73.5
장루·요루	6,776	3,495	51.6
뇌전증	3,083	1,629	52.8

※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구분	장애인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1,055,952	698,808	66.2
장애중증도			
중증	291,527	163,624	56.1
경증	764,425	535,184	70.0
장애유형			
지체	554,721	401,289	72.3
뇌병변	80,245	36,218	45.1
시각	111,168	77,540	69.8
청각	175,015	109,599	62.6
지적	6,973	4,160	59.7
자폐성	47,093	27,749	58.9
언어	5,869	2,859	48.7
정신	16,072	8,623	53.7
신장	36,927	17,850	48.3
심장	1,934	1,156	59.8
호흡기	4,035	2,206	54.7
간	6,398	4,058	63.4
안면	1,277	988	77.4
장루·요루	6,443	3,393	52.7
뇌전증	1,782	1,120	62.9

● 전체인구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 73.3%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 74.2%

※ 출처 : '2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 통계



5. 가임기 여성장애인 현황

- 2022년 기준 가임기 여성장애인은 15만 3천여명으로 매년 4천여명씩 감소하고 있음.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비장애여성
	심한	심하지 않은	계	심한	심하지 않은	계	심한	심하지 않은	계	
전국	109,568	52,241	161,809	107,444	49,908	157,352	105,647	47,808	153,455	11,485,503
서울	16,919	8,643	25,562	16,496	8,259	24,755	16,052	7,852	23,904	2,387,864
부산	6,965	3,043	10,008	6,806	2,922	9,728	6,653	2,765	9,418	696,281
대구	5,472	2,501	7,973	5,320	2,324	7,644	5,182	2,193	7,375	509,953
인천	6,042	3,183	9,225	5,968	3,048	9,016	5,867	2,952	8,819	677,915
광주	3,860	1,721	5,581	3,820	1,622	5,442	3,794	1,524	5,318	338,655
대전	3,605	1,640	5,245	3,525	1,551	5,076	3,530	1,506	5,036	335,798
울산	2,274	1,153	3,427	2,214	1,085	3,299	2,183	1,028	3,211	239,288
세종	495	384	879	510	378	888	523	378	901	96,114
경기	23,966	13,546	37,512	23,760	13,117	36,877	23,667	12,770	36,437	3,211,482
강원	3,906	1,583	5,489	3,780	1,523	5,303	3,683	1,475	5,158	287,019
충북	4,452	1,726	6,178	4,385	1,671	6,056	4,340	1,563	5,903	322,328
충남	5,558	2,238	7,796	5,472	2,162	7,634	5,355	2,073	7,428	429,980
전북	5,251	2,116	7,367	5,075	2,025	7,100	4,916	1,930	6,846	345,364
전남	4,963	1,919	6,882	4,768	1,806	6,574	4,620	1,705	6,325	321,820
경북	6,742	2,636	9,377	6,601	2,455	9,056	6,263	2,346	8,809	475,465
경남	7,388	3,334	10,722	7,267	3,155	10,422	7,154	3,011	10,165	661,864
제주	1,711	875	2,586	1,677	805	2,482	1,665	737	2,402	148,313

* 가임기는 15~49세 여성임

6.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

- 2022년 여성장애인은 1,068이 출산하였으며, 매년 100여명씩 감소하다 2022년에는 41명이 감소함.
- 가임기 여성장애인 대비 장애 여성의 출산 비율은 0.7%로 비장애 여성(2.1%)에 비해 낮음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장애여성
	심한	심하지 않은	계	심한	심하지 않은	계	심한	심하지 않은	계	
전국	554	652	1,206	478	631	1,109	488	580	1,068	243,769
서울	63	103	166	53	99	152	70	84	154	43,860
부산	28	35	63	24	37	61	26	30	56	14,033
대구	14	28	42	12	24	36	19	21	40	10,255
인천	41	30	71	26	28	54	28	42	70	14,089
광주	20	22	42	19	19	38	27	24	51	7,141
대전	24	19	43	18	24	42	15	19	34	7,321
울산	5	13	18	6	10	16	6	8	14	5,179
세종	1	5	6	2	6	8	1	8	9	2,963
경기	129	172	301	93	171	264	99	151	250	72,527
강원	24	18	42	17	27	44	14	21	35	6,762
충북	33	24	57	25	23	48	18	13	31	7,367
충남	29	28	57	42	28	70	29	21	50	10,050
전북	24	24	48	36	24	60	32	34	66	6,871
전남	38	32	70	29	28	57	38	23	61	7,611
경북	35	34	69	38	25	63	30	33	63	10,655
경남	36	55	91	31	38	69	33	33	66	13,618
제주	10	10	20	7	20	27	3	15	18	3,467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기준임



7. 조사망률 관련

- '21년 장애인 조사망률은 3,181.1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618.9명 대비 약 5.1배 더 높음

(단위 : 사망자수는 명, 조사망률은 십만명당)

	전체			남자			여자		
	연앙인구	사망자수	조사망률	연앙인구	사망자수	조사망률	연앙인구	사망자수	조사망률
전 체	2,636,127	83,858	3,181.1	1,523,077	47,695	3,131.5	1,113,050	36,163	3,249.0
지 체	1,198,783	27,857	2,323.8	695,013	14,936	2,149.0	503,770	12,921	2,564.9
뇌병변	248,456	16,759	6,745.3	142,640	9,380	6,576.0	105,816	7,379	6,973.4
시 각	251,784	6,979	2,771.8	149,423	4,024	2,693.0	102,361	2,955	2,886.9
청 각	403,494	17,608	4,363.9	212,377	9,920	4,670.9	191,118	7,688	4,022.7
지 적	22,692	711	3,133.3	16,133	566	3,508.3	6,559	145	2,210.9
자폐성	219,252	1,923	877.1	132,022	1,236	936.2	87,230	687	787.6
언 어	32,221	24	74.5	27,079	20	73.9	5,142	4	77.8
정 신	103,785	1,933	1,862.5	52,798	1,122	2,125.1	50,987	811	1,590.6
신 장	99,438	7,159	7,199.5	58,811	4,420	7,515.7	40,628	2,739	6,741.7
심 장	5,178	264	5,098.5	3,343	181	5,414.3	1,835	83	4,523.2
호흡기	11,471	1,067	9,302.1	8,457	859	10,157.3	3,014	208	6,902.3
간	14,106	326	2,311.1	9,909	249	2,513.0	4,198	77	1,834.4
안 면	2,693	32	1,188.3	1,566	23	1,469.2	1,128	9	798.2
장루요루	15,695	1,121	7,142.4	9,649	704	7,296.1	6,046	417	6,897.1
뇌전증	7,081	95	1,341.6	3,859	55	1,425.2	3,222	40	1,241.5

※ 전체인구

(단위 : 사망자수는 명, 조사망률은 십만명당)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사망자수	조사망률	사망자수	조사망률	사망자수	조사망률
계	317,680	618.9	171,967	672.0	145,713	566.0

※ 출처 : 통계청, 2021 사망원인통계

참고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 심의기준 (예시)

평가 영역	평가항목	배점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필요성(5점)	기관의 비전 및 목표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의 연관성 및 필요성	5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신청 의료기관의 여건(15점)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건강관리 의사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 재활의료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등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3. 장애인 진료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 (15점)	장애인 진료 및 재활 실적	5
	장애인 등에 대한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실적	5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 현황	5
4. 운영역량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45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목표 및 조직의 적절성	5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의 적절성	5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계획의 적절성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협력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장애인건강관리 의사, 재활의료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등 건강보건관리 사업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와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 의지(15점)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및 자체 예산투자규모	5
	기관 내 의견수렴 등 준비과정의 충실성	5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책임자의 의지와 비전	5
6. 구두 발표(5점)	필요성, 비전, 역량,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 충실성	5

※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위탁평가위원회는 재위탁 심의 과정에 해당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등 결과(보조금 부당·불법사용 여부 반드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위탁약정서 (예시)

※ 동 위탁약정서(안)은 예시이므로, 설치주체의 장은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약정서를 작성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명)(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수탁기관 법인명)(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사업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 이 계약에 의한 위탁 사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 구축으로 보건의료정보플랫폼 운영
 - 의료기관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CBR사업 지원
 -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및 응급의료 연계서비스 지원(권고)
 - 장애인 자조모임 운영 및 자원봉사자 양성
2.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임신 여성장애인등록 관리(DB 구축)
 - 여성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 산모교실(당사자 교육)
 - 참여형 동아리 사업(자조모임 지원)

3.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임신·출산 관련 의료인, 기타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의료기관 종사자(비의료인), 관련 학과 학생에 대한 교육 등

4.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재활의료서비스(직접)
- 장애 소아청소년 재활의료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 건강검진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운영지원) ① “수탁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립 목적에 따른 제 2조의 위탁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지침에 의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1.1. ~ 20○○.1.1.로 한다.

-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 지속여부를 결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 ③ 위탁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조(종사자 임면 등) 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 및 기타업무종사자는 지침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기타 업무종사자는 “수탁기관”이 임용하고 임면 후, “위탁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을 포함한 각 종사자는 전임직으로 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할하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직무를 대행자를 지정한다.
- ⑤ “위탁기관”이 지역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형태가 변경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위탁기관”과 변경된 “수탁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을 제외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도서·비품·무형자산(지적재산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의 저작권, 로고 등)등의 관리에 책임을 다하고, 부주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화재, 도난 시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계약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중요 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위탁기관”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유·무형 자산의 소유권은 “위탁기관”에게 속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탁기관”의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7조(사업계획의 작성 및 평가) ① “수탁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에 “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 ② “수탁기관”은 연간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 “위탁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관”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사업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평가의 결과는 향후

위탁기간 갱신을 위한 위탁평가위원회의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에 포함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및 집행) ① “위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탁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을 “위탁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안내」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보조금 입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을 회계 책임자로 임명하여, “수탁기관”의 회계와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 및 정산)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야 기록하고,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사업집행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자 포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기관”에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의 만료, 위탁의 해지로 인한 경우, “수탁기관”은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을 정산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자 포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기관”에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위탁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련 각종 자료의 제출을 “수탁기관”에게 요구하거나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시달한 지침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사업안내 등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를 “위탁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기관”이 제3자에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관련된 손해 배상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은 이를 “위탁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장애인건강권법 제22에 의한 의무사항 및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장애인건강권법 제22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기관”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위탁업무 수행을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탁기관”이 공익상 등의 사유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협약에 의한 경우
- ②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약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약정 해지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탁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수탁재산 등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기관”에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운영비를 정산하여 집행 잔액(이자포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이 있는 수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석)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약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액정체결의 증명 및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000년 00월 00일

운영위탁자 “위탁기관” 0000 (지방자치단체의 명)

운영수탁자 “수탁기관” 0000 (수탁기관 법인명)



참고 6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운영회칙 (예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건강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업무 총괄·조정)
2. 보건소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3. 지정받은 의료기관 내 의료서비스 제공 조직과의 연계 업무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예·결산 및 실적보고·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장비 개선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직운영 및 세부규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된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과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지역 내 유관기관과 관할 시·도지사의 협조를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장(위원장)이 위촉직 위원을 최종 임명한다.

1.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또는 여성장애인 대표로서 장애인 당사자
2.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분야 대표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대표
4.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표
5. 장애인 재활의료기관 대표

6.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성 있는 공익목적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교수, 연구기관종사자 등)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궐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종사자를 간사(1인)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기록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촉의 해지)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이 해지된다.

1. 위촉직 위원이 정기회의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② 위원의 위촉 해지 사유 발생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은 설치주체(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의 자격을 해지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회의를 통보 후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
 2. 수시회의 : 위원장 또는 설치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개최 시에는 간사는 목적,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주요 논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센터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7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매뉴얼

※ 해당 내용은 '2022년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매뉴얼'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매뉴얼은 2022년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멘토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자료, 그간 해당 사업의 선례와 운영 방법 등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적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개발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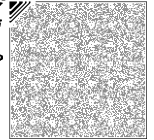
- 신규 지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신규 업무 담당자의 조기 업무 파악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의 표준화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이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및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 지역의 임신 여성장애인을 발굴해서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내 보건-복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3.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등에서 임신 여성장애인 발굴 또는 의뢰되면 임신 여성장애인 DB 구축을 위해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구분	추진 사항	내용
1. 대상자 발굴	1-1. 여성장애인 가임기 및 출산 현황 파악하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공유하는 여성장애인 가임기 및 출산 현황 통계자료 활용하기 - 지자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 파악하기	통계 또는 현황과 같은 자료는 사업 규모를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기초가 됨.
	1-2. 유관기관 대상 사업 홍보 및 DB 구축을 위한 협조 요청 - 사업 안내 자료 제작하기 -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유관기관 목록 정리하기 (자원 파악하기) -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시행하기 - 주요 기관은 유선으로 사업내용과 요청사항 설명하기 - 방문(미팅) 준비하기 -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하기	임신·출산 여성장애인은 유관기관을 통해 발굴 또는 의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관기관에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해서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1-3. 많이 두드리기	많이 알아보고, 연락하고, 직접 담당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
2. 대상자 등록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받기	임신·출산 여성장애인의 사회가족정보, 산과력, 임신·분만·출산정보, 이용 중인 공적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등록
	〈서식2〉 일반정보 등록, 〈서식2-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등록/관리 서식 상담하면서 등록(작성)	
3. 대상자 관리	3-1.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 단순서비스 대상자, 타 기관 연계 대상자로 구분됨	임신·출산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보건의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돌봄자의 유무보다는 병원 방문 등 의료적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
	3-2. 대상자(서비스) 의뢰·접수 - 대상자(서비스) 의뢰/접수 → 회송	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서 없이 의뢰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의뢰서를 직접 작성하여 내부결재 또는 별도의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3-3. 사례관리	2021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가이드’를 숙지하여 추진

4.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

- 임신준비 및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문제에 따라 산전·산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도록 합니다.

구분	추진 사항	내용
1. 서비스 계획	〈서식7〉 서비스 계획지 작성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되, 대상자에게 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하도록 함.
2. 서비스 제공 (연계)	〈서식8〉 세부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록지에 작성
	2-1. 산전·산후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산전·산후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은 산부인과 산전·후 관리를 위한 진료뿐만 아니라 출산 후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우울증 등 정신건강관리를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 등이 포함됨, 또한 의료서비스 동행, 건강관리 상담,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의 활동도 포함됨.
	2-2. 우울증 간이 검사	임산부는 임신 또는 산후에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시 우울증 소견이 의심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우울증 간이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 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5.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

- 지역 내 여성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과 생애 주기별(청소년기, 갱년기 등)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을 시행합니다.

구분	추진 사항	내용
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임신주기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5명 이내 소그룹 또는 1:1 맞춤형으로 교육 실시	중앙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임신·출산 단계별(임신준비, 임신중, 출산후) 커리큘럼과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 실시
2.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10명 이상 단체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관 기관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중앙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개발한 청소년기 성교육 및 갱년기 건강관리 자료와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 실시



6.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과의 연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는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호 연계하여 포괄적인 여성장애인 서비스(전문의료서비스, 지속적인 건강관리, 자원 연계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8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privacy.go.kr> 〉

□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보호 범위의 확대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주민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9 00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

※ 본 작성 예시는 www.privacy.go.kr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 중 [공공기관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이용자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신청(온·오프라인 일체)

장애인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의사 확인, 본인 식별·인증,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서비스 이용이력 관리, 응급생황의 대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욕구 및 만족도조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운영위원회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기타 대상자(강사 등) 관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 채용, 보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직원관리

가. 신규직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고용계약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임금지급, 복지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 홍보, 업무연락 등을 위해 직원의 이름,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등록된 직원의 ID, 성명, 소속기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퇴사 후 삭제처리 됩니다.

6. 민원 및 고충처리

이용자의 민원 및 고충처리를 위해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7. 장애인건강보건사업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관리(홈페이지 관리 포함 : 중장기 사항)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기간
1	이용자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2호,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호,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항 2호/이용자 등록 및 관리, 서비스신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	- 필수항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비스 종료 후 5년까지
2	장애인건강보건 위원회 운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위원회 활동경력 증명서 발급, 수당 지급	이력서, 통장사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요청이 있을 시까지
3	강사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강사 경력 증명서 발급	이력서, 통장사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4	직원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43조/직원관리 및 보험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 신규직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입사지원서, 자격증 사본 등 - 고용계약에 포함된 개인정보 - 직원의 출입정보, 업무망의 접속 기록, 홍보, 업무연락을 위해 직원 이름,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 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5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지원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관리(홈페이지 관리: 중장기 과제)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정부법」 제36조,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기타 ○○○○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5년까지
2. 운영위원회 운영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요청이 있을 시까지
3. 기타 대상자(강사 등) 관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요청이 있을 시까지
4. 직원관리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요청이 있을 시까지
5. 민원 및 고충처리 : 3년
6.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관리(홈페이지 관리 포함 : 중장기 과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사항의 각 개인정보 보유 기간까지
 - 홈페이지 관리 : 회원탈퇴 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자체(○○시, ○○○도)
 -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용자의 장애인 건강권법에 의한 지원·제공내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위한 이용자 정보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본정보 및 필요시 민감정보 포함, 서비스 내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부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종결까지
 - ※ 주소지 변경 시, 개인정보를 변경된 해당 관할 지역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이관 관리함

- 정보폐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철회, 모니터링 거부 및 취소, 장애인의 사망, 센터 폐업의 경우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센터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센터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문항은 센터의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음)

1. 이용자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신청

가. 필수항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사항

(1) 장애인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2) 신청인 인적사항 : 이름,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3) 장애인 종합장애정보: 종합장애등급, 종합장애유형, 장애인 장애진단 목록, 장애 구분(주장애, 부장애), 장애명(주장애, 부장애), 장애등급, 진단일, 재진달일자, 재진단기한, 장애진단병원



- (4)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상태: 복지서비스 이용상태, 바우처서비스 이용상태, 장애인등록진단비, 검사비지원, 장애인의료지원, 장애연금 등
2.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운영 : 이력서, 통장사본
 3. 강사관리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4. 직원관리
 - 가. 신규직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 입사지원서, 자격증 사본
 - 나. 고용계약에 포함된 개인정보
 - 다. 홍보, 업무연락을 위해 직원 이름,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정보시스템 내 등록된 직원의 ID, 성명, 소속기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퇴사 후 삭제처리 됩니다.
 5. 민원 및 고충처리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e-mail) 주소
 6.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

직책 : ○○○ 센터장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

담당자 : ○○○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대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과 ○○○팀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 ×.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1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도·점검표

20○○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도·점검표
☐ 현장점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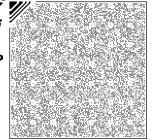
점검일시	*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재			장소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기관명				성명	(인)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점검사항

구 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확인 서류
인사 관리	1.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교육신청서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용 교재 등
	2. 직원은 정해진 자격기준과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 업무협약서 업무분장표 등
회계 관리	1.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재정(신원)보험증서 보조금사용대장 예산계획서 재무회계관련 서류
	2. 지역센터 직원은 복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 휴가신청서 출퇴근기록 등
이용자 정보관리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 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서비스의뢰(연계)서 동의서 관리파일 이용자 관리대장 등
	2.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 권을 부여하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리플렛, 사업안내문 의사소통도구 알기쉬운 자료집 등

구 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확인 서류
사업 운영	1. 지침 상 지역센터의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위원회 계획서 위원회 결과보고서 위원 명단 위촉장 사본
	2. 지역건강네트워크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사업계획서 회의록
	3. 지역 자원 의뢰 및 회송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사업계획서 의뢰서 관리장부 회송서 관리장부
	4.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절차가 적절한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사업계획서 서비스 대상자 명단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5. 대상자 편의지원 서비스가 적절한가?	• 준수() • 미준수() - 미준수사항() • 해당없음()	민원내용 개선내용
지역센터의 건의사항 및 의견			
점검자 종합 의견			

※ 점검사항은 보건복지부 총괄 지도 점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설치주체의 장은 자체 점검표를 마련하여 지도점검(수시) 시행 가능



참고 11 관련 기관 종사자 의무사항

구 분		내 용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가정폭력	의무사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전화 : 국번없이 112
	근거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아동학대	의무사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관련사이트: www.korea1391.go.kr
	근거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학대	의무사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 전화: 1577-1389 및 국번없이 112 / 방문: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 관련사이트: www.noinboho.or.kr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발달장애인 유기 등	의무사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 전화: 1522-2882 및 국번없이 112 - 관련사이트: www.broso.or.kr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의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의무사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전화: 국번없이 11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참고 12 중증 대상자의 건강보건관리 필요도 평가도구 (예시)

1. 장애인/보호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남성[], 여성[]	생년월일	장애유형/장애정도
주소			연락처(대상자)
보호자 이름		장애인과의 관계	연락처(보호자)

2. 건강보건관리 필요도 평가(의학적 평가)

1)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

2) 현재 치료 내용

3) 신체상태

가. 근력		좌측	우측
	상지		
	하지		
나. 관절운동범위제한(있다면 관절명 기술)		좌측	우측
	상지		
	하지		
다. 운동상태			
보행	☐ 가능	☐ 부분적 가능	☐ 불가능
실조 또는 운동 이상	☐ 없음	☐ 있음	☐ 평가불가
서동증	☐ 없음	☐ 있음	☐ 평가불가

4) 정신상태

가. 인지기능	MMSE		
나. 문제행동 유무	☐ 없음	☐ 있음	예)
다. 일상생활 자립도	MBI		



5) 의료적 처치 필요항목(유무로 평가)	
☐ 기관절개	☐ 도뇨관
☐ 욕창	☐ 장루
☐ 경관영양	☐ 당뇨발 및 그에 준하는 통증
☐ 암성 통증 및 그에 준하는 통증	☐ 기타

3. 건강보건관리 필요도 평가(외부 환경의 평가)

1) 가족의 수준(있는 항목에 check)	
☐ 가족지지 미흡 ☐ 의료비 부담 ☐ 가족 중 우울	
2) 지역사회 수준	
지역사회 내 위험요소 ☐ 없음 ☐ 있음()	
3) 일반 위험 요인	
사회경제적 위험요소 ☐ 없음 ☐ 있음()	
일상생활 위험요소 ☐ 없음 ☐ 있음()	
4) 주거환경 평가	
출입문 접근 ☐ 자력 ☐ 도움	☐ 단차() ☐ 계단/경사로 ☐ 안전바/핸드레일 ☐ 공간(적절/부적절)
출입문 개폐 ☐ 자력 ☐ 도움	☐ 손잡이(레버형/돌림형/보조장치/기타:) (높이:적절/부적절)
현관문 접근 ☐ 자력 ☐ 도움	☐ 단차() ☐ 계단/경사로 ☐ 안전바/핸드레일 ☐ 공간(적절/부적절)
현관문 개폐 ☐ 자력 ☐ 도움	☐ 손잡이(레버형/돌림형/보조장치/기타:) (높이:적절/부적절)
주거공간 ☐ 거실 ☐ 침실 ☐ 주방	단차
	문
	공간/바닥
	이동

4. 단기/장기 목표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5. 서비스 연계 계획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담당자



참고 13 유용한 평가도구 (예시)

※ 재활평가 평가도구 활용 홈페이지(<https://www.sralab.org/rehabilitation-measures>) 참조

분류	도구형식	도구형식	항목수	영역	채점
균형감	10m walk test	10m walk test	12m 보행시 2m 가속구간과 감속구간을 뺀 10m 구간을 보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		
		뇌졸중 환자의 보행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급내상관계수(ICC)=0.93(Salbach 등, 2001)			
	Timed Up&Go Test	Timed Up&Go Test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 3m 거리를 걸어서 다시 되돌아와 의자에 앉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측정		
		기능적 이동성, 동적균형능력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급내상관계수(ICC)=0.95(Ng&Hui-Chan,2005)			
	한국어판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척도	균형자신감 척도	16	- 낮은 위험성을 가진 항목	
ICF 개념에 맞는 낙상에 대한 예측 도구 · 본 척도의 출처: 장숙량외. 한국어판 낙상효능 척도와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노인병: 제 7권 제 4호, 2003.					
한국판 버그 균형척도	버그 균형 척도	14	- 앉기(1) - 서기(8) - 자세변화(4)		- 5점 Likert 척도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도구 56점 만점에서 44점 이하이면 낙상 위험이 크다고 평가 · 원 척도의 출처: Berg, Katherine; Wood-Dauphinée, Sharon; Williams, JI; Gayton, David (1989). Physiotherapy Canada. 41 (6): 304-311.				
삶의 질	사회참여 척도	참여척도	18	- 지식의 학습과 적용 - 일반적인 임무와 요구 - 의사소통 - 이동 - 자기관리 - 가정생활 -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 - 주요생활영역 - 공동체 - 사회 및 시민생활	- 4점 Likert 척도

분류	도구형식	도구형식	항목수	영역	채점
		본 척도는 Brakel 등(2006)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 박재현(2012)이 연구의 활용을 위하여 단순한 4점 Likert 척도로 수정 - 본 척도의 출처: 박재현(2012). 척수장애인의 심리적응 척도 개발 및 적용.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심리학박사학위 논문. 대구 - 원 척도의 출처: Brakel, W. H., Anderson, A. M., Mutakarr, K., Bakirtziev, Z., Nicholls, P. G., Raju, M. S., & Pattanayakrobert, K. (2006). The participation scale : Measuring a key concept in public health. <i>Disability and Rehabilitation</i>, 28, 193-203.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10	- 긍정적 자아존중감 (1, 2, 4, 6, 7) - 부정적 자아존중감 (3, 5, 8, 9, 10)	4점 Likert 척도 -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 -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 -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
		본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 본 척도의 출처: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 논문. 서울.			
대처 및 통제감	사회적지지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25	- 정서적지지 - 정보적지지 - 물질적지지 - 평가적 지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 -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
		본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 보완 - 본 척도의 출처: 박재현(2012). 척수장애인의 심리적응 척도 개발 및 적용.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심리학박사학위 논문. 대구. - 원 척도의 출처: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목표조정 척도	목표조정 척도	10	- 목표탈개입(4) · 긍정응답(2) · 부정응답(2) · 목표재개입(6) ·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분류	도구형식	도구형식	항목수	영역	채점
				· 새로운 목표에 헌신하는 것 · 새로운 목표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사직하는 것	
		본 척도는 Wrosch, Scheier, Miller, Schulz & Carver(2003)가 개발한 것을 정정숙(2013)이 번안 · 본 척도의 출처: 정정숙(2013). 척수장애인의 우울과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단기심리상담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기타	희망척도	희망척도	12	- 주도사고(4) - 경로사고(4) - 허위문항(4)	- 4점 Likert 척도 - 허위문항(3, 5, 7, 11)을 제외하고 계산되며 주도 사고, 경로사고가 모두 최저 4점에서 16점 -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음을 의미
		본 척도는 Snyder 등(1991)이 개발하고, 최윤희, 이희경과 이동귀(2008)가 번안 · 본 척도의 출처: 황혜민(2013).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학위 논문. 서울.			

참고 14 ○○시·군·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규정 (예시)

○○시·군·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협의체는 ○○시·군·구 내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한 재활을 통해 독립적 일상생활의 능력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체에 관한 운영방법은 각 참여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추진사항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모임을 통한 참여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 할 수 있다.

1. 각 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의 개선요구 및 협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활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정기회의 개최 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은 각 참여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구성한다.
4. 위원은 협의체 소속 기관 당 2명 이하로 한다.
5. 협의체 구성은 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2.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회 변동은 대상 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한다.

제6조.회의

- 1.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 ①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3.협의체의 회의는 구성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4.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 1.위원장은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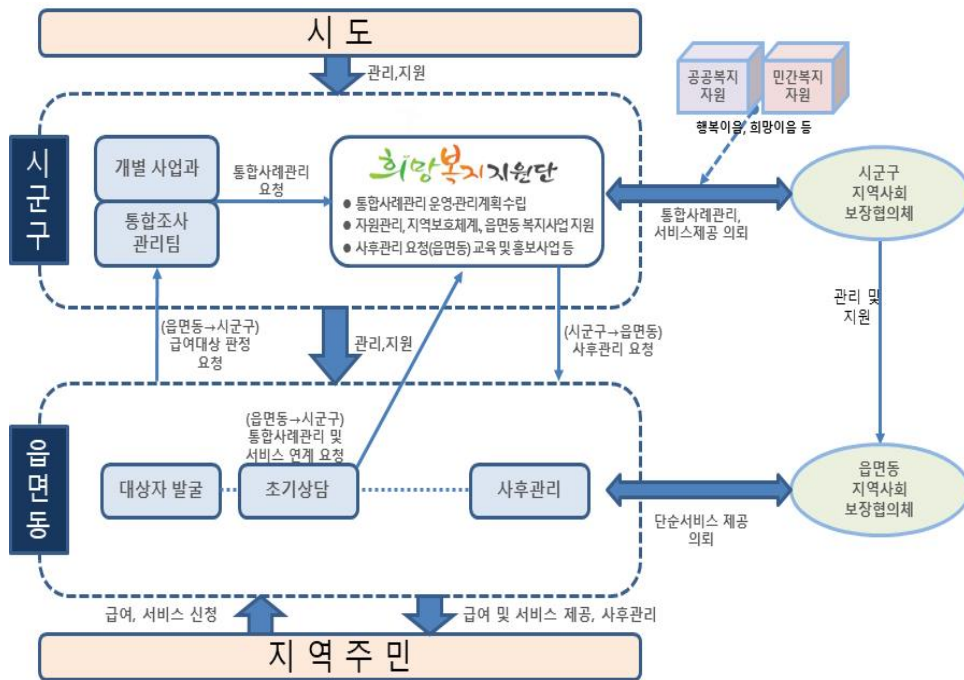
참고 15 희망복지지원단 안내자료

★ 2024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 목표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 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



-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또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 ②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 위기도 조사 등 진행하여 단순 서비스 연계 또는 사례관리 진행
- ③ 사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목표(장·단기)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등 수립
- ④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따른 서비스 의뢰·연계·제공,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2024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타. 보건소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 방문건강관리사 또는 간호직 공무원, 필요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정신건강사례관리) 및 중독통합지원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 자살예방센터 근무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의 참여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보건 연계 부분을 지원



2024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 타 사례관리 사업(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의뢰
 - 대상자 기준 : '등록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예비장애인)'
 - 의뢰 기준 : 대상자의 의료·건강보건 서비스가 필요 할 경우
 - 의뢰 절차 : 선정단계(읍·면·동 초기상담 이후 등)에서 대상자의 의뢰사유 발생 시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필요시 의뢰를 받아 유기적 협력체계 수행

참고 16 방문건강관리 지침 관련자료



장애인 재활 관리

● 목적

- 장애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등 지속적 관리로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 대상 : 기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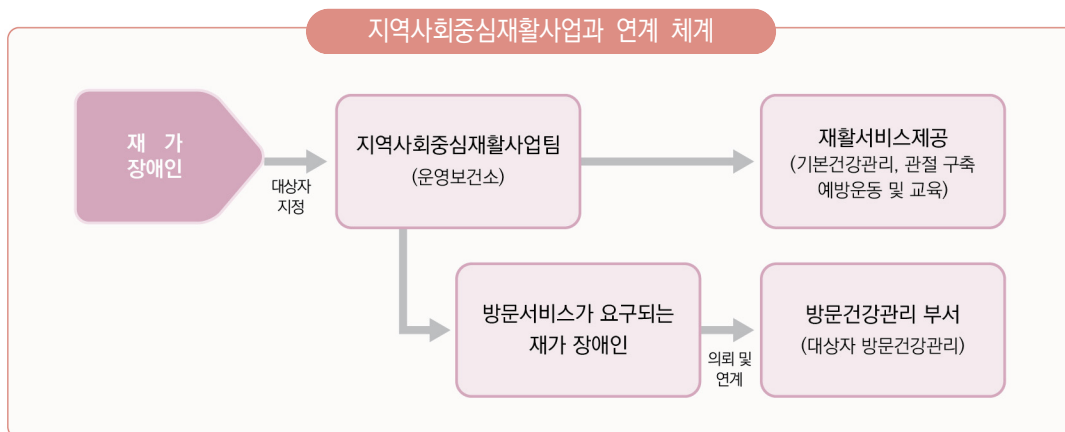
- 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 예방신체활동 교육
- 기본 건강관리 : 위생, 영양, 피부관리(체위변경), 구강위생관리 등
- 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교육
- 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교육
-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보건소 내·외 연계

- 목적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소 내 및 지역사회 내(보건소) 자원연계를 통하여 효과적, 효율적(중복방지) 건강관리 실현
-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연계 등
- 보건소 외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기관 의뢰 및 연계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연계 체계



※ 출처 :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방문건강관리

참고 17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1.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내용

- 보조기기 서비스 : 보조기기 9개 영역에 따른 개조·제작, 구매전 체험(단기대여), 유지관리(점검, 수리, 세척) 서비스를 제공
- 보조기기 교육 : 안전교육, 보조기기 사용/훈련 교육
- 보조기기 체험 : 지역보조기기센터 체험전시장 이용시 보조기기 체험, 보조기기 정보 습득 등 가능
- 보조기기 정보제공(검색) :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 또는 보조기기 종합 정보 알리미(app)에서 ‘보조기기검색’ 활용, 보조기기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기기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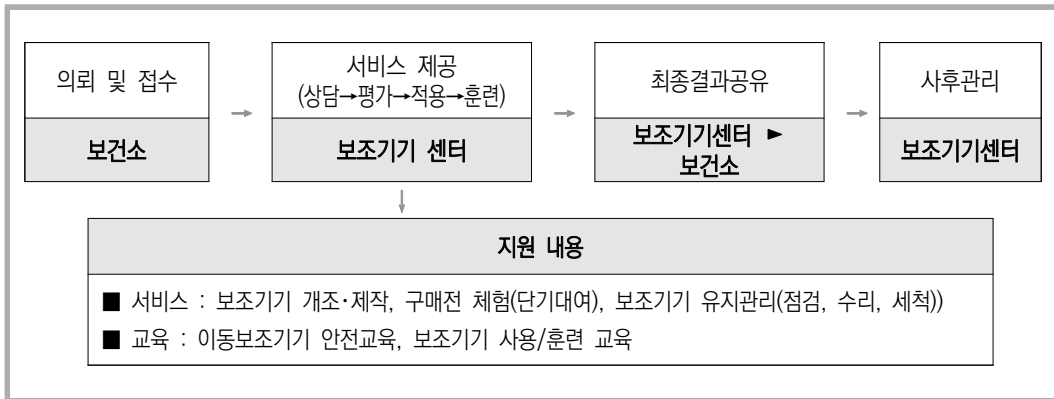


● 보조기기 서비스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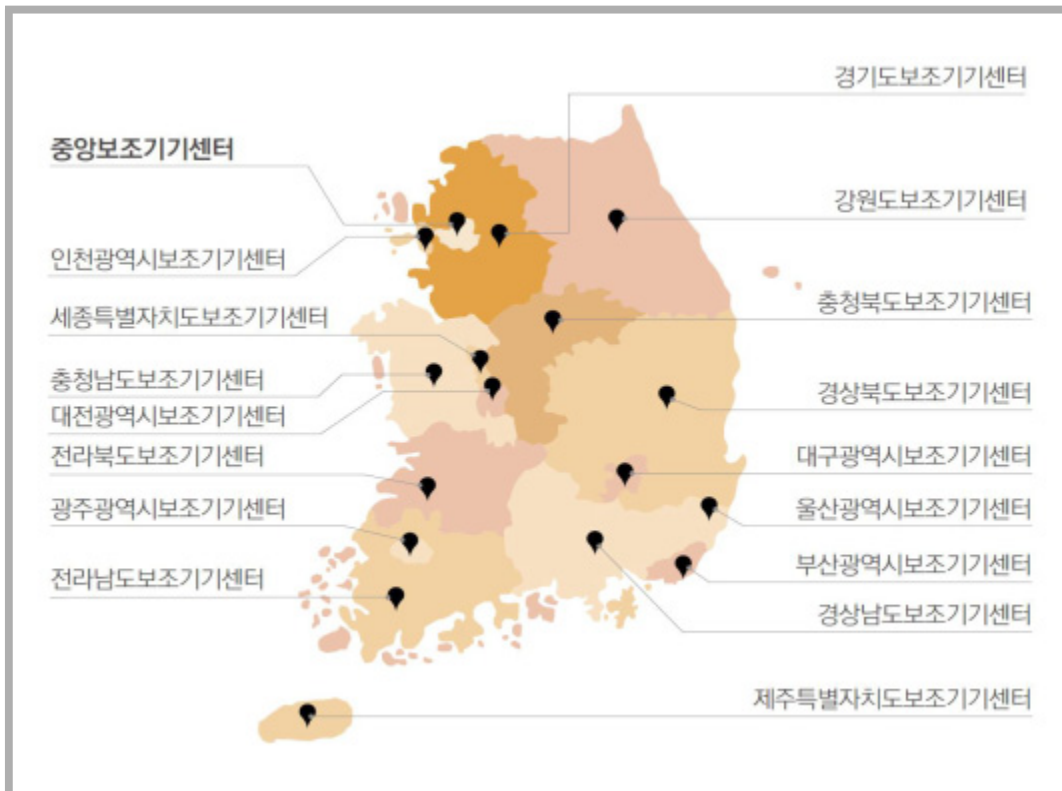
2. 수행절차



※ 단, 해당 서비스는 보조기기서비스센터 설치지역 범위내, 지원가능

※ 최종결과 공유는 의뢰시 지역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3. 보조기기센터 설치현황(2023년 1월 기준)



※ 콜센터 대표번호 1670-5529 이용시 지역 보조기기센터로 직접 연결

4. 공적급여 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5개 부처 9개 사업)

소관 부처	사업명	사용 명칭	신청 대상자	서비스방법	지급 품목	
보건 복지부	장애인 자립 기반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별 해당)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지원	-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목욕의자, 이동변기, 기립훈련기, 독서확대기, 시각신호표시기 등
	기초 의료 보장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대여	의지보조기 및 수·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등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 대여 가능)
	보험 급여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건강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요양 보험 제도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복지용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지원 및 대여	- 구입전용품목 : 이동변기, 목욕 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지팡이, 미끄럼 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등 - 구입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 욕조, 목욕리프트 등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디지털 포용 정책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	시각, 청각, 언어, 지체·뇌병변 정보통신보조기기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정책과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	재활 보조기기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지원	건강보험급여품목과 산재보험별급여품목
	장애인 고용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보조 공학기기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직업훈련생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및 대여	1. 임대(상용기기) -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 사업장당 총 2억원 이내 2. 지원(상용, 맞춤형) - 300만원(중증 500만원) 사업장당 총 5천만원 이내
국가 보훈부	보훈 의료과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보철구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지원	의지, 보조기, 휠체어 등 - 보조기기 상한액까지 무상지원
교육부	특수 교육 정책과	장애학생 지원사업	보조 공학기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내 대여	-



참고 1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 관련 활용가능한 매체

〈자료검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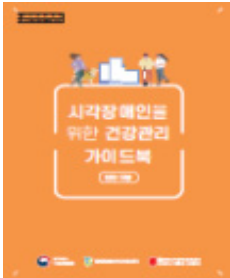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http://www.nrc.go.kr>)에서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사업지원 자료실, 교육지원자료실(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 검색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문의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집(2023년 사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안내, 수행기관 소개, 활동사례 소개	책자	2023	문의
	2023 장애인의 건강관리 포스터 안내자료집 장애인의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 비만, 구강관리 등	책자	2023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가이드(개정판) 사례관리의 이해,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개요,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과정 등	책자	2023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집(2022년 사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안내, 수행기관 소개, 활동사례 소개	책자	2023	문의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비대면서비스 가이드 비대면서비스 목적, 절차, 서비스 제공 내용 등	책자	2022	문의
	장애인건강자료 모음집 多있소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재활정보 및 교육자료를 주제별로 소개 (운동, 아동, 여성, 감염관리 등)	책자	2022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집(2021년 사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안내, 수행기관 소개, 활동사례 소개	책자	2022	문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가이드북 (대상자용, 담당자용 개정판) 나를 이해하기, 일상생활 동작관리,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건강관리 운동,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맞춤형 서비스 안내 등	책자	2022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건강주치의 정신적 장애응대 매뉴얼-발달장애, 정신장애	책자	2021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의료용어 수어해설사전 5개상황(언어치료, 종양학, 신경과 등), 6개 계통(혈액, 근육, 감각, 면역 등)에 대한 수어해설	동영상	2021	국립재활원 유튜브 의료용어 수어해설사전 (http://signlanguage-dic.org)
	장애친화산부인과 매뉴얼 장애유형별 의사소통방법 및 산부인과 진료시 고려사항, 주요진료 사례 등	매뉴얼	2021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건강자료 모음집 多있소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재활정보 및 교육자료를 주제별로 소개 (운동, 아동, 여성, 감염관리 등)	책자	2021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 가이드 사례관리의 이해,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 개요,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과정 등	책자	2021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건강권 알기 장애인건강권 개념소개, 장애인의 의료기관 불편 경험사례, 장애인건강권 주요사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개	팸플릿	2021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동영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유튜브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BR 안내 및 홍보자료로 이용방법, 제공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기관 소개 등	리플릿	2021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뇌졸중 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체조 전체동작 포스터, 구간별 동작 포스터 2종 (QR코드를 삽입하여 동영상과 연동)	포스터	2020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똑똑~ 장애인건강권 이해하기 장애인건강권법 알기, 장애범주와 유형별 이해, 유형별·상황별 에티켓	책자	2020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북 (담당자용, 저시력자용) 만성질환에 따른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마음 건강 관리, 안전관리 등	가이드북	2020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가이드 장애 여성 90명의 경험,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정서적 우려, 임신과 장애의 상호작용, 장애 부모의 육아, 보건의료서비스 활용 등	책자	2020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장애인 건강주치의 상담 매뉴얼 및 환자교육자료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1편 장애관리, 2편 생활습관, 3편 만성질환 및 예방, 4편 부록) 및 환자교육용 자료	책자	2020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수검자용 건강검진 안내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	가이드북	2020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용 매뉴얼 장애유형별 의사소통방법 및 검진 매뉴얼	가이드북	2020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가이드북 (대상자용, 담당자용) 나를 이해하기, 일상생활 동작관리,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건강관리 운동,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맞춤형 서비스 안내 등	가이드북	2019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40주의 우주 부모가 된다는 것, 피임·임신·출산, 장애 유형별 관리, 양육, 기타 유용한 정보 등	책자	2019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나의 몸 이해하기, 내 몸 돌보기, 건강검진, 성생활, 성 건강, 가족계획, 임신, 진통과 출산, 아기 돌보기 등	책자	2019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방방곡곡 CBR이야기 2018 2017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례모음	사례집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2018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가이드 뇌병변장애인 건강한 식생활, 배뇨, 배변관리, 지팡이 사용, 낙상 예방 등 지역사회에서 건강생활 유지 가이드	가이드북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장애인의 구강관리 구강질환, 구강관리 원칙, 장애유형별 구강상태 특징과 교육	리플릿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의 비만관리 비만 위험성, 비만관리를 위한 행동수정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리플릿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힘들고 우울한가요? 장애인의 우울관리 우울이란, 우울할 때 도움요청방법 등	리플릿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도움이 필요하세요? 장애인 가족의 우울 및 소진관리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도움요청방법 등	리플릿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나에게 딱 맞는 휠체어 휠체어 정의 및 분류, 나에게 맞는 휠체어, 올바른 이용, 주의사항 등	가이드북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의 의료기관 내원 시 중요 POINT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포인트, 장애인과 첫 대면시 중요포인트 등	가이드북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용 안내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	가이드북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용 안내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	가이드북	20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지역사회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과제지향 보행프로그램 - 지역사회 뇌졸중장애인의 보행이란 - 보행의 평가 - 보행촉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 과제지향적 보행프로그램	가이드북	2017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지역사회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과제지향 보행프로그램 - 보행촉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 과제지향적 보행프로그램	포스터	2017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방방곡곡 CBR이야기 2017 201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례모음	사례집	2017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사람 그리고 희망 - 2016 보조기기 공모전 우수작품 모음집 - 보조기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 보조기기 수기 공모전 수상 및 우수작	사례집	2017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함께해요 과제지향순환식 운동프로그램 - 지역사회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 쉽고 자세한 설명 - 동작을 직접 시연	가이드북	2017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 2017 이전 개발자료(참고) 장애인 건강자료 모음 다있소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재활정보 및 교육자료를 주제별도 소개(운동, 아동, 여성, 감염관리 등)	책자	2022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 국립재활원 재활교육 동영상 자료

구분	제목	제공년도	자료접속방법
장과 방광훈련	• 신경인성방광에서의 배뇨관리(1)개념과중요성 • 신경인성방광에서의 배뇨관리(2)종류와 방법 • 청결 간헐적 도뇨법 안내(남성) • 청결 간헐적 도뇨법 안내(여성) • 척추손상인을 위한 배변관리 • 청결 간헐적 도뇨법(CIC) 교육 영상	2015	① 유튜브 검색 “국립재활원 재활교육 동영상”으로 검색 ② 네이버 검색; 검색창에서 위 동영상 제목 입력→ 국립재활원 자료 click ③ 국립재활원 홈페이지화면의 (nrc.go.kr/nrc/main.do) 유튜브 마크 click → 해당 동영상 제목 입력
척추손상인을 위한 건강정보	• 척추손상인을 위한 자가운동 가이드 (1) 운동 효과 (2) 스트레칭 (3) 근력운동효과와 주의사항 (4) 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5) 덤벨을 이용한 근력운동 • 척추손상인에서의 자율신경과반사증 • 욕창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정보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건강정보	• 뇌졸중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우울증 관리 • 뇌졸중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체조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연하재활운동 및 주의 사항 • 구음장애 환자를 위한 구강-조음기관운동		
낙상예방 및 관리	• 낙상 예방을 위한 자가운동 •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장애인 건강 up	• 1편: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20분 홈트레이닝 • 2편: 장애인을 위한 5분 근지구력 순환운동 • 3편: 욕창 예방을 위한 12가지 • 4편: 장애인을 위한 일생생활소 코어운동 • 5편: 장애인을 위한 유산소 리듬운동 • 6편: 코끼리 자전거 활용영상 • 7편: 전동기립기 활용영상 • 8편: 장애인을 위한 알페벳 근력운동 • 9편: 뇌졸중 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체조 • 12편: 장애인 건강증진체조 • 17편: 가정에서의 건강관리(척추장애편) • 18편: 척추손상 환자의 에어로빅운동(사지마비환자용) • 19편: 척추손상 환자의 에어로빅운동(하지마비환자용) • 20편: 낙상예방을 위한 상황별 중요포인트 • 31편: 척추장애인을 위한 근력운동		

참고 19 장애발생예방교육(손상예방교육) 안내자료

1. 목적

- 후천적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대국민 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

2.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3. 대상

-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구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시간	40분	45분	50분	60분

4. 교육인원 : 교육 1회당 최대 50명

5. 교육방법

- 대면교육 : 장애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실시간 방송 교육 불가)

6. 교육내용

- 프레젠테이션 및 동영상 교육, 강사의 실제 사고 사례교육
-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배양
- 장애의 정의·장애 유형·대한민국 장애인 현황 등 안내
- 기타 장애인식개선에 관련한 내용 등



〈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의 자료 중 일부 발췌 〉

분 야	교육 내용
교육 소개	대한민국 장애인 현황 및 장애 발생의 원인, 장애발생예방교육 실시 배경, 국립재활원 및 강사 소개
장애의 이해	장애의 정의, 장애유형 안내
사고 사례	강사 본인이 겪은 사고 사례 소개
사고 및 장애발생예방법	학교와 생활 주변의 장애발생예방법, 장애발생예방 5계명 등

7. 교육비용

- 1회(1시간 이하)당 : 120,000원(국립재활원 예산 미지원 시 100% 자부담)
(예산지원시 : 교육 신청기관 60,000원, 국립재활원 60,000원)

교육구분	국립재활원 부담	신청기관 부담	총 교육비용
1회 교육 비용 (국립재활원 예산 지원 시)	60,000원 (50%)	60,000원 (50%)	120,000원
1회 교육 비용 (국립재활원 예산 미지원 시)		120,000원 (100%)	120,000원

8. 신청방법

● 사전신청서 작성 후 접수 기간 내에 전자메일로 선착순 신청

- (사전신청서 다운로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지원 및 신청 ▶ 교육소개 ▶ 장애발생예방교육 ▶ 교육자료실

- (전자메일 신청주소) nrcjb@korea.kr

- 전화 신청 불가

- 접수 시작 시간 이전 도착 메일 불인정

● 접수 기간

연번	교육 신청기간	교육 월	교육 기간
1	2. 19.(월) 9:00~2. 21.(수) 15:00	3월	3. 11.(월)~3. 29.(금)
2	3. 4.(월) 9:00~3. 6.(수) 15:00	4월	4. 1.(월)~4. 30.(화)
3	4. 1.(월) 9:00~4. 3.(수) 15:00	5월	5. 1.(수)~5. 31.(금)
4	5. 1.(수) 9:00~5. 7.(화) 15:00	6월	6. 3.(월)~6. 28.(금)
5	6. 3.(월) 9:00~6. 5.(수) 15:00	7월	7. 1.(월)~7. 31.(수)
6	7. 1.(월) 9:00~7. 3.(수) 15:00	8월	8. 1.(목)~8. 30.(금)
7	8. 1.(목) 9:00~8. 5.(월) 15:00	9월	9. 2.(월)~9. 30.(월)
8	9. 2.(월) 9:00~9. 4.(수) 15:00	10월	10. 1.(화)~10. 31.(목)
9	10. 1.(화) 9:00~10. 4.(금) 15:00	11월	11. 1.(금)~11. 29.(금)
10	11. 1.(금) 9:00~11. 5.(화) 15:00	12월	12. 2.(월)~12. 6.(금)

- 접수 기간별 선착순 예산 지원

- 접수 마감 후, 추가 교육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 기간 준수 요청

- 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홈페이지 및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 신청 주의사항

- 교육 시작 가능일 : '24. 3. 11.(월)부터 교육 가능

※ 4월 교육은 수요가 많아 원하시는 일정에 교육이 어려울 수 있음.

- 국립재활원 예산소진 시 예산지원 불가(신청기관 100% 부담)

● 기타 문의 및 참조

-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담당(02-901-1594, 901-1586)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 ▶ 교육지원 및 신청 ▶ 교육소개 ▶ 장애발생예방교육

● 장애발생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자료 무료 활용 안내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무료 활용 가능



국립재활원 교육지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구분	제목	종류	유형	상태	다운로드
1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2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3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4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5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6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7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8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9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100	장애발생예방교육(가정) -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교육자료	완료	10

• 다운로드 방법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접속 ▶ 교육지원 및 신청 ▶ 교육소개 ▶ 장애발생예방교육 ▶ 교육자료실

●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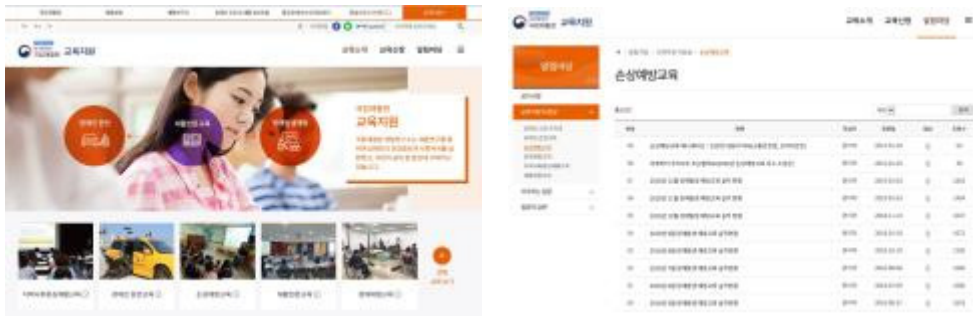


● 기타 문의 및 참조

- 국립재활원 손상예방교육 담당(02-901-1594, 901-1581)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 ▶ 교육지원 ▶ 손상예방교육

● 손상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자료 무료 활용 안내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무료 활용 가능



• 다운로드 방법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접속 → 교육지원 → 알림마당 → 교육지원자료실
→ 손상예방교육

참고 20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p.6 참조)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구분	영유아(0세~만6세) (영유아건강검진)		학동기(6세~18세) (학생검진)		성인기(20~64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노년기(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비취학 학동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암관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암관리법 제11조
대 상	만0~6세 전체 영유아		6세~18세 전 취학 학동	9~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 20세 이상 파부양자 및 세대원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성인기 건강 보험가입자와 동일	- 65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 환기검진) * 65세 이상 건강검진 -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실시
	-		-	-	- 암종별 대상연령		- 암종별 대상연령	
검진주기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8회)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총 4회)	3년 1회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2년 1회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2년 1회
검진 수행 주체	국민건강 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학교장	여성가족부 *공단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비용 부담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본인부담 없음	본인부담 없음	- 일반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 암검진: • 보험료 상위 50% : 본인부담 10% (자공경부담,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 보험료 하위 50%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국고 및 지방비 10%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 일반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 암검진: • 보험료 상위 50% : 본인부담 10% (자공경부담,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 보험료 하위 50%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국고 및 지방비 10%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비고	'07.11.15 실시	'08.1.1 실시	교육부 주관 (1951년 실시)	여성가족부 주관('16년)	- 일반: '80년 실시 - 암: '90년 실시	- 일반: '12년 실시 - 암: '99년 실시	-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18년 실시	
	*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2021.1.1 시행 * 이외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건강검진 임의규정 명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만40세, 66세) : '07~'17년까지 실시			

참고 21 보건소 - 공단 간 시스템 연계 안내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p.118 참조)

1. 목적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국가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송수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국가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2. 관련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

3.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5조에 따른 “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제출자

4. 연계 대상 업무 내용

- 건강검진 정보
 - 검진기관 신청 및 취소, 행정처분
 - 제공자료 : 검진기관 지정신청, 변경 및 지정취소, 행정처분, 건강진단 등 신고
 - 제공주기 : 수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선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제출자
 - 제공자료 : 대상자 대장 및 현황
 - 제공주기 : 월 1회
- 검진사후 정보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자 중 정상소견 이외의 자
 - 대상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제출자



- 제공자료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제공주기 : 월 1회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철회
 - 대상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를 철회한 자
 - 제공자료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제공주기 : 월 1회
- 검진비용 정보
 - 위탁검진비용 지급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제공자료 : 국가건강검진비용 청구·지급 내역
 - 제공주기 : 월 1회
 - 검진비용 환수·환불 이력 내역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사업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검진 대상자
 - 제공자료 : 위탁검진비용 환불현황 및 휴·폐업 검진기관 및 6개월간 검진비 청구 내역이 없어 공단에서 검진비 상계 처리가 불가하여 현금고지해야 하는 대상 건
 - 제공주기 : 월 1회 또는 사유 발생시
 - 제공방법 : 문서 통보 및 전산자료 연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나의 업무 →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위탁검진비 환수·환불현황)

5. 자료제공 방법

연계 업무		제공방법
건강검진 정보	검진기관 신청, 변경 및 취소, 행정처분, 건강진단등 신고	공단 ↔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공단 → 보건소
검진사후 관리정보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	공단 → 보건소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 중 철회자	공단 ↔ 보건소
검진비용 정보	위탁검진비용 지급	공단 → 보건소
	검진비용 환수·환불 이력 내역	

【 연계 대상업무 상세 】

시스템	업무	단위업무기능 명	기능설명
보건소 연계	건강 진단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정신청 기본정보
			지정신청 인력정보
			지정신청 장비정보
			지정신청 검토 결과
			지정취소 신청정보
			건강진단 등 신고
			검진기관 변경신고
			행정처분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영유아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영유아(건강 및 구강)결과 통보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영유아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대상자(미수검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결과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 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건강 및 구강)결과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대장 및 관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현황 보건소 통보
	검진 사후	보건소 사후관리 사업결과 전송	보건소 사후관리 결과 관리
			보건소 사후관리 결과 보건소 추진
		결과활용 동의자 및 결과	결과활용 동의 대상자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동의자 검진결과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동의자 문진표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철회(쌍방향)	결과활용 철회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철회 수신
	지급/ 청구	위탁검진비 지급	예약금 입금 내역
			예약금 지출 내역
			예약금 수입/지출 현황
		환수 보건소 이관 내역	위탁검진비 환수현금고지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수결정내역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수결정내역 보건소 통보
		환불 보건소 이관 내역	위탁검진비 환수결정개인별내역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불현금고지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불결정개인별내역 보건소 통보



참고 22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13.12.18.)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함(소정근로의 대가)
 -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예: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①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정의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음
 -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없이** 지급받는 임금

다만, 약정한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② 정기성

-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③ 일률성

-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일률성’ 요건의 구체적 적용

-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2)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됨**(眞性 가족수당)
 -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④ 고정성

-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
 -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의 임금을 말함



□ 고정성 판단기준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사전확정성)
 - ‘추가적인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함
 - 따라서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함
-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전합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함

3.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

-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 예시 :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통상임금에 해당
 - (일률성 인정)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

■ 근속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 * 예시 :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음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 예시 :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님

- (고정성 부정)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하여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예시 :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예시에서의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

■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님

- (소정근로의 대가 부정)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
- (고정성 부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 여부는 불확실함

-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예시 : 퇴직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 해당

- (고정성 인정)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
 - ☞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 예시 :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만큼만 통상임금에 해당됨(나머지는 통상임금 아님)
-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
 -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는 그 성과급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 * 예시 : 성과연봉
 - (고정성 부정)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자격수당 등)

-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 * 예시 :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X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X (근로의 대가 X, 고정성 X)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참고 23 개인정보 보호 안내

※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안내서」 참조

1. 기본원칙

- 시·도 및 시·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2. 개인정보 보호 필수조치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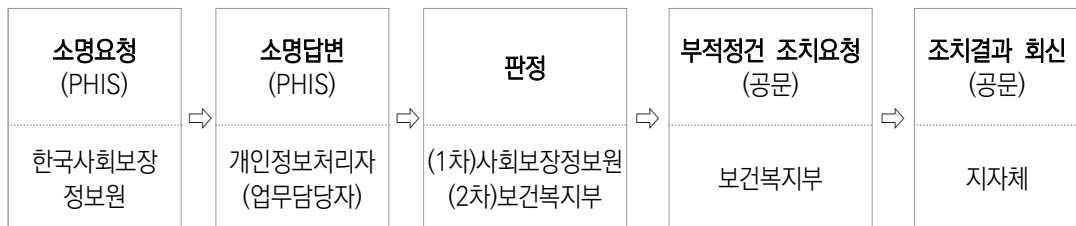
- 개인정보가 분실·유출·위조·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개요

-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업무처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업무처리 절차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 발생 시 PHIS를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 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 요청 받은 자는 10일 이내 사실에 입각하여 소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PHIS에 등록
- 판정 결과 부적정인 경우 지자체에서는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공문 회신



■ 유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징계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업무 목적으로만 개인정보 처리 수행



참고 24 기관별 연락처

기 관	부 서 / 내 용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총괄	044-202-3189
	건강정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044-202-2805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총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무	02-901-161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02-901-1656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02-901-1592
		공공재활사업	02-901-1654
		보조기기 사례관리	02-901-1953
		보조기기 품질관리	02-901-1973
	장애인건강사업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02-901-1306
		장애인 건강주치의	02-901-1305
		여성장애인 지원	02-901-1304
		장애인건강권 교육	02-901-1304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장애인운전교육	02-901-1553
		장애체험교육	02-901-1586
	사회복귀지원과	사회복귀	02-901-1897
	간호과	행정	02-901-1711
		교육	02-901-1729
	물리작업치료과	사무	02-901-180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	관리운영	02-6360-5448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PHIS)	콜센터	1566-3232
멘토보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02-879-7411
	부산광역시	연제구보건소	051-665-3831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053-666-3153

기 관	구 분		연락처
멘토보건소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032-430-7993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 (수원건강생활지원센터)	062-960-8824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	042-611-6155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052-241-8607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보건소	033-737-4056
	충청북도	영동군보건소	043-740-5955
	충청남도	홍성군보건소	041-630-904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보건소	063-859-4945
	전라남도	목포하당보건지소	061-270-4016
	경상북도	김천보건소(중앙보건지소)	054-421-2806
	경상남도	마산보건소	055-225-60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75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서울특별시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재활병원	02-6020-3128
	서울특별시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시립보라매병원	02-870-2071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부산동아대병원	051-240-2481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하대병원	032-451-9057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042-338-2229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053-200-7665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남대병원	062-220-4621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분당서울대병원	031-706-0086



기 관	구 분		연락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031-900-360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033-248-7760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북대학교병원	043-269-2701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성의료원	041-630-605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원광대학교병원	063-859-0053
	전라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순천의료원	061-759-9505~10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경북권역재활병원	053-230-8971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대학병원	064-717-2720
장애인 건강주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개발부	033-736-378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	033-739-1660, 1658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사업과	02-901-1305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서울	서울의료원	02-2276-7000
		국립재활원	02-901-1400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051-607-2061
		부산성모병원	051-933-7651
		연제일신병원	051-978-2201
		좋은삼선병원	051-310-9500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37
	대전	대청병원	1899-6075

기 관	구 분		연락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770~1
	강원	원주의료원	033-760-4586
	충북	청주의료원	043-279-0110
	전남	순천의료원	061-759-9420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770~1
	강원	원주의료원	033-760-4586
	충북	청주의료원	043-279-0110
	전남	순천의료원	061-759-9420
	경북	안동의료원	054-850-6080
		경북안동병원	054-840-0433
		경북권역재활병원	053-230-8900
	경남	마산의료원	055-249-1234~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1280
		조은금강병원	055-330-0222
		진주고려병원	055-751-2412~3
		경남밀양병원	055-355-3993
	제주	중앙병원	064-786-7282~3
		서귀포의료원	064-730-3020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광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062-530-5513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041-550-0127
	부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학교 병원	051-240-6801
	전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063-250-2882
	경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031-8005-2937



기 관	구 분		연락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대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053-600-7115
	인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가천대학교 길병원	032-460-3882
	강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33-640-3111
	제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064-717-2716
	중앙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072-4711
권역재활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서울, 인천, 경기	032-899-4351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강원	033-248-7625
	대전 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338-2322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 전북, 전남	062-613-9368
	영남권역재활병원	부산, 울산, 경남	055-360-4125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북, 대구	053-230-8808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	064-730-9126
재활의료기관	서울	국립재활원	02-901-1700
		드림요양병원	02-430-1122
		로이병원	1644-7541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02-3284-7777
		제니스병원	02-3436-8888
		청담병원	02-2104-2000
	부산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교병원	051-363-2331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051-960-0100

기 관	구 분		연락처
재활의료기관	부산	워크재활의학과병원	051-714-4119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051-325-9700
		파크사이드재활의학과병원	051-629-8000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051-744-0123
	인천	미추홀병원	032-430-6200
		브래덤병원	032-456-7600
		서송병원	032-551-0114
	대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053-715-7575
		남산병원	053-250-1100
		대구보건대학교병원	053-320-1900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053-620-7300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053-740-1000
	대전	다빈치병원	1566-9852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042-717-7575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042-607-1234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042-824-6900
	광주	광주365재활병원	062-950-9500
		우암병원	062-260-2700
		호남권역재활병원	062-613-9000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555
		로체스터재활병원	031-879-7575



기 관	구 분	연락처
재활의료기관	경기	린병원
		031-8005-1300
		마스터플러스병원
		031-879-2200
		분당베스트병원
		1899-0175
		분당러스크재활병원
		031-716-0007
		에스알씨(SRC)재활병원
		031-760-3636
	강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031-554-7727
	충북	일산복음미래병원
		031-977-6633
		일산중심병원
		031-810-2000
		휴앤유병원
		031-202-0114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033-248-7700
	충남	씨엔씨푸른병원
		043-291-8114
		아이엠재활병원
		043-284-0675
	전북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 요양병원
		043-265-0051
	경북	첼로병원
		043-211-9090
	경남	천안재활병원
		041-575-7100
	제주	SG삼성조은병원
		041-571-7581
		드림솔병원
	경북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063-250-8000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북주회복병원
	경남	054-710-6000
		1666-9640
		예손재활의학과병원
	제주	055-791-7575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제주	0507-1421-7022
		희연병원
	제주	055-270-2500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	064-730-9000

기 관	구 분		연락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서울 성동구	성동재활의원	02-2204-9970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서울 마포구	넥슨어린이재활병원	02-6070-9000
	서울 관악구	SRC재활병원	031-760-3622
		SRC부설의원	02-871-3636
	서울 강동구	주몽재활의원	070-8255-0356
	부산 영도구	천성의원	051-412-4408
	대구 수성구	인재재활병원	053-752-8683
	인천 미추홀구	인천재활의원	032-866-0102
	인천 연수구	경인권역재활병원	032-899-4000
	대전 유성구	성세병원	042-820-1234
	대전 유성구	대전재활전문병원	042-717-757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033-248-7700
	충북 청주	충북재활의원	043-271-8150
	경북 안동	경북재활병원	054-858-8410
	경남 창원	홍익재활병원	055-286-1518
	경남 거제	마하재활병원	055-633-3000
	제주	제주춘강의원	064-745-8800
전국 보조기기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	국립재활원	02-901-1959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92~6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구대학교	053-650-8340~3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노들담수녀회 노들담복지관	032-540-8989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062-613-9365~6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042-338-2980~2
	울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2-267-5529



기 관	구 분		연락처
전국 보조기기센터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4-715-5320
	경기도보조기기센터	북부센터	031-852-7363
		남부센터	031-295-7363
	강원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033-248-7751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충북재활의원 3층	043-265-0401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041-415-2861~5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전주예수병원	063-230-8083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061-740-1501~2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053-850-5801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055-237-8242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64-723-9997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8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2135-3635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1-714-7360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3-719-0340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2-715-4363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2-714-3352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2-719-1085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2-710-3154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4-414-9172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93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3-817-2357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3-716-2163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1-415-1215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3-714-2610

기 관	구 분	연락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1-802-1062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4-805-7310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5-716-2390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4-803-3714

구 분	지 역	기 관
기타연계 의료기관	서울	중앙보훈병원, 원자력병원, 서울지구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경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부산	부산보훈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등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등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등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대전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산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평택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강원	강릉의료원, 국군강릉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국군원주병원, 정선군립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국군춘천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국군홍천병원 등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등
	충남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전북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진안군의료원 등
	전남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포항의료원, 마산의료원 등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마산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서 식





서식 목록

구 분	서 식	페이지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지정·운영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89
	서식 2 일반정보 등록	291
	서식 2-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등록/관리	292
	서식 3 건강행태(health behavior) 조사지	294
	서식 4 재활기록지	295
	서식 5 상담기록지	297
	서식 6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298
	서식 7-1 서비스 계획	300
	서식 7-2 서비스 제공기록지	302
	서식 8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304
	서식 9 비대면 건강보건관리서비스 평가지	305
	서식 10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	306
	서식 11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평가지	308
	서식 12 경과기록지	326
	서식 13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계획 동의서	327
	서식 14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	328
	서식 15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록지	330
	서식 16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세부서비스 제공기록지	332
	서식 17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333
	서식 18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종결지	334
	서식 1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기록지	335
	서식 20-1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337
	서식 20-2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I	339
	서식 20-3 서비스 회송서	340
	서식 21 교육 만족도 조사지(안)	341
	서식 22 교육 수요 조사지(안)	344
	서식 23 자원봉사 신청서	348
	서식 24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349

구 분	서 식		페이지
	서식 25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장	350
	서식 26	지역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351
	서식 27	업무협약서	353
	서식 28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협력기관 관리 양식	354
	서식 29	비품관리대장	355
	서식 30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56
	서식 31	서약서	357
	서식 32	사업계획서	358
	서식 33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361
	별지서식	사업계획 변경내용	362
	서식 34	사업실적보고서(상반기보고서)	363
	서식 35	연간 사업결과보고서	372
	서식 36	정산보고서	384
	서식 37	사업별 성과평가 항목(안)	387
	서식 3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389
	서식 39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390
	서식 40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391
	서식 4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392
	서식 42	기부금영수증	393
	서식 4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394
	서식 44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396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	서식 1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01
	서식 2	상담기록지	404
	서식 3	연계병원 퇴원상담기록지	405
	서식 4	재활기록지 I, II	407
	서식 5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411

구 분	서 식		페이지
	서식 6	삶의 질 평가(EQ-5D)	412
	서식 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414
	서식 8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록	415
	서식 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평가지	416
	서식 10	경과기록지(내용수정)	434
	서식 11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435
	서식 12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기록지	436
	서식 13-1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438
	서식 13-2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I	440
	서식 13-3	서비스 회송서	441
	서식 14	만족도 조사	442
	서식 15	비대면 건강보건관리서비스 평가지	450
	서식 16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종결지	451
	참고 1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452
	참고 2	서비스 계획	454
	참고 3	서비스 제공지	456
	참고 4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458
	참고 5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동의서 및 계획	459

제1장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과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의료 기관, 권역재활병원, 건강주치의, 장애인화산부인과, 장애인화검진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집합니다. ○ 각종 서비스 지원 및 관리 ○ 이용현황 및 관련통계 산출 ○ 등록자 기반의 전산정보처리, DB운영 및 보안관리 ○ 각종 서비스 안내를 위한 우편물, 문자 및 이메일 발송 ○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개인정보 항목]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선택) 전화번호, 집주소, 건강정보, 수혜이력 정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결 후 5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등록 대상자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 타 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성명,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제공 대상] ○ 보건소, 사회법인·단체·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업무위임·위탁기관, ○○기관(*추가 제3자 제공 필요 시 지역센터에서 수정 사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결 후 5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동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각종 서비스 지원 및 관리
- 이용현황 및 관련통계 산출
- 등록자 기반의 전산정보처리, DB운영 및 보안관리
-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민감정보 항목]

- 장애정보 및 건강정보(사업별 건강조사기록 서비스 제공기록 정보)
-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대한 정보
- 사례관리 정보(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민감정보 수집·이용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동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각종 서비스 지원 및 관리
- 이용현황 및 관련통계 산출
- 등록자 기반의 전산정보처리, DB운영 및 보안관리
-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 동의 사유 :

)

〈서식 2〉 일반정보 등록

일반정보 등록

대상자명			개인정보동의여부	○ Y ○ N			
접수경로	○ 자체발굴(또는 장애당사자 신청)						
	의뢰경로					기관명	
	○ 전자의뢰						
	○ 수기의뢰 (○ 보건소 ○ 사회복지기관(시설) ○ 행정기관(군·구청, 행정복지센터) ○ 재활의료기관 ○ 기타의료기관 ○ 기타())						
담당자			접수일자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여부	○ Y ○ N			
생년월일			성별		연령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주소지							
실주소지							
결 혼	○ 미혼 ○ 기혼 ○ 사실혼 ○ 별거 ○ 이혼 ○ 사별			배우자 장애	○ 유 ○ 무		
직 업	○ 무 ○ 유 (직업 :)						
주돌봄자	○ 무						
	○ 유	☐ 가족(☐ 배우자 ☐ 자녀 ☐ 부모 ☐ 기타() ☐ 돌봄종사자(☐ 활동지원사 ☐ 요양보호사 ☐ 유급간병인 ☐ 기타() ☐ 기타(☐ 이웃 ☐ 친구 ☐ 기타()					
		주돌봄자 연락처					
		번호	성명	연락처1		연락처2	
세대유형	○ 독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 ○ 기타()						
주거형태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시설 ○ 기타()						
보험형태	○ 국민건강보험(○ 직장 ○ 지역)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타()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 유형	주장애 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 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서비스 신청 요구	☐ 건강주치의 ☐ 건강검진 ☐ 여성장애인관련 서비스 ☐ 유관기관 연계 ☐ 장애인·가족교육 ☐ 자조모임 참여 ☐ 자원봉사자 ☐ 기타 ()						
수혜서비스 내역	번호	시작일	종료일	서비스 상태	제공주기	서비스명	서비스 한도
등록서류							
비고							

〈서식 2-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 등록/관리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등록/관리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사회가족정보]											
임신·출산 시 주 돌봄자	○ 무										
	○ 유	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장애유무		
가족형태	☐ 다문화 본인 ☐ 다문화 배우자 ☐ 한부모 (○ 사별 ○ 이혼 ○ 별거 ○ 미혼모) ☐ 기타 _____										
	[산과력]										
	장애 이전										
임신회수				유산회수				조산회수			
번호	성별	출생년월			장애여부			분만방법			
장애 이후											
임신회수				유산회수				조산회수			
번호	성별	출생년월			장애여부			분만방법			
[임신정보]											
임신주수	등록	주	현재	주	출산예정일						
산전관리 기관	등록시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보건소 ○ 기타() 의료기관명 :									
	현재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보건소 ○ 기타() 의료기관명 :									
등록보건 소	○ 예(_____보건소) ···· ○ 아니요										
건강관리	임신 중 음주	○ 무 ○ 유(종류 _____, 양 _____, 횟수 _____)									
	임신 중 흡연	○ 무 ○ 유(흡연량 _____, 기간 _____, 금연시도 _____)									
	산전 접종력	☐ 풍진 ☐ B형간염 ☐ 기타 _____									

현 병력	☐ 무 ☐ 유(☐ 고혈압 ☐ 당뇨 ☐ 결핵 ☐ 정신질환 ☐ 기타 ())
임신합병증	☐ 무 ☐ 유(☐ 임신성 고혈압 ☐ 임신성 당뇨병 ☐ 임신중독증 ☐ 기타())
약물복용	☐ 아니오 ☐ 예 (약물종류_____)
우울증 간이검사	☐ 아니오 ☐ 예 (점수_____)

[분만정보]

출산일	_____년_____월_____일				
분만기관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조산원 ☐ 가정분만 ☐ 기타() 의료기관명 :				
분만방법	☐ 자연분만 ☐ 제왕절개				
아이정보	성별	체중	분만주수	장애유무	장애내역

[산후정보]

산후주수	등록	주	현재	주	
산후조리	계획시	☐ 계획없음 ☐ 자택 ☐ 친인척집_____ ☐ 공공산후조리원_____ ☐ 민간산후조리원_____ ☐ 기타_____			
	실제	☐ 계획없음 ☐ 자택 ☐ 친인척집_____ ☐ 공공산후조리원_____ ☐ 민간산후조리원_____ ☐ 기타_____			
		기간 : _____ 주 도움인력 : _____			
건강관리	현 병력	☐ 무 ☐ 유(☐ 고혈압 ☐ 당뇨 ☐ 결핵 ☐ 정신질환 ☐ 기타 ())			
	산후합병증	☐ 무 ☐ 유()			
	약물복용	☐ 아니오 ☐ 예 (약물종류_____)			
	우울증 간이검사	☐ 아니오 ☐ 예(점수_____)			
	수유방법	☐ 모유 ☐ 분유 ☐ 혼합수유			

[이용 중인 공적제도]

지원 주체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 시작일

〈서식 3〉 건강행태(health behavior) 조사지

건강행태(health behavior) 조사지

건강정보	
1.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2.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매일 피움	② 가끔 피움 ③ 피우지 않음 ④ 기타 _____
3.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술을 마실 경우 1회 음주량은 얼마나 됩니까?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3-2.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월 2~4회 ④ 주 2~3회 ⑤ 주 4회 이상
4. 최근 1년 동안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였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4-1. 운동주기는 어느정도입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주 3회 이상 ③ 주 2회 ④ 주 1회 ⑤ 월 1회 이하
5. 최근 1년 동안 입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구강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검진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
☐ 간경변 등 만성 간질환	☐ 만성신부전
☐ 이상 지질혈증	☐ 관절염 및 골다공증
☐ 비만	☐ 천식 및 아토피 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기 호흡 질환	☐ 없음
☐ 기타	
7. 최근에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1년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병·의원에 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1.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이유	② 병·의원 이용이 불편해서 ③ 교통이 불편해서
④ 증상이 가벼워서	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⑥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⑦ 기타 _____
8.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 예(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날짜를 기록)	☐ 아니오
8-1.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이유	② 병·의원 예약이 어려워서 ③ 교통이 불편해서
④ 본인(또는 보호자)이 갈 수 있는 시간에 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어서	
⑤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⑥ 증상이 가벼워서
⑦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⑧ 기타 _____

〈서식 4〉 재활기록지

재활기록지

재활사정		
발병 및 치료과정	발병일 : . . . (년 개월 전)	
재활치료 경험	☐ 유(년 개월) ☐ 무	
의학적 문제	☐ 고혈압 ☐ 당뇨 ☐ 심장병 ☐ 기타_____	
동반장애	☐ 언어장애 ☐ 경련 ☐ 연하곤란 ☐ 편측무시 ☐ 뇌수종 ☐ 우울증 ☐ 배뇨장애 ☐ 배변장애 ☐ 기타_____	
통 증	☐ 유(부위 : 강도 : 0-1-2-3-4-5-6-7-8-9-10) ☐ 무	
복용중인 약물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_____ 보행기구 _____ 기타 _____	
외출(지역참여)	☐ 유(횟수 : / 주요활동 :) ☐ 무	
주간병인		
가족 특이사항	☐ 독거 ☐ 부부만 거주 ☐ 조손가정 ☐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 ☐ 폭력가족 ☐ 지적장애(부모) ☐ 정신질환가족 ☐ 배우자 외 동거가족 ☐ 기타	
주거사항	화장실 유형 ☐ 좌변기 ☐ 재래식변기 ☐ 이동변기 ☐ 기타 _____	
	승강기 ☐ 유 ☐ 무	
	개선필요 ☐ 유 ☐ 무	
	필요부분	안전관리 ☐ 문턱 ☐ 미끄럼방지 ☐ 손잡이 또는 안전대 ☐ 기타_____
		이동관련 ☐ 계단 ☐ 문턱 ☐ bar 설치 ☐ 기타_____
일상생활 ☐ 화장실 ☐ 부엌 ☐ 거실 ☐ 침실 ☐ 기타_____		
기타 _____		

재활사정(계속)						
의식	☐ 명료		☐ 혼돈		☐ 혼수	
의사소통	☐ 가능(표현방법 :)		☐ 다소 어려움		☐ 불가능	
호흡상태	☐ 정상	☐ 기침	☐ 호흡곤란	☐ 기관 삽관	☐ 기타 _____	
영양상태	☐ 양호		☐ 불량		식단 부족, 삼키기 능력 저하 등의 이유를 기술	
연하장애	☐ 있음		☐ 없음			
배뇨	상태	☐ 정상		☐ 배뇨곤란(참지 못함, 잦은 배뇨, 느낌 없음)		
	방법	☐ 정상	☐ 기저귀, 기스모	☐ 도뇨관(간헐적, 지속적)	☐ 기타	
배변	상태	☐ 정상	☐ 변비(회 / 일)	☐ 실변(배변느낌 유 무)	☐ 기타	
	방법	☐ 정상	☐ 항문자극	☐ 관장	☐ 기타	
피부	위생상태	☐ 양호	☐ 불량	☐ 욕창(부위 :)	상태 :)	
근력	우상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좌상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우하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좌하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관절구축	상지	☐ 어깨(좌, 우)		☐ 팔꿈치(좌, 우)	☐ 손(좌, 우)	
	하지	☐ 고관절(좌, 우)		☐ 무릎(좌, 우)	☐ 발목(좌, 우)	
운동기능 정도	☐ 외상상태(거동불능)		☐ 앉아있을 수 있음		☐ 침대, 휠체어 이동가능	
	☐ 기립가능	☐ 의존적 실내보행	☐ 독립적 실내보행	☐ 실외보행		
일상생활 (총점:)		전혀안됨	시도만 가능	중간도움	최소도움	완전독립
	개인위생	☐ 0	☐ 1	☐ 3	☐ 4	☐ 5
	목욕하기	☐ 0	☐ 1	☐ 3	☐ 4	☐ 5
	식사하기	☐ 0	☐ 2	☐ 5	☐ 8	☐ 10
	용변처리	☐ 0	☐ 2	☐ 5	☐ 8	☐ 10
	계단오르기	☐ 0	☐ 2	☐ 5	☐ 8	☐ 10
	옷입기	☐ 0	☐ 2	☐ 5	☐ 8	☐ 10
	배변조절	☐ 0	☐ 2	☐ 5	☐ 8	☐ 10
	배뇨조절	☐ 0	☐ 2	☐ 5	☐ 8	☐ 10
	보행	☐ 0	☐ 3	☐ 8	☐ 12	☐ 15
	휠체어보행	☐ 0	☐ 1	☐ 3	☐ 4	☐ 5
	휠체어/침대이동	☐ 0	☐ 3	☐ 8	☐ 12	☐ 15

〈서식 5〉 상담기록지

상담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상담일자					
상담방법	☐ 내소	☐ 방문	☐ 전화	☐ 온라인	☐ 기타_____
상담목적					
상담내용					
결과 및 지원계획					
기타사항					
추후관리여부	☐ 필요(추후관리 예정일:) ☐ 불필요				

〈서식 6〉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번호	질 문	응답	
1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가?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를 위하여 스스로(또는 도움을 받아서) 약물복용, 병원방문 등 건강관리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2번 문항으로)
	* 예로 응답한 경우 정보제공, 복지관 등 연계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2번 문항으로		
2	보건의료적 복합문제가 있는가?		
	☐ 주된 장애로 집중치료 필요 ☐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필요 ☐ 기타 _____	☐ 예 (3문항으로)	☐ 아니오
3	돌봄자가 있는가?	☐ 예 (4번문항으로)	☐ 아니오
4	필요시 병원방문 등 의료적 관리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필수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원하는 서비스 없음 ☐ 병원 외래 등 기존서비스 이용 ☐ 기타()
	* 예로 응답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최종 분류 *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사유 체크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분류 전 최종 서비스 요구도 확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담당인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가능(선정사유 작성)**

작성안내

번호	항목	작성방법
1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가?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를 위하여 스스로(또는 도움을 받아서) 약물복용, 병원방문 등 건강관리가 가능한가?	건강관리를 위하여 스스로(또는 도움을 받아서) 약물복용, 병원 방문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
2	보건의료적 복합문제가 있는가?	장애 또는 질병으로 집중치료, 긴급입원, 검사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작성
3	돌봄자가 있는가?	대상자의 가족, 친척, 돌봄지원사 등 돌봄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4	필요시 병원방문 등 의료적 관리가 가능한가?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방문 등 의료적 관리가 스스로(또는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지 확인하여 작성
필수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가 있는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최종 분류 전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 파악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사유 체크

〈서식 7-1〉 서비스 계획

서비스 계획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서비스 제공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공방법
☐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장애인건강 보건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만성질환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운동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영양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구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정신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건소 CBR지원	☐ 사업 역량강화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자원연계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교육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정보제공서비스	☐ 리플릿, 책자제공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사업안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기관안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편의제공서비스	☐ 이동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동행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서비스 예약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돌봄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주거지원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 재활의료서비스	□ 성인재활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소아청소년재활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재활교육 및 훈련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조기기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 사후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애인건강주치의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서비스	□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라닉	□ 보건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복지서비스 등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동행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건 및 건강상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여성장애인건강관리교실	□ 임신출산 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서비스명 : _____	□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세부서비스 계획			

〈서식 7-2〉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서비스 제공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공일자	제공방법	제공자	종료
☐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					☐
☐ 장애인건강 보건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만성질환관리				☐
		☐ 운동관리				☐
		☐ 영양관리				☐
		☐ 구강관리				☐
		☐ 정신건강관리				☐
		☐ 기타 _____				☐
	☐ 보건소 CBR지원	☐ 사업 역량강화				☐
		☐ 자원연계지원				☐
		☐ 교육지원				☐
		☐ 기타 _____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정보제공서비스	☐ 리플릿, 책자제공				☐
		☐ 사업안내				☐
		☐ 기관안내				☐
		☐ 기타 _____				☐
	☐ 편의제공서비스	☐ 이동지원				☐
		☐ 동행서비스				☐
		☐ 의료서비스 예약				☐
		☐ 돌봄서비스				☐
		☐ 주거지원서비스				☐
☐ 기타 _____					☐	
☐ 기타 _____		☐ _____				☐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 재활의료서비스	□ 성인재활의료서비스				□
		□ 소아청소년재활의료서비스				□
		□ 재활교육 및 훈련				□
		□ 보조기기				□
		□ 기타 _____				□
	□ 건강검진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 건강검진 사후건강관리				□
	□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애인건강주치의서비스				□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 기타 _____	□ _____				□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서비스	□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 보건서비스				□
		□ 의료서비스				□
		□ 복지서비스 등				□
		□ 의료동행서비스				□
		□ 보건 및 건강상담				□
		□ 기타 _____				□
	□ 여성장애인건강관리 교실	□ 임신출산 건강관리				□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 기타 _____				□
	□ 기타 _____	□ 기타 _____				□
□ 기타 _____	□ 서비스명 : _____	□ _____				□
세부서비스 계획						

〈서식 8〉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일시				장소			
방법	☐ 대면(☐ 내소 ☐ 가정방문 ☐ 기타____) ☐ 비대면(☐ 유선 ☐ 온라인 ☐ 기타____)						
협력기관	기관명			부서명 (진료과)			
	성명/직위	/		연락처/이메일			
대상자 욕구 및 목적							
제공 내용							
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필요시 추가 작성]							
미등록 참석자	☐ 가족 ☐ 활동지원사 ☐ 기관 관계자 ☐ 기타				미등록 참석인원	명	
강사정보	기관명			부서명			
	성명/직위	/		연락처/이메일			
	교육자료	☐ 자료명 ☐ 자료명		☐ 자료형태 ☐ 자료형태		☐ 업로드 ☐ 업로드	

〈서식 9〉 비대면 건강보건관리서비스 평가지

비대면 건강보건관리서비스 평가지

기본정보(이름/성별/나이 표기 필요)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일자	년 월 일
	키 (cm)	몸무게 (kg)	BMI()	전화번호	☐ 대상자: ☐ 보호자:	
장애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발달 ☐ 기타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주진단명 ☐ 직접 기재()					
의사소통	☐ 완전가능 (표현방법:) ☐ 부분적 가능(표현방법:) ☐ 불가능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도움 필요 ☐ 도움 필요 없음		
만성질환 관리						
유무	종류	질환 이해 여부	약물 복용 여부	약물 복용정도	주기적 병의원 진료 여부	
☐ 있음	☐ 고혈압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당뇨병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고지혈증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우울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비만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기타()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없음						
만성질환 관리필요여부	☐ 필요 ☐ 필요없음 (비고) 현재 만성질환 관리 방법 등 추가사항 작성					
장애 관리(2 차 장애예방)						
유형	장애유무	상태			관리유무	
육창	☐ 없음 ☐ 있음	☐ 상태(stage): ☐ 부위			☐ 관리 ☐ 미관리	
배뇨장애	☐ 없음 ☐ 있음	☐ 배뇨곤란(참지 못함, 잦은 배뇨, 느낌 없음 등)			☐ 관리 ☐ 미관리	
배변장애	☐ 없음 ☐ 있음	☐ 변비 ☐ 실변			☐ 관리 ☐ 미관리	
낙상경험 (최근 1 년)	☐ 없음 ☐ 있음	☐ 시기 () ☐ 내용 ()			☐ 관리 ☐ 미관리	
연하장애	☐ 없음 ☐ 있음	☐ 음식종류()			☐ 관리 ☐ 미관리	
통증유무	☐ 없음 ☐ 있음	☐ 부위() ☐ 강도 (0 1 2 3 4 5 6 7 8 9 10)			☐ 관리 ☐ 미관리	
		☐ 부위() ☐ 강도 (0 1 2 3 4 5 6 7 8 9 10)			☐ 관리 ☐ 미관리	
		☐ 부위() ☐ 강도 (0 1 2 3 4 5 6 7 8 9 10)			☐ 관리 ☐ 미관리	
관절구축	☐ 없음 ☐ 있음	상지	☐ 어깨 ☐ 팔꿈치 ☐ 손	☐ 좌 ☐ 우 ☐ 좌 ☐ 우 ☐ 좌 ☐ 우	☐ 관리 ☐ 미관리	
		하지	☐ 고관절 ☐ 무릎 ☐ 발목	☐ 좌 ☐ 우 ☐ 좌 ☐ 우 ☐ 좌 ☐ 우		
운동기능	☐ 외상상태(거동불능) ☐ 의존적 실내보행	☐ 앉아있을수 있음 ☐ 독립적 실내보행	☐ 기립가능 ☐ 실외보행	☐ 관리 ☐ 미관리		
장애관리 필요여부	☐ 필요 ☐ 필요없음 (비고) 현재 장애 관리 방법 등 추가사항 작성					
서비스 제공여부 및 동의						
서비스 제공 동의	☐ 동의					☐ 비동의
서비스 제공여부	☐ 해당	서비스 제공 활용 매체 : 예) 카카오톡, zoom 활용, 영상통화 가능				☐ 미해당
기타의견 작성						

〈서식 10〉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시는 자료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써 오직 통계처리만을 위해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 귀하가 제공받은 세부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만족정도				
	전혀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 장애인건강보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건강권 및 건강교육	①	②	③	④	⑤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3. 제공받은 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3-1. 아니오인 경우,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내용이 부족해서 ③ 이해하기 어려워서 ④ 기타_____

4. 제공받은 서비스가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제공받은 서비스를 다른사람에게 권하겠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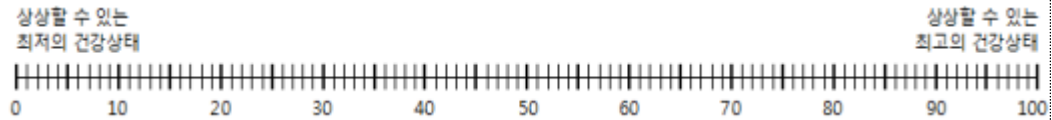
6. 제공받은 서비스를 추후 계속 이용하고 싶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나의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표현하는 것을 돕고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100'으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상태를 '0'으로 표시한 눈금자를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눈금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전 점수	점(총점 100점)
서비스 후 점수	점(총점 100점)

* 다음은 대상자 및 귀하의 현재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대상자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_____시(군)
3. 대상자의 연령은? _____세
4. 대상자의 장애 명과 장애 정도를 적어주십시오.
_____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③ 미등록
5. 기타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식 11〉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평가지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평가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평가일자				평가자명		
주면접자						
평가방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의뢰기관명			의뢰자명			의뢰자연락처

1. 건강관리(진단, 치료, 재활, 간호 등)의 필요성							
발병일	년 월		주진단명				
사용중인 보조기기	○무 ○해당 없음						
	○유	지체/뇌병변	□손보조기 □보행기	□어깨보조기 □수동휠체어	□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척추보조기 □전동스쿠터	□지팡이 □기타
		시각장애	□독서확대기 □점자라벨기 □점자/음성시계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경	□점자디스플레이 □화면낭독 S/W □기타()	□바코드리더기 □화면확대 S/W	□광학문자판독기 □흰지팡이
		청각장애	□보청기 □문자송수신전화기 □기타()	□인공와우 □음성증폭기	□골전도헤드폰 □시각 및 진동 신호기		
		기타	□기타()				
병력(수술, 만성질환 등)	○무 ○유						
	질환명		완치유무		치료상황		
			○완치 ○미완치 ○모름				
의사소통	□가능(□구어 □수어 □필담) □부분적으로 가능(□구어 □수어 □필담 □몸짓) □불가능						
근력	우상지) □정상 □약화 □완전마비 □모름(평가 불가능)						
	좌상지) □정상 □약화 □완전마비 □모름(평가 불가능)						
	우하지) □정상 □약화 □완전마비 □모름(평가 불가능)						
	좌하지) □정상 □약화 □완전마비 □모름(평가 불가능)						

관절구축	상지)	☐ 어깨(좌, 우) ☐ 정상	☐ 팔꿈치(좌, 우) ☐ 모름	☐ 손(좌, 우)
	하지)	☐ 고관절(좌, 우) ☐ 정상	☐ 무릎(좌, 우) ☐ 모름(평가 불가능)	☐ 발목(좌, 우)
연하장애	☐ 있음(식이: ☐ 연하곤란식 ☐ 경관영양 ☐ 정맥영양) ☐ 없음 ☐ 모름(평가 불가능)			
언어장애	☐ 해당없음 ☐ 실어증 ☐ 조음장애			
영양상태	☐ 양호 ☐ 불량 : 이유)			
호흡상태	☐ 정상 ☐ 기침 ☐ 잡은 상기도 감염 ☐ 호흡곤란 ☐ 기타:			
	☐ 기관절개관 ☐ 인공호흡기 사용(사유: 기관절개관 사용, 수면유도 무호흡)			
배뇨	상태	☐ 이상없음 ☐ 배뇨곤란(참지못함, 잦은배뇨, 느낌없음) ☐ 기타()		
	방법	☐ 자연배뇨 ☐ 기저귀, 기스모 ☐ 도뇨관(간헐적, 지속적) ☐ 기타()		
배변	상태	☐ 이상없음 ☐ 변비(회 / 일) ☐ 설사 ☐ 실변(배변느낌 유 무) ☐ 기타		
	방법			
피부 위생	☐ 양호 ☐ 불량 ☐ 욕창(부위 : 상태 : 예: 소독중, 병원통원)			
통증	☐ 유(부위: 강도: (0 1 2 3 4 5 6 7 8 9 10) ☐ 무			
운동기능	☐ 와상상태(거동불능) ☐ 침대에서 옆으로 누울 수 있음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음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기대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음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앉은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음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가능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의존적 실내보행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독립적 실내보행 (☐ 보조기기 사용 ☐ 보조기기 미사용) ☐ 실외보행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계단 이동 가능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건강검진 (최근 2년)	검진 유무 ☐ 유(마지막 검진일:) ☐ 무 ☐ 모름			
	검진 내용 ☐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 암검진 ☐ 구강검진 ☐ 기타) ☐ 종합건강검진 ☐ 모름 ☐ 해당없음			
	유소견 : 유소견 관리 :			
	검진받지 못한 이유 ☐ 경제적인 이유 ☐ 병·의원 예약이 어려워 ☐ 이동이 불편해서 ☐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 장애 특성에 맞는 검사를 받기 어려워서 ☐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 기타 _____			
	검진희망 ☐ 유(검진 내용) ☐ 무			

주장애 및 질병 관리	장애(주 진단명)와 관련된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 ☐ 유 ☐ 무(1-1)		
	(1-1) 주장애와 질병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 필요여부 ☐ 유 ☐ 무		
	장애인건강주치의 필요여부 ☐ 유 ☐ 무		
정서	☐ 안정 ☐ 불안정(☐ 분노 ☐ 공격 ☐ 불안 ☐ 강박 ☐ 우울 ☐ 수면장애 ☐ 기타:()) ☐ 평가 불가능		
정신과 진단 및 치료 유무	진단유무	☐ 무 ☐ 유 () ☐ 모름	
	치료유무	☐ 무 ☐ 유 () ☐ 모름	
자살	☐ 자살생각(빈도: 시기:) ☐ 자살시도(시기:) ☐ 생각, 시도 경험 없음 ☐ 평가 불가능		
육구 재점검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질병(장애), 건강 관련 추가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i>* 참고: 지적, 자폐성 장애의 경우 구토, 소화불량, 식도염, 잦은 복통 등 확인 필요</i> 2)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2. 건강관리의 장애물			
의료서비스가 필요할때 병의원 이용 여부	☐ 유 ☐ 무 병의원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 경제적인 이유 ☐ 병·의원 이용절차가 불편해서 ☐ 교통이 불편해서 ☐ 증상이 가벼워서 ☐ 의료기구 및 시설이 장애인에게 맞지 않아서 ☐ 시간이 없어서(직업, 가사 및 자녀돌봄으로 인해) ☐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 기타 _____		
	☐ 자가용 ☐ 장애인콜택시 ☐ 대중교통 ☐ 구급차 (☐ 119 ☐ 사설) ☐ 도보 ☐ 휠체어(수동, 자동) ☐ 기타		
외출시 주 이동방법	이동시 어려운 점:		
응급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	☐ 어려움이 없다 ☐ 도움 요청할 지원체계가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 도움을 요청할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 한다 도움처 : _____		

주거개조의 필요성	주택개조의 필요성					
	공간	개조 필요 유무		개조가 필요한 내용		
	주거 진입	☐ 무	☐ 유			
	현관	☐ 무	☐ 유			
	거실	☐ 무	☐ 유			
	방 1	☐ 무	☐ 유			
	방 2	☐ 무	☐ 유			
	욕실	☐ 무	☐ 유			
	화장실	☐ 무	☐ 유			
	주방	☐ 무	☐ 유			
	기타	☐ 무	☐ 유			
민간의료보험	☐ 유 ☐ 무 ☐ 모름					
주소득원	☐ 근로소득 : ☐ 정부보조금 : ☐ 가족지원 : ☐ 후원 등 기타 : ☐ 모름					
재산	☐ 주택 : ☐ 자동차 : ☐ 금융 : ☐ 부채 : ☐ 기타 : ☐ 모름					
육구 재점검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는 추가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3. 자기 건강관리 역량강화 필요성						
기초 일상생활	영역	수행능력				
		불가능	많은 도움 필요	중간정도 도움필요	경미한 도움 필요	독립적 가능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입기						
약물복용 관리	☐ 해당없음					
	☐ 약복용중(약물명:)		☐ 잘함 ☐ 보통 ☐ 못함(구체적:)			
	☐ 약물명 모름					

구강관리	치아상태	저작기능 의치유무	☐ 가능 ☐ 무	☐ 불완전 ☐ 유(☐ 완전틀니 ☐ 부분틀니)	☐ 불가능
	구강관리	☐ 잘함 ☐ 보통 ☐ 못함(구체적:) 기타 특이사항:			
흡연 (최근 1년)	☐ 매일 피움 ☐ 가끔피움 ☐ 피우지 않음 ☐ 기타				
음주 (최근 1년)	1 회음주량	☐ 1~2 잔 ☐ 3~4 잔 ☐ 5~6 잔 ☐ 7~9 잔 ☐ 10 잔 이상			
	음주횟수	☐ 월 1 회미만 ☐ 월 1 회 ☐ 월 2~4 회 ☐ 주 2~3 회 ☐ 주 4 회 이상			
낙상 (최근 1년)	☐ 경험 없음 ☐ 경험 있음() ☐ 모름				
의료결정능력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결정 능력 ☐ 능력있음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결정능력이 전혀 없음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돕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유(구체적으로:) ☐ 무				
자기건강관리 능력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음 ☐ 타인의 도움이 조금 필요함 ☐ 타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함				
	돌봄자, 외부 자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능력 ☐ 매우잘함 ☐ 잘함 ☐ 보통 ☐ 어려움 ☐ 매우어려움				
	병식과 장애수용 ☐ 병식 있고 장애수용이 되었음 ☐ 병식 부족하거나 없고 장애수용에 어려움 있음 ☐ 평가불가능				
육구 재점검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건강관리 관련 추가적인 자원 또는 지원체계가 있으신가요? 3)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4. 주돌봄자와 자원의 반응역량 강화 필요성					
가족관계	나이	동거	경제활동	건강/장애	당사자와의 관계, 지지정도
.	.	.	.	.	.
.	.	.	.	.	.
.	.	.	.	.	.

주 돌봄자 돌봄수행정도	주돌봄자 1		주돌봄자 2																																	
	시간: ☐ 충분 ☐ 보통 ☐ 불충분		시간: ☐ 충분 ☐ 보통 ☐ 불충분																																	
	지식: ☐ 충분 ☐ 보통 ☐ 불충분		지식: ☐ 충분 ☐ 보통 ☐ 불충분																																	
	의지: ☐ 충분 ☐ 보통 ☐ 불충분		의지: ☐ 충분 ☐ 보통 ☐ 불충분																																	
	건강: ☐ 건강 ☐ 보통 ☐ 건강안 좋음		건강: ☐ 건강 ☐ 보통 ☐ 건강안 좋음																																	
비공식적 자원	☐ 친인척 : ☐ 이웃: ☐ 종교: ☐ 친구: ☐ 기타: ☐ 없음																																			
이용 중인 지역사회 자원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포함)	기관명:	내용:																																	
	복지기관	기관명:	내용:																																	
	공공기관	기관명:	내용:																																	
	기타	기관명:	내용:																																	
욕구 재점검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건강관리 관련 돌봄자나 가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5. 기타 복지 지원의 필요성																																				
1) 가족내 안전, 교육, 고용, 권익보장 등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이외 복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 아니오 ☐ 예()																																				
<참 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복지 영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안전</td> <td>가족내 안전유지</td> </tr> <tr> <td>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td> </tr> <tr> <td rowspan="2">건강</td> <td>신체적 건강유지</td> </tr> <tr> <td>정신적 건강유지</td> </tr> <tr> <td rowspan="2">일상생활</td> <td>의식주관련 일상생활유지</td> </tr> <tr> <td>여가생활활용</td> </tr> <tr> <td rowspan="2">가족관계</td> <td>관계형성</td> </tr> <tr> <td>가족돌봄</td> </tr> <tr> <td rowspan="2">사회적 관계</td> <td>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td> </tr> <tr> <td>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td> </tr> <tr> <td rowspan="2">경제</td> <td>기초생활해결</td> </tr> <tr> <td>자산관리</td> </tr> <tr> <td rowspan="2">교육</td> <td>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td> </tr> <tr> <td>교육환경개선</td> </tr> <tr> <td rowspan="2">고용</td> <td>취(창)업</td> </tr> <tr> <td>고용유지</td> </tr> <tr> <td rowspan="2">생활환경</td> <td>주거내부환경개선</td> </tr> <tr> <td>주거외부환경개선</td> </tr> <tr> <td rowspan="2">권익보장</td> <td>법률적 지원</td> </tr> <tr> <td>권익보장</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복지 영역	안전	가족내 안전유지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일상생활	의식주관련 일상생활유지	여가생활활용	가족관계	관계형성	가족돌봄	사회적 관계	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경제	기초생활해결	자산관리	교육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교육환경개선	고용	취(창)업	고용유지	생활환경	주거내부환경개선	주거외부환경개선	권익보장	법률적 지원	권익보장
구분	세부복지 영역																																			
안전	가족내 안전유지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일상생활	의식주관련 일상생활유지																																			
	여가생활활용																																			
가족관계	관계형성																																			
	가족돌봄																																			
사회적 관계	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경제	기초생활해결																																			
	자산관리																																			
교육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교육환경개선																																			
고용	취(창)업																																			
	고용유지																																			
생활환경	주거내부환경개선																																			
	주거외부환경개선																																			
권익보장	법률적 지원																																			
	권익보장																																			

첨부자료(링크형태)			
타기관 제공 서류	☐ 의뢰서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서류		
	☐		
추가 평가자료	☐ WHODAS II	점수:	
	☐ 삶의 질(EQ-5D)	점수:	
	☐ 가옥구조평가지		
	☐ 우울	점수:	
	☐ MMSE	점수:	
	☐ 알코올중독 평가지	점수:	
	☐ MBI	점수:	
	☐ MORSE	점수:	
	☐		

사정 종합 결과표		
영역	욕구 (건강보건관리 어려움)	우선순위
1. 진단 및 치료 자원의 접근 (건강관리 필요성)		
2. 건강관리와 유지 환경조성 (건강관리 장애물)		
3. 자기 건강관리 역량강화		
4. 주돌봄자와 자원의 반응역량 강화		
5. 기타 복지지원의 욕구		
강점, 자원		
한계점		
종합의견		
대상자 선정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미선정 (사유: ☐ 타기관 의뢰 ☐ 대상자 거부(미동의 대상자) ☐ 일반건강보건관리대상자)	

작성안내

항목	작성방법
사례관리번호	시스템 자동 생성
대상자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무	· 시스템 자동 연동되어 기록됨
평가일시	· 평가를 실시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 · 재사정을 한 경우에는 재사정 평가 일시를 기록
평가자명	· 평가를 실시한 담당자 이름을 작성 · 평가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주사례관리자를 앞에 작성하고, 나머지 평가자 모두를 작성 · 표기방법) 김00/이00, 박00
주면접자	· 면담을 한 대상자를 작성 · 표기방법) 예) 모, 장애인활동지원사
평가방법	· 평가방법 형태를 체크
의뢰기관명	· 접수경로에서 자동 연동 됨
의뢰자명	· 의뢰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작성
의뢰자 연락처	· 의뢰한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작성
1. 건강관리(진단, 치료, 재활, 간호 등)의 필요성	
발병시기	· 주 진단명 발병시기 작성 ·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참조
주 진단명	· 주 진단명에 체크 ·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참조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으로 기록
사용중인 보조기기	· 사용중인 보조기기 유무를 체크하고, '유'로 체크한 경우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모두 체크 · (필요시)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참고
병력	· 대상자의 과거 수술력, 만성질환, 기타 질환을 기록 (주진단명, 동반장애에 체크했던 건 제외하고 기록) · 질환명에 따른 현재 완치유무와 현재의 치료상황을 서술 · 완치유무 : 완치, 미완치, 모름으로 기록 · 치료상황 : 예) 주 2회 물리치료, 약 복용 중, 월 1회 항암치료 등 · 모름때나 해당없을때는 질환명에 '모름', '해당없음'이라고 기록
의사소통	·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체크하고 가능한 경우 표현방법도 체크

항목	작성방법														
근력	- 대상자의 근력상태를 좌우 상지, 좌우 하지로 구분하여 체크 - 용어 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어</th><th>설명</th></tr> </thead> <tbody> <tr> <td>정상</td><td>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근력 상태</td></tr> <tr> <td>악화</td><td>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근력 상태</td></tr> <tr> <td>완전마비</td><td>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td></tr> </tbody> </table>	용어	설명	정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근력 상태	악화	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근력 상태	완전마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용어	설명														
정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근력 상태														
악화	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근력 상태														
완전마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관절구축	- 관절구축은 관절 주위의 연부조직, 인대, 근육, 관절 부분의 제한으로 관절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된 경우를 의미함 - 상하지 신체 부위별 관절구축이 있는 부위를 체크(중복체크 가능) - 관절구축이 정상일때는 '정상'에 체크 - 피면접자도 모르고, 평가자도 평가하기 어렵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연하장애	- 연하장애란 음식물 삼킴기능과 관련된 신경, 근육의 기능적 이상으로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사래 걸리는) 상황임 - 연하장애 유무를 체크 -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름에 체크														
언어장애	- 의사소통 상태를 체크 - 용어 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어</th><th>설명</th></tr> </thead> <tbody> <tr> <td>실어증</td><td>뇌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이해 및 표현능력이 상실된 경우</td></tr> <tr> <td>조음장애</td><td>단어를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td></tr> </tbody> </table>	용어	설명	실어증	뇌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이해 및 표현능력이 상실된 경우	조음장애	단어를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용어	설명														
실어증	뇌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이해 및 표현능력이 상실된 경우														
조음장애	단어를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영양상태	- 영양상태를 체크 - 불량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영양불량의 이유를 기록 예) 저작능력이나 연하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음식 섭취 제한 돌봄자의 지원 부족으로 다양한 영양음식 섭취 제한 등														
호흡상태	- 호흡상태를 체크(중복체크 가능) - 용어 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어</th><th>설명</th></tr> </thead> <tbody> <tr> <td>정상</td><td>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td></tr> <tr> <td>기침</td><td>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기침으로, 예를 들어 수면이나 식사에 방해를 주는 경우</td></tr> <tr> <td>잦은 상기도 감염</td><td>반복적인 감기나 폐렴 등을 겪는 경우</td></tr> <tr> <td>호흡곤란</td><td>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이 어려운 경우</td></tr> <tr> <td>인공호흡기 사용</td><td>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공호흡기의 자가소유, 대여, 국가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 있음</td></tr> <tr> <td>기타</td><td>그 외 의미있는 호흡 상태에 대해 기술, 예 : 무호흡, 과호흡 등</td></tr> </tbody> </table>	용어	설명	정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기침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기침으로, 예를 들어 수면이나 식사에 방해를 주는 경우	잦은 상기도 감염	반복적인 감기나 폐렴 등을 겪는 경우	호흡곤란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이 어려운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공호흡기의 자가소유, 대여, 국가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 있음	기타	그 외 의미있는 호흡 상태에 대해 기술, 예 : 무호흡, 과호흡 등
용어	설명														
정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기침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기침으로, 예를 들어 수면이나 식사에 방해를 주는 경우														
잦은 상기도 감염	반복적인 감기나 폐렴 등을 겪는 경우														
호흡곤란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이 어려운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공호흡기의 자가소유, 대여, 국가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 있음														
기타	그 외 의미있는 호흡 상태에 대해 기술, 예 : 무호흡, 과호흡 등														

항목		작성방법										
배뇨		· 배뇨상태를 체크 · 용어 설명										
		<table><tr><th>용어</th><th>설명</th></tr><tr><td>자연배뇨</td><td>수의적으로 배뇨하는 경우</td></tr><tr><td>기저귀, 기스모</td><td>자연배뇨 능력과 무관하게 기저귀나 기스모를 착용하는 경우</td></tr><tr><td>유치도뇨관</td><td>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td></tr><tr><td>기타</td><td>그 외 의미있는 배뇨 상태에 대해 기술</td></tr></table>	용어	설명	자연배뇨	수의적으로 배뇨하는 경우	기저귀, 기스모	자연배뇨 능력과 무관하게 기저귀나 기스모를 착용하는 경우	유치도뇨관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	그 외 의미있는 배뇨 상태에 대해 기술
	용어	설명										
	자연배뇨	수의적으로 배뇨하는 경우										
	기저귀, 기스모	자연배뇨 능력과 무관하게 기저귀나 기스모를 착용하는 경우										
유치도뇨관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	그 외 의미있는 배뇨 상태에 대해 기술											
배변		· 배변상태를 체크										
피부위생		· 피부상태를 체크 · 욕창이 있는 경우에는 욕창부위와 욕창 상태(피부발적, 수포, 피부궤양 등)를 기록										
통증		· 통증 유무를 체크 ·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부위와 통증 강도를 작성하며, 통증 강도는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강도로 통증이 없는 경우를 0, 지금까지 겪어 본 가장 큰 통증을 10으로 하여, 현재 상태를 물어서 표기함										
운동기능		· 운동능력을 체크 · 인터뷰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관찰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용어 설명										
		<table><tr><th>용어</th><th>설명</th></tr><tr><td>독립적</td><td>보조기 사용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경우</td></tr><tr><td>보조기기 사용</td><td>보조기 사용시 가능한 경우</td></tr><tr><td>도움</td><td>타인의 도움하에 가능한 경우</td></tr></table>	용어	설명	독립적	보조기 사용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경우	보조기기 사용	보조기 사용시 가능한 경우	도움	타인의 도움하에 가능한 경우		
	용어	설명										
	독립적	보조기 사용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경우										
보조기기 사용	보조기 사용시 가능한 경우											
도움	타인의 도움하에 가능한 경우											
건강 검진	유무	·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수검하기 때문에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함 · 건강검진 여부에 체크 ·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건강검진일을 기록 · 건강검진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모름'에 체크										
	내용	· 받은 건강검진 항목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 국가건강검진인지 그 이외의 종합건강검진인지 체크 · 건강검진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모름'에 체크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										
	유소견	· 검진을 받은 경우에, 유소견이 있었다면 유소견 내용을 기술 예) 고혈압 진단 · 유소견을 관리 받았는지, 현재 받고 있는지 기술 예) 고혈압 약 복용 중, 저염식 식이 중										

항목		작성방법	
	받지 못한 이유	·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검진희망	· 추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원하는지 유무에 체크 · 수검을 희망할 때, 희망하는 검진 항목 기술 예) 일반건강검진, 위암검진	
주장애 및 질병 관리	진료 여부	· 주장애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지 유무 체크	
	진료 필요	· 현재 진료를 받고 있지 않다면, 정기적 진료를 필요로 하는지 유무 체크	
	주치의 필요	· 장애인건강주치의 연계 원하는지 유무에 체크	
정서		· 현재 관련있는 정서 상태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 안정 상태인지 불안정 상태인지를 체크하고, 불안정 상태인 경우에는 세부 상태를 체크 · 용어 설명	

항목		작성방법
		· 자살생각을 한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언제쯤 했는지를 기록 · 자살시도를 했던 시기를 기록, 여러번일때는 최근 1~2개를 기록
욕구 재점검	1) 건강 관련 추가적 으로 불편한 부분	· 질병(또는 장애)관리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추가적으로 재점검하는 질문 · 진단, 검사 : 질병(또는 장애)와 관련하여 검사 및 진단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 입원, 치료 : 질병(또는 장애)관리를 위한 입원이나 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 의료상담 : 질병(또는 장애) 관리를 위한 의료적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 방문의료 : 물리적 환경의 제약과 심한 신체적 제약으로 병원의 접근이 어려워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의 방문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 재활치료 : 장애와 관련하여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2)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	·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해결우선순위 욕구를 파악 예) 보건소에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깨 통증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2. 건강관리의 장애물		
병의원 이용 여부		·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할때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
외출시 이동 방법		·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보건소 방문, 재활체육시설 등을 방문 시 이동방법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응급상황시 도움요청		·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체크 · 도움처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서술 예) 00교회 목사, 요양보호사, 가족 등
주거 환경	개조 유무	· 낙상 예방, 의료접근성 향상, 독립적 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을 개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체크 · 공간별 개조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
	필요 내용	· 개조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현관 : 휠체어 진입을 위해 경사로 설치 욕실 :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및 핸드레일 설치 · 기타 : 조명의 적절성 파악하여 낙상의 위험 방지 필요
민간의료보험		·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비보험) 유무 체크 · 의료비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아도 됨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항목		작성방법
주소득원		·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 ·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정 내 소득내용을 작성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재산		·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육구 재점검	1)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부분	· 기타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기록 (예) 주거환경 개선을 했을 때,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 이동지원이 필요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살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
	2)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	·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해결우선순위 육구를 파악 예) 외출할 때 누군가 동행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3. 자기 건강관리 역량강화 필요성		
기초일상생활		·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수행능력을 체크
약물복용관리		· 복용 중인 약물 명을 기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처방전이나 약봉투의 약물정보를 기재 · 대상자가 약물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를때는 모름에 체크 ·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없음에 체크 · 약물복용하거나 약물관리를 잘 하는지를 체크 · 약물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못하는 상황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여러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중복예상되는 약물이 있음 약이 정리되지 않아 복용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구강관리		· 구강 위생관리를 정도를 체크 · 위생관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못하는 상황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근력 등의 기능상의 문제로 입을 벌리는게 어려워 양치가 어려움. 욕실까지 이동이 어렵고 돌봄자의 적극적인 케어가 부족 · 기타 특이사항 : 구강상태에 대한 기타 정보를 기재 예) 전체 틀니, 부분 틀니, 충치로 인한 통증
흡연 (최근 1년)		· 최근 1년 동안 흡연 경험을 체크
음주 (최근 1년)		· 최근 1년 동안 음주 경험과 1회 음주량, 음주 횟수를 체크

항목		작성방법
낙상		· 최근 1년동안 낙상 경험 유무에 체크 · 낙상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 6개월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둔부 타박상, 손목 골절 발생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의료 결정 능력	결정 능력	·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체크
	결정 지원자	·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체크 · 결정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어머니, 장애인복지관 담당사회복지사
자기 건강 관리 능력	관리 능력	·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체크
	소통 능력	· 건강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가족, 돌봄자, 외부자원들(사례관리자, 의료종사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체크
	병식과 장애 수용	· 병식은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관리방법을 아는 능력을 의미 · 자신의 질병에 대한 병식 유무에 체크 · 대상자가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의 문제로 병식을 체크할 수 없을때에는 '평가불가능'에 체크 · 자신의 질병과 장애에 대한 심리적 수용정도를 파악
욕구 재점검	1) 건강 관리를 하기위해 추가적으로 불편한 부분	·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기록 예) 건강관리를 해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혼자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의 제한
	2) 추가적인 자원 또는 지원체계	· 건강관리 관련 추가적인 자원 또는 지원체계가 있는지 기록
	3) 우선적으로 해결 되기를 바라는 점	·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해결우선순위 욕구를 파악 예) 치통이 있지만 도움을 청할 때가 없어 참고 견디고 있음
4. 주돌봄자와 자원의 반응역량 강화 필요성		
가족 정보		·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기록. 단,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대상자에게 의미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기록

항목		작성방법														
		· 하위영역에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울 때는 '모름'으로 기록 · 기록 방법 <table><tr><th>용어</th><th>방법</th></tr><tr><td>가족관계</td><td>예) 부, 모, 아들, 딸, 손자</td></tr><tr><td>나이</td><td>예) 80세</td></tr><tr><td>동거</td><td>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td></tr><tr><td>경제활동</td><td>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td></tr><tr><td>건강/장애</td><td>건강할때는 건강으로 기록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때는 주요 질병명이나 장애유형을 기록</td></tr><tr><td>관계/지지 정도</td><td>지지적(원만)/소원(무관심, 연락안됨)/갈등/기타</td></tr></table>	용어	방법	가족관계	예) 부, 모, 아들, 딸, 손자	나이	예) 80세	동거	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	경제활동	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	건강/장애	건강할때는 건강으로 기록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때는 주요 질병명이나 장애유형을 기록	관계/지지 정도	지지적(원만)/소원(무관심, 연락안됨)/갈등/기타
용어	방법															
가족관계	예) 부, 모, 아들, 딸, 손자															
나이	예) 80세															
동거	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															
경제활동	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															
건강/장애	건강할때는 건강으로 기록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때는 주요 질병명이나 장애유형을 기록															
관계/지지 정도	지지적(원만)/소원(무관심, 연락안됨)/갈등/기타															
돌봄수행정도		· 주돌봄자가 2명 이상일때는 각각 작성 · 주돌봄자 1 : 예)아들, 주돌봄자 2 : 예)장애인활동지원사 · 용어 설명 <table><tr><th>용어</th><th>설명</th></tr><tr><td>시간</td><td>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td></tr><tr><td>지식</td><td>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필요한 돌봄지식(질병이해, 건강관리방법, 돌봄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td></tr><tr><td>의지</td><td>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고자하는 의지 정도에 대한 질문</td></tr><tr><td>건강</td><td>주돌봄자의 건강문제가 대상자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주돌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td></tr></table>	용어	설명	시간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지식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필요한 돌봄지식(질병이해, 건강관리방법, 돌봄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의지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고자하는 의지 정도에 대한 질문	건강	주돌봄자의 건강문제가 대상자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주돌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				
용어	설명															
시간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지식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필요한 돌봄지식(질병이해, 건강관리방법, 돌봄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의지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고자하는 의지 정도에 대한 질문															
건강	주돌봄자의 건강문제가 대상자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주돌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															
비공식적 자원		· 대상자에게 지원(도움)을 주고 있는 친인척, 이웃, 종교, 친구, 기타 등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 기타에는 구체적으로 기술 · 비공식 자원이 없을 때에는 '없음'에 체크														
이용 중인 지역사회자원		·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중인 지역사회자원을 기관 유형별로 기술 · 이용중인 기관명과 지원받고 있는 지원 내용을 기술 · 이용중인 지역사회자원이 없을 때에는 '없음'이라고 기록														
욕구 재점검	1) 건강관리를 하기위해 추가적으로 불편한 부분	· 건강관리 관련 돌봄자나 가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														
	2)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	·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해결우선순위 욕구를 파악														

항목		작성방법
5. 기타 복지 지원의 필요성		
기타 복지지원의 필요성		· 가족 내 안전, 교육, 고용, 권익보장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한 경우에 체크 예) 고용(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파악되어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할 때 직업재활-직업훈련 및 취업
사정 종합 결과표		
욕구	1. 진단 및 치료 자원의 접근	· 건강관리에 있어 진단 및 치료 필요도와 요구도에 대한 사정 · 진단 및 치료 필요(욕구)가 있을 경우, 건강관리에 있어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의료 기관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물리적 제한의 문제로 인한 방문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도와 요구도가 있는 경우 등 사정 · 진단, 치료, 재활, 간호 등을 제외한 기타 건강관리의 필요도가 있는 경우 사정
	2. 건강 관리와 유지 환경 조성	· 건강관리의 장애물로 주거 및 안전 상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여가/문화 활동 참여 등 지원필요도와 요구도, 참여에 장애물이 있는지 사정 · 기타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요구도와 이에 대한 참여에 장애물이 있는지 사정
	3.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	· 건강관리를 위한 자원에 대한 정보(예: 장애건강주치의, 장애친화건강검진,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 방문재활 등)와 자원 활용하는 능력, 건강관리를 위한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능력, 병식, 건강관련하여 의사결정능력 등을 사정 등을 사정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필요도와 요구도에 대한 사정 ·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사정
	4. 주돌봄 자와 자원의 반영 강화	· 건강관리를 위한 주돌봄자의 돌봄수행역량도, 돌봄수행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필요도와 요구도에 대한 사정 · 건강관리를 위한 주돌봄자의 돌봄 제공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와 수용의 정도를 사정 · 주돌봄자와 지역사회 자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사정
	5. 기타 복지 욕구	·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위에 기술한 욕구 이외의 복지욕구 사정 · 추가로 복지 필요(욕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하는데의 필요한 내용 기록
강점, 자원		· 건강관리에 있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기술 예) 건강관리 동기, 건강관리 성공 경험, 건강관리 지지체계 등 예) 예전에 다니던 재활병원의 치료사와의 관계가 좋음 10년 이상 이용하던 복지관이어서 시설구조를 잘 알고 있어 혼자 방문하여도 이용가능함

항목	작성방법
한계점	· 건강관리에 있어 장애물(한계점)을 기술 예) 건강관리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낮은 동기 등 예) 지역 내 자원의 고갈, 지원체계의 소극적 태도 등 예)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이 2시간을 제한되어 있어 병원 진료시 장시간 머물 경우 대처가 어려움 예) 재활치료 중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며 재활 치료를 거부함.
우선순위	·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 변화되길 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기록 · 우선순위는 대상자, 돌봄자, 의뢰자, 사례관리자와 합의된 우선순위를 하되, 대상자가 원하는 우선순위와 건강권과 직결된 욕구를 우선으로 함 · 기록방식 : 1, 2....
종합의견	· 욕구사정을 하계된 근거를 제시 · 사정이 미진하거나 더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을 첨언 · 향후 사례관리 방향이나 지원 방법 등을 제시 · 사정 과정에서 알게된 대상자의 특이점 및 진행과정에서의 유의점을 기술
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욕구 및 강점, 자원,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체크

〈서식 12〉 경과기록지

경과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일자		담당자	
상담 방법	○ 내소 ○ 방문 ○ 전화 ○ 온라인 ○ 기타()		
상담 대상자유형	□ 대상자 □ 보호자 □ 기관 담당자 □ 기타()		
상담 대상자			
내 용			

〈서식 13〉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계획 동의서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계획 동의서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계획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 예정일 _____, 서비스 종결 예정일 _____		
서비스 제공계획	우선 순위	영역	계획
	종합평가 결과표 자동연계	종합평가 결과표 자동연계	
비고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상기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사례관리 계획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더 나은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들과 본인 및 가족의 기초정보 및 서비스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년 월 일 가족(돌봄자): (서명) 관계:
 년 월 일 사 례 관 리 자: (서명)

〈서식 14〉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서비스 제공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공방법
☐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장애인건강 보건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만성질환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운동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영양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구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정신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건소 CBR지원	☐ 사업 역량강화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자원연계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교육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정보제공서비스	☐ 리플릿, 책자제공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사업안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기관안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편의제공서비스	☐ 이동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동행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서비스 예약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돌봄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주거지원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 재활의료서비스	□ 성인재활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소아청소년재활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재활교육 및 훈련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조기기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 사후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애인건강주치의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서비스	□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 보건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복지서비스 등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동행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건 및 건강상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여성장애인건강관리 교실	□ 임신출산 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서비스명 : _____	□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세부서비스 계획			

〈서식 15〉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서비스 제공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공일자	제공방법	제공자	종료
☐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					☐
☐ 장애인건강 보건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만성질환관리				☐
		☐ 운동관리				☐
		☐ 영양관리				☐
		☐ 구강관리				☐
		☐ 정신건강관리				☐
		☐ 기타 _____				☐
	☐ 보건소 CBR지원	☐ 사업 역량강화				☐
		☐ 자원연계지원				☐
		☐ 교육지원				☐
		☐ 기타 _____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정보제공서비스	☐ 리플릿, 책자제공				☐
		☐ 사업안내				☐
		☐ 기관안내				☐
		☐ 기타 _____				☐
	☐ 편의제공서비스	☐ 이동지원				☐
		☐ 동행서비스				☐
		☐ 의료서비스 예약				☐
		☐ 돌봄서비스				☐
		☐ 주거지원서비스				☐
☐ 기타 _____					☐	
☐ 기타 _____	☐ _____				☐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 재활의료서비스	□ 성인재활의료서비스				□
		□ 소아청소년재활의료서비스				□
		□ 재활교육 및 훈련				□
		□ 보조기기				□
		□ 기타 _____				□
	□ 건강검진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 건강검진 사후건강관리				□
	□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애인건강주치의서비스				□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 기타 _____	□ _____				□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서비스	□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 보건서비스				□
		□ 의료서비스				□
		□ 복지서비스 등				□
		□ 의료동행서비스				□
		□ 보건 및 건강상담				□
		□ 기타 _____				□
	□ 여성장애인건강관리 교실	□ 임신출산 건강관리				□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 기타 _____				□
	□ 기타 _____	□ _____				□
□ 기타 _____	□ _____ 서비스명 : _____	□ _____				□
세부서비스 계획						

〈서식 16〉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일시				장소			
방법	☐ 대면(☐ 내소 ☐ 가정방문 ☐ 기타____) ☐ 비대면(☐ 유선 ☐ 온라인 ☐ 기타____)						
협력기관	기관명		부서명 (진료과)				
	성명/직위	/	연락처/이메일				
대상자 욕구 및 목적							
제공 내용							
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필요시 추가 작성]							
미등록 참석자	☐ 가족 ☐ 활동지원사 ☐ 기관 관계자 ☐ 기타			미등록 참석인원	명		
강사정보	기관명		부서명				
	성명/직위	/	연락처/이메일				
	교육자료	☐ 자료명 ☐ 자료명	☐ 자료형태 ☐ 자료형태	☐ 업로드 ☐ 업로드			

〈서식 17〉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 점검 결과	영역	계획	서비스명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제공 기관	점검 일자	점검 방법	이행 여부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담당자
비 고												

〈서식 18〉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종결지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종결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단기목표	
장기목표	
향후계획	
대상자변화(성과)	
종결유형	○ 장기목표 달성 ○ 단기목표 달성 ○ 이관 ○ 상황호전() ○ 연락두절 ○ 이사 또는 사망 ○ 자체종결 ○ 거절이나 포기()
비 고	

〈서식 1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기록지

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작성일자		
상담방법	☐ 내소(내원) ☐ 가정방문 ☐ 전화 ☐ 온라인 ☐ 기타()	
대상자 주요구 확인	기존 욕구	
	현재 욕구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후 검토의견		
비고		

작성안내

항목	작성방법
ID	처음 등록시 부여된 일련번호(시·도, 시·군·구, 연번)
점검일자	매 점검시 점검일자를 기록
점검자 서명	점검한 담당자 서명을 작성
주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주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를 기록(시스템 등록시 자동 연계)
상담방법	대상자와 상담 방법(내소(내원), 방문, 전화 등) 기록
대상자 욕구 확인	사례관리 대상자의 기존 욕구를 작성하고 현재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
모니터링 내용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작성
모니터링 후 검토의견	모니터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의견 작성

〈서식 20-1〉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의뢰일자			의뢰하는기관			의뢰자명			전화번호		
의뢰 받는 기관	형태	☐ 보건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케어안내창구 ☐ 복지기관 ¹⁾ ☐ 상급종합병원 ☐ 기타 의료기관 ☐ 장애인건강주치의 ☐ 기타 ²⁾									
	기관명										
	주소	시(도)		구(군)		동(면) 까지만 기재					
기본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전화 번호	환자				보호자					
	행정 주소지										
	퇴원 후 거주지 (실거주지)										
장애 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 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장기요양등급		☐ 해당없음 ☐ 신청 (☐ 신청예정 ☐ 진행 중 ☐ 완료 : 등급) ☐ 기 등급자 : 등급 ☐ 추후 재 의뢰									
가구 및 돌봄	돌봄제공자	☐ 본인 ☐ 가족(관계:) ☐ 유급 간병인 ☐ 요양보호사 ☐ 기타(관계:)									
	가구형태	☐ 1 인가구 ☐ 부부가구 ☐ 자녀동거 ☐ 기타()									
건강 수준	진단명					발병일	년 월 일				
	만성질환	☐ 없음 ☐ 당뇨 ☐ 고혈압 ☐ 기타 ()									
	인 지 (MMSE)	() / 30점									
	통 증	☐ 없음 ☐ 있음(부위:) ☐ 간헐적 ☐ 지속적									
	피 부	☐ 양호 ☐ 불량 ☐ 욕창(부위: 단계:)									
	보행능력	☐ 완전자립 ☐ 도움필요 ☐ 걷지 못함									
	보조기구	☐ 도보 ☐ 지팡이 ☐ 보행기 ☐ 휠체어 ☐ 기타()									
	화장실 사용하기	☐ 화장실 (☐ 완전독립 ☐ 도움필요) ☐ 기저귀 ☐ 이동식변기 ☐ 기타()									
	식사 하기	기능	☐ 완전독립 ☐ 도움필요 ☐ 행위 발생 안함								
연하 장애		☐ 없음 ☐ 있음									

대상자 요구사항		
보호자 요구사항		
희망 서비스 (중복 선택 가능)	☐ 조기적응프로그램	☐ 장애이해하기 ☐ 일상생활 동작관리 ☐ 장애별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 관절운동, 근력운동 ☐ 보행운동 ☐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 장애별 자조모임 ☐ 동료상담 ☐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소모임 등
	☐ 자원연계 서비스	☐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보건소 내 연계서비스 등(방문, 금연, 절주 비만 등)
	☐ 기타	
첨부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기능평가결과 ☐ 기타 ()	
상기인을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연계 계획에 동의합니다. 환자 성명_____ (서명:)		

- 1) 복지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관, 자활센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장애인스포트센터
 2) 기타 : 복지기관을 제외한 민간서비스단체 등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I

서식

〈서식 20-3〉 서비스 회송서

서비스 회송서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기본 사항	성명 /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전화번호	환자			보호자			
	행정 주소지							
장애 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목표 및 지원계획	■ 목표 - - ■ 지원계획 - -							
제공된 서비스								
경과 및 결과								
향후계획								
첨부파일								
상기인의 서비스 내용을 회송합니다.								
회송기관		담당자		연락처		회송일		

〈서식 21〉 교육 만족도 조사지(안)

0000.00.00(요일)

안녕하십니까? OO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입니다. 'OOOOOOOOOO교육' 참가자 여러분의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선과 보완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I.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3. 소속 기관	① 의료기관 ② 보건소 ③ 장애인 단체 ④ 장애인 복지관 ⑤ 기타 _____
4. 근무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3년 미만 ④ 3년~5년 미만 ⑤ 5년 이상

II. 본 교육에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1. 교육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강사는 교육내용을 쉽게 전달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강의방법은 교육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강의내용은 목표에 맞게 구성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현 직무와 본 교육이 관련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이 향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강의실, 교육 시설 등 제반 교육환경이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담당자는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운영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종합적으로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기타 교육에 대한 이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서식 22〉 교육 수요 조사지(안)

※ 교육 수요 조사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변경 가능

OO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의료인력 교육 수요조사

- 대상자 : 관련 기관 담당자 1인
- 설문응답방법 : 방문, 공문, E-mail 또는 우편 제출 등 지역의 사정에 따름.
- 설문관련 문의 : OO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 000 (000-000-0000)

본 조사는 OO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고자하는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수요에 대한 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I. 응답자 기본사항

※ 기본적 사항에 대한 조사 항목입니다.

1. 응답자의 기본사항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성함		직책	
이메일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II. 보건의료인력 교육에 대한 인지와 경험

※ 장애인 보건의료관련 교육에 대한 인지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1. 귀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 보건의료 및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력 교육”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 ② 사업에 대한 약간의 정보는 알고 있다.
- ③ 사업에 대한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 ④ 들어본 적이 없고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2. 장애인 보건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① 응답 : 3번 문항으로 이동. ② 응답 : 2-1번 문항으로 이동.

2-1. 교육받으신 프로그램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

III. 장애인 보건의료인력 교육에 대한 수요

※ 보건의료인력 교육에 대한 수요도 조사 항목입니다.

□ 지역보건의료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건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의료이용에 대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보건의료인력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귀하는 장애인 관련 “보건의료인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①~③ 응답 : 1-1번 문항으로 이동. ④~⑤ 응답 : 1-2번 문항으로 이동.

(1번 문항에서 ①~③에 답한 사람만 응해주시시오.)

1-1. “보건의료인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 ② 담당 업무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③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 ④ 다른 기관 소속 인력과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하여
- ⑤ 기타 ()

☞ 2번 문항으로 이동.

(1번 문항에서 ④~⑤에 답한 사람만 응해주시시오.)

1-2.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 ② 정형화된 교육보다 현장의 경험 또는 개인적 교류 등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 ③ 당장의 업무 처리 부담이 커서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할 여유가 없어서
- ④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 ⑤ 기타 ()

☞ 2번 문항으로 이동.

2. “보건의료인력교육”이 시행된다면 대상자는 누가 되었으면 합니까?

- ①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만
- ② 간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까지

3. “보건의료인력교육”의 대상자의 경력은 어느 정도가 되었으면 합니까?

- ① 경력 1년차 미만
- ② 경력 1~3년차
- ③ 경력 3~5년차
- ④ 경력 5년차 이상
- ⑤ 신규 입사자(무경력자)

4. “보건의료인력교육”에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교육내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중복응답가능)

- ① 장애·장애인 및 장애인 건강에 대한 일반적 이해
- ②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 ③ 장애인대상 진료일반
- ④ 장애인 건강검진
- ⑤ 여성장애인 진료
- ⑥ 기타()

5. “보건의료인력교육”의 교육 형태는 어떤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의만 진행
- ② 실습(응대 사례 등)만 진행
- ③ 강의와 실습을 병행

6. “보건의료인력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다음 중 어떤 기간입니까?

(※ 중복응답가능)

- ① 1~2월
- ② 3~4월
- ③ 5~6월
- ④ 11~12월

7. “장애인 보건의료인력 교육”이 시행된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장애인 보건의료인력 교육”에 참여시 문제점(장애요인 혹은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근무시간의 불규칙 ② 교육참여를 위한 이동의 불편함
③ 필요한 교육의 부재 ④ 교육 효과의 미흡
⑤ 기타 ()

□ 귀하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서식 23〉 자원봉사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성명		성별	☐ 남 ☐ 여
VMS 아이디		전화번호 (연락가능)	
전자우편	@	직업	
주소 (우편물 수령)	□□□□□ □직장 □주택 □기타()		

자원봉사 경험		☐ 있음 ☐ 없음	
봉사 활동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복 선택 가능)	
	시간	□오전(00~12시) □오후(12~18시) □저녁(18~24시) □상시가능	
	분야	□시설봉사	□생활지원 □교육지원 □정서지원 □사회활동지원 □여가선용 □취업지원 □업무보조 □시설정비 □각종행사보조 □기타()
		□재가봉사	□생활지원 □교육지원 □정서지원 □사회활동지원 □기타()
		□전문봉사	□전문상담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외국어지원 □기타()
		□지역사회봉사	□환경보호 □교통편의증진 및 교통환경개선 □예술, 문화향상 등 □생활체육, 스포츠이벤트 □시민운동 및 조직활동 □조사연구활동 □현장활동(농촌봉사, 재해복구현장지원 등) □민원안내 □사무지원 □기타()
□기타	□해외봉사 □기타()		

[개인정보 취급 동의 안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작성한 자원봉사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 기관의 자원봉사 운영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회복지봉사활동 관리시스템(www.vms.kr)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활용 가능

〈서식 24〉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구성일 : 년 월 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행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
			지역단체
			기타

회의록

구분	○ 정기회의 ○ 수시회의						
회의제목							
회의명							
일 시							
장 소							
참석자	위원구분	위원회직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회의내용	주요안건						
	내용						
	결정사항 및 추후계획						
	건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25〉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장

위 촉 장

기관명 :

성 명 :

귀하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 . . ~ . . .) 합니다.

년 월 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 ○ ○

〈서식 26〉 지역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지역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명 : 협의회
구성일자 : 년 월 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② 협의회명 : 협의회
구성일시 : 년 월 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③ 협의회명 : 협의회
구성일시 : 년 월 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④ 협의회명 : 협의회
구성일시 : 년 월 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회 의 록

구분	○ 정기회의 ○ 수시회의						
회의제목							
회의명							
일 시							
장 소							
참석자	위원구분	위원회직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회의내용	주요안건						
	내용						
	결정사항 및 추후계획						
	건의사항						
첨부파일							

회의관리

연번	회의 일시	회의 제목	참석자	회의록 등록	SMS발송

〈서식 27〉 업무협약서

업 무 협 약 서

()과 ()는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 사항을 신뢰와 성실을 다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과 ()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호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서 적극 협조한다.

제4조(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식 28〉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협력기관 관리 양식

분류 번호	기관명	대표자	홈페 이지	주소		담당자					협약 일자
				시·군·구	상세 주소	성명	전화 번호	휴대 전화	팩스	전자 우편	

분류번호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행 기관
2.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기관
3. 장애유형별 전문 진료기관
4. 장애인 재활의료 기관
5. 여성장애인 산전관리·분만기관
6.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기관
7. 장애인 복지관
8. 장애인 건강권 등 교육기관
9.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능 기관
10. 기타

비품관리대장

[illegible]

〈서식 30〉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국고보조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			
사업의 총 소요경비 (단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서약서 2.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자 ○○시·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31〉 서약서

서 약 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의 설립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지역보건의료센터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사업지침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20 . . .

서 약 자 : ○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서식 32〉 사업계획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서

I. 사업계획 요약

분야	단위사업	사업목적	세부사업내용

II. 사업계획

1. 22년도 업무성과
2. 문제점 및 한계
3.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1) 사업환경
 - 2) 사업 필요성

※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 제시

3) 사업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4)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목적	
	추진기간	
사 업 내 용		추진전략
가.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목적 ■ 추진내용 및 방법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추진일정
나.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목적 ■ 추진내용 및 방법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추진일정

Ⅲ. 조직 및 인력구성

1. 조직구성
2. 팀별 주요업무

Ⅳ. 성과목표

단위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	-
	-	-	-
	-	-	-
	-	-	-
	-	-	-

Ⅴ. 사업추진일정

Ⅵ. 사업예산(별도양식에 따라 엑셀파일로 제출)

〈서식 33〉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담당자	(연락처 :)			
사업기간	20 . . . ~ 20 . . .	총사업비	총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변경 내용 (세부내용 별지 첨부 가능)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34〉 사업실적보고서(상반기보고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실적보고서

I. 사업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행율(%)
○	○	○	
○	○	○	
○	○	○	

※ 세부추진계획(항목) 및 추진일정은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함.

※ 추진실적은 현재까지의 실적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종합진척률(%)은 전체계획에 대한 진행율을 종합 판단하여 기재함.

II. 세부 사업 진행현황

1. 기획 및 재활사업

○ 회의운영실적

구분	운영횟수	참여기관	참여인원	비고
지역장애인보건위원회 운영				운영방법 등
지역장애인 건강협의회	건강관리			
	재활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지역자원현황

구분	지역 내 현황(개)	비고
의료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건강 주치의수행 기관	
	여성장애인 산전관리, 분만기관	
	기타 의료기관	
	보건소 등 보건기관	
복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및 협회	
	기타(자립생활센터 등)	
교육기관		
체육시설		
기타(수어통역센터, 장애인콜택시 등)		

* 지역 내 현황에 맞춰 구분하여 작성

○ 장애인 등록 DB구축 실적

구분		장애인(명)		DB구축 장애인(명)								비고
		지역내 등록 장애인		지역내 등록장애인				장애 미등록 퇴원환자				
				신규등록		누적총		신규등록		누적 총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지체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뇌병변 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시각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청각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illegible]

안면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장루· 요루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뇌전증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정신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지적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자폐성 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 실적

장애유형	연령	임신여성장애인 등록(수)	
		출산 전	출산 후
지체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뇌병변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시각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청각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언어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신장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심장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호흡기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간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안면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장루·요루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뇌전증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정신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지적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자폐성 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

장애유형	실인원	연인원	연계			의료동행서비스	보건 및 건강상담	그 외
			보건	의료	기타			
계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

교육명		장애유형	실인원	연인원	세부 운영실적		협력 기관
					장애인	가족 등 그 외 참가자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계					
생애 주기별							
		계					
계							

○ 그 외 운영 실적

사업명	사업대상	주요 내용	운영 실적 (건/명/회수)	협력 기관

3. 교육

○ 교육운영실적

세부 교육명	사업대상	주요내용	협력기관 연계내용	수행인력		실적		
				직종	인원	실인원	연인원	회수

○ 교육모니터링 실적 및 환류

구분	모니터링실적	환류내용
교육명	모니터링 회수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내용 등	

4. 건강보건관리프로그램

○ 병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 및 연계한 실적

(단위 : 명)

구분	총(실인원)	관련기관				
		상급병원	병원	보건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타 (복지관 등)
입원환자						
재가장애인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외부기관으로 의뢰 및 연계한 실적

(단위 : 명)

구분	총(실인원)		관련기관				
	실인원	연인원	상급병원	병원	보건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타 (복지관 등)
입원환자							
재가장애인							

○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 운영실적

세부 사업명	사업대상	주요사업내용	협력기관 연계내용	수행인력		실적		
				직종	인원	실인원	연인원	회수

○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회의운영실적(사례회의)

구분	운영횟수	참여인원	참여기관	주요내용	사례관리대상자수
회의명					

Ⅲ. 보조금 예산집행(세부예산 내역에 맞게 항목(보조비목) 조정)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Ⅳ. 사업별 자체평가

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건의)

☞ I, II, III, IV 각 공히 쪽수에 제한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5〉 연간 사업결과보고서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개월)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1. 사업추진 방법(※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사업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등)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컨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 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구 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계획대비 이행여부 (준수, 미준수)
○			

- 미준수 사유

〈작성요령〉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3. 세부사업 실적

1. 기획 및 재활사업

○ 회의운영실적

구분		운영횟수	참여 기관	참여 인원	비고
지역장애인보건위원회 운영					서면, 대면, 화상
지역장애인 건강협의회	건강관리				
	재활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지역자원현황

구분		지역 내 현황(개소수)	비고
의료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수행 기관		
	여성장애인 산전관리,분만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등 보건기관		
복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및 협회		
	기타(자립생활센터 등)		
교육기관			
체육시설			
기타(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콜택시 등)			

* 지역 내 현황에 맞춰 구분하여 작성

○ 장애인등록 DB구축 실적

구분		장애인(명)		DB구축 장애인(명)								비고
		지역내 등록 장애인		지역내 등록 장애인				장애 미등록 퇴원환자				
				신규 등록		누적 총		신규 등록		누적 총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지체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뇌병변 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시각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청각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언어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신장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심장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호흡기 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간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서식

자폐성 장애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 실적

장애유형	연령	임신여성장애인 등록(수)	
		출산 전	출산 후
지체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뇌병변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시각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청각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언어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신장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심장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호흡기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간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안면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장루·요루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뇌전증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정신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지적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자폐성 장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

장애유형	실인원	연인원	연계			의료동행서비스	보건 및 건강상담	그 외
			보건	의료	기타			
계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

교육명		장애유형	실인원	연인원	세부 운영실적		협력 기관
					장애인	가족 등 그 외 참가자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계					
생애 주기별							
		계					
계							

○ 그 외 운영 실적

사업명	사업대상	주요 내용	운영 실적 (건/명/회수)	협력 기관

3. 교육

○ 교육운영실적

세부 교육명	사업대상	주요내용	협력기관 연계내용	수행인력		실적		
				직종	인원	실인원	연인원	회수

○ 교육모니터링 실적 및 환류

구분	모니터링실적	환류내용
교육명	모니터링 횟수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내용 등	

4. 건강보건관리프로그램

○ 병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 및 연계 실적

구분	총(실인원)	관련기관				
		상급병원	병원	보건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타 (복지관 등)
입원환자						
재가장애인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외부기관으로 의뢰 및 연계실적

구분	총		관련기관				
	실인원	연인원	상급병원	병원	보건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타 (복지관 등)
입원환자							
재가장애인							

○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 운영실적

세부 사업명	사업대상	주요사업내용	협력기관 연계내용	수행인력		실적		
				직종	인원	실인원	연인원	회수

○ 통합건강보건관리를 위한 회의운영실적(사례회의)

구분	운영횟수	참여인원	참여기관	주요내용	사례관리대상자수(명)
회의명					

4. 사업추진성과

※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작성요령〉

-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5.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사례중심,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6. 개선·건의사항

7. 보조금 예산집행(세부예산 내역에 맞게 항목(보조비목) 조정)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A+B+C)							
사무비 (A)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비						
재산조성비 (B)							
사업비 (C)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일반 수용비					
		여비					
	모성보건사업						
	교육사업						
	의료 서비스						
	운영지원 및 홍보						

〈서식 36〉 정산보고서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산보고서

I.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비고	집행액							이자발생액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내년도 이월액 (E)	불용액 (집행잔액) (F=C-D-E)	이자액 (G)	사용액 (H)	이자잔액 (I=G-H)
총계	운영 사업비									
	설치 사업비									
보조금 (국비)	운영 사업비									
	설치 사업비									
보조금 (지방비)	운영 사업비									
	설치 사업비									
자부담	운영 사업비									
	설치 사업비									

※ 설치사업비 : 예산구분상 재산조성비
 운영사업비 : 예산구분상 사무비+사업비

Ⅱ-1. 목별 결산내역(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관	항 (코드)	목 (코드)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합 계								

※ 이월 및 불용사유 : (상세히 작성, 별도 첨부 가능)

Ⅱ-2. 목별 결산내역(국비)

(단위 : 천원)

관	항 (코드)	목 (코드)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합 계								

Ⅱ-3. 목별 결산내역(지방비)

(단위 : 천원)

관	항 (코드)	목 (코드)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합 계								

Ⅲ-1. 기능별 결산내역(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잔액)
합 계						

※ Ⅱ-1의 사업비에 한해 작성, 합계는 Ⅱ-1의 구분상 사업비 합계와 같아야 함

Ⅲ-2. 기능별 결산내역(국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잔액)
합 계						

※ Ⅱ-2의 사업비에 한해 작성, 합계는 Ⅱ-2의 구분상 사업비 합계와 같아야 함

Ⅲ-3. 기능별 결산내역(지방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잔액)
합 계						

※ Ⅱ-3의 사업비에 한해 작성, 합계는 Ⅱ-3의 구분상 사업비 합계와 같아야 함

Ⅳ.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변경요청 승인일	변경내역 (비목)	예산액		비고
		당초	변경	
				* 복지부/ 시·도/ 자체 변경 * 사업계획/예산전용 변경 승인

〈서식 37〉 사업별 성과평가 항목(안)

분류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조		· 전담 조직 구성	배점
		· 시설 확보(회의실, 건강상담실, 교육실 등) 확보	배점
		· 전담 실무인력 확보(여성, 교육,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배점
과정	기획 및 재활사업	· 지역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운영	배점
		· 지역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여성, 교육 실무네트워크) 운영 *사례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협의회 제외	배점
	여성 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지역 여성장애인 임신·분만 협력체계 구성	배점
	교육 사업	· 교육 운영실적	배점
		· 교육 모니터링 결과 환류 적용	배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지역장애인에 대한 보건소 CBR사업으로 연계시킨 비율	배점
		· 보건소(CBR)에서 의뢰한 사례의 자원연계 비율	배점
		· 지역자원 연계 비율	배점
	결과	· 지역장애인의 정보이용건수	배점
		· 이용 지역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배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우수사례	정성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항목(안)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① 구조 (정량)	3개 항목		30
	① (조직)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었는가?		10
	② (자원) 시설(사무실, 회의실, 교육실)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③ (인적자원) 전담실무인력이 확보 되었는가?		10
② 과정 (정량)	4개분야 8개 항목		40
	④ 기획 및 재할 사업	④-1 장애인 건강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④-2 장애인 건강보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⑤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	⑤-1 지역자원 연계 비율은 적절한가?	5
		⑤-2 지역센터로 의뢰된 장애인에 대한 보건소(CBR) 연계 비율은 적절한가?	5
		⑤-3 보건소(CBR)에서 의뢰한 신규대상자의 지역자원 연계 비율은 적절한가?	5
	⑥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⑥-1 지역여성장애인 임신분만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5
	⑦ 교육사업	⑦-1 목표대비 교육운영실적이 적절한가?	5
		⑦-2 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5
③ 결과 (정성, 정량)	3개 항목		30
	⑧ 목표대비 지역장애인의 정보이용 건수가 적절한가?		5
	⑨ 지역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적절한가?		10
	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우수사례		15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서식 3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9〉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2. 3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조회 용도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경찰서장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경찰서장	→	통보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40〉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개정 2018. 3. 1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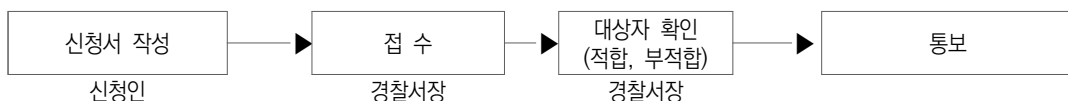
경찰청장(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허가증 사본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4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9. 29.〉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정보	기관명 조화용도 [] 운영하려는 자 [] 취업(예정)자 (직종:) ※ 예시: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주소 (전화번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동관련기관의 인·허가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요청인	→	접 수 경찰서장	→	취업제한 해당 여부 확인 경찰서장	→	통보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42〉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20. 3. 13.〉

일련번호	
------	--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④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9호의7서식(1)] <개정 2008.4.29.>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7서식(2)] <개정 2012.2.2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⑫ 기부자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⑧ ~ ⑪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8.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후원자 구분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1. 개인	개인	입력(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	입력(Y/N)	입력(Y/N)
4.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력(Y/N)	입력(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 기관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제2장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



서식 1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소 내외의 서비스가 이뤄질 것입니다. 간단한 건강 검사 후 맞춤형 교육 및 상담과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금전적인 대가는 없으며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나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귀하의 건강 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국가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인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필수입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관계 : ☐ 본인

☐ 법정대리인

설명자 :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개인정보 동의 획득 상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 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나.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 나. 건강정보 : 사업별 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가.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일에 차이가 있어, 보유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나.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1. 정보의 제공 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 2. 정보의 제공 대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주민복지회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보건소에서 수정하여 쓰도록 함)
- 3. 정보의 이용목적 : 타 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 4.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기간

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국립재활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1. 정보의 제공 범위 :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
-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구의 진행기간

다. 전자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전자화 정보 관리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의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행 관리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동의 획득 상세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보건소는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질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건강정보 : 사업별 건강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2

상담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 정보	장애 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상담일자	
상담방법	☐ 내소 ☐ 방문 ☐ 전화 ☐ 온라인 ☐ 기타_____
상담목적	
상담내용	
결과 및 지원계획	
기타사항	
추후관리여부	☐ 필요(추후관리 예정일:) ☐ 불필요

서식 3

연계병원 퇴원상담기록지

연계병원 퇴원상담기록지

상담일시			의뢰 요청기관		
상 담 자	(서 명)		의뢰일자		

기본정보	성 명		성 별		나 이	
	생년월일		결혼상태		종 교	
	학 력		주보호자 (관 계)		주보호자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주거형태	☐ 단독주택 ☐ 아파트 ☐ 빌라 ☐ 상가건물 ☐ 원룸 ☐ 기타()				
	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임대 ☐ 기타()				
	보험유형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타				
	직 업	사업체명	근무기간	직무내용	급여	비고(퇴직사유 등)
	수 입	☐ 100만원 미만 ☐ 100만원~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300만원~4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장애정보	장애등록	☐ 유(□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무 ☐ 예비장애인		장애 등록일		
	주장애 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호흡기 ☐ 심장 ☐ 신장 ☐ 간 ☐ 장루·요루 ☐ 뇌전증 ☐ 지적 ☐ 정신 ☐ 발달				
	부장애			장애발생 원인/시기		
가족정보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비고(연락처 등)

건강정보	병 력	☐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 기타() 발병시기 :
	복용중인 약물	
	이용의료기관	
	동반증상	☐ 실어증 ☐ 삼킴장애 ☐ 배뇨장애 ☐ 배변장애 ☐ 우울증 ☐ 기타()
	보조기기	
일상생활	식 사	☐ 독립적 ☐ 부분의존 ☐ 완전의존
	개인위생	☐ 독립적 ☐ 부분의존 ☐ 완전의존
	착 탈 의	☐ 독립적 ☐ 부분의존 ☐ 완전의존
	대소변처리	☐ 독립적 ☐ 부분의존 ☐ 완전의존
	보 행	☐ 독립적 ☐ 부분의존 ☐ 완전의존
대상자의 욕구 (취업/복지/교육 등)		
종합소견		
향후계획		
기타사항		

서식 4

재활기록지 I, II

재활기록지 I

☐ 일반정보				
성명		성별	☐ 남 ☐ 여	
등록일자		생년월일		
퇴록일		퇴록사유		
학력		직업	(전직)	
종교			(현직)	
대상자 등록유형	☐ 집중관리군 ☐ 정기관리군 ☐ 자기역량지원군			
장애등록	☐ 유(□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무 ☐ 예비장애인	장애 등록일		
주장애 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호흡기 ☐ 심장 ☐ 신장 ☐ 간 ☐ 장루·요루 ☐ 뇌전증 ☐ 지적 ☐ 정신 ☐ 발달			
부장애				
경제수준	☐ 하 ☐ 중하 ☐ 중 ☐ 상			
보험유형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타			
주요질환				
가족사항				

재활기록지 II

재활사정		
발병 및 치료과정	발병일 : . . . (. 년 . 개월 전)	
재활치료 경험	☐ 유(. 년 . 개월) ☐ 무	
의료적 문제	☐ 고혈압 ☐ 당뇨 ☐ 심장병 ☐ 기타_____	
동반장애	☐ 언어장애 ☐ 경련 ☐ 연하곤란 ☐ 편측무시 ☐ 뇌수종 ☐ 우울증 ☐ 배뇨장애 ☐ 배변장애 ☐ 기타_____	
통 증	☐ 유(부위 : 강도 : 0-1-2-3-4-5-6-7-8-9-10) ☐ 무	
복용중인 약물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_____ 보행기구 _____ 기타 _____	
외출(지역참여)	☐ 유(횟수 : / 주요활동 :) ☐ 무	
주간병인		
가족 특이사항	☐ 독거 ☐ 부부만 거주 ☐ 조손가정 ☐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 ☐ 폭력가족 ☐ 지적장애(부모) ☐ 정신질환가족 ☐ 배우자 외 동거가족 ☐ 기타	
주거사항	화장실 유형	☐ 좌변기 ☐ 재래식변기 ☐ 이동변기 ☐ 기타 _____
	승강기	☐ 유 ☐ 무
	개선필요	☐ 유 ☐ 무
	필요부분	안전관리 ☐ 문턱 ☐ 미끄럼방지 ☐ 손잡이 또는 안전대 ☐ 기타_____
		이동관련 ☐ 계단 ☐ 문턱 ☐ bar 설치 ☐ 기타_____
일상생활 ☐ 화장실 ☐ 부엌 ☐ 거실 ☐ 침실 ☐ 기타_____		
기타 _____		

재활사정(계속)						
의식	☐ 명료		☐ 혼돈		☐ 혼수	
의사소통	☐ 가능(표현방법 :)		☐ 다소 어려움		☐ 불가능	
호흡상태	☐ 정상	☐ 기침	☐ 호흡곤란	☐ 기관 삽관	☐ 기타 _____	
영양상태	☐ 양호		☐ 불량		식단 부족, 삼키기 능력 저하 등의 이유를 기술	
연하장애	☐ 있음		☐ 없음			
배뇨	상태	☐ 정상		☐ 배뇨곤란(참지 못함, 잦은 배뇨, 느낌 없음)		
	방법	☐ 정상	☐ 기저귀, 기스모	☐ 도뇨관(간헐적, 지속적)	☐ 기타	
배변	상태	☐ 정상	☐ 변비(회 / 일)	☐ 실변(배변느낌 유 무)	☐ 기타	
	방법	☐ 정상	☐ 항문자극	☐ 관장	☐ 기타	
피부	위생상태	☐ 양호	☐ 불량	☐ 욕창(부위 :)	상태 :)	
근력	우상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좌상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우하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좌하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관절구축	상지	☐ 어깨(좌, 우)		☐ 팔꿈치(좌, 우)	☐ 손(좌, 우)	
	하지	☐ 고관절(좌, 우)		☐ 무릎(좌, 우)	☐ 발목(좌, 우)	
운동기능 정도	☐ 와상상태(거동불능)		☐ 앉아있을 수 있음		☐ 침대, 휠체어 이동가능	
	☐ 기립가능	☐ 의존적 실내보행	☐ 독립적 실내보행		☐ 실외보행	
일상생활 (총점:)		전혀안됨	시도만 가능	중간도움	최소도움	완전독립
	개인위생	☐ 0	☐ 1	☐ 3	☐ 4	☐ 5
	목욕하기	☐ 0	☐ 1	☐ 3	☐ 4	☐ 5
	식사하기	☐ 0	☐ 2	☐ 5	☐ 8	☐ 10
	용변처리	☐ 0	☐ 2	☐ 5	☐ 8	☐ 10
	계단오르기	☐ 0	☐ 2	☐ 5	☐ 8	☐ 10
	옷입기	☐ 0	☐ 2	☐ 5	☐ 8	☐ 10
	배변조절	☐ 0	☐ 2	☐ 5	☐ 8	☐ 10
	배뇨조절	☐ 0	☐ 2	☐ 5	☐ 8	☐ 10
	보행	☐ 0	☐ 3	☐ 8	☐ 12	☐ 15
	휠체어보행	☐ 0	☐ 1	☐ 3	☐ 4	☐ 5
	휠체어/침대이동	☐ 0	☐ 3	☐ 8	☐ 12	☐ 15

□ 종합

주요문제			
대상자 주요구			
재활목표			
제공 서비스	구분	세부 프로그램(예시)	비고
	①건강관리 서비스	①배뇨·배변관리 ②욕창·피부관리 ③영양관리 ④구강관리 ⑤통증관리 ⑥연하관리 ⑦호흡관리 ⑧만성질환관리 ⑨기타	
	②재활훈련 서비스	①재활운동교육 ②일상생활동작훈련 ③관절구축예방교육 ④차장애예방교육 ⑤생활안전교육 ⑥기타	
	③사회참여 서비스	①외출/나들이/체험 ②동료상담/자조모임 ③스포츠/레크레이션 ④가족소모임 ⑤기타	
	④자원연계 서비스	①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②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③의료기관과 연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④장애인복지관과 연계 ⑤자활센터와 연계 ⑥장애인단체와 연계 ⑦행정기관과 연계 ⑧교육기관과의 연계 ⑨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⑩장애인 운전 지원 ⑪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⑫보조기기센터와 연계 ⑬건강검진 지원 ⑭기타	
	⑤자기역량 서비스	①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②기타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서비스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서식 5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수행정도		전혀 할 수 없음 (1)	많은 도움이 필요(2)	중간정도의 도움이 필요(3)	경미한 도움이 필요(4)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5)
평가항목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use)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착탈의(dressing)		0	2	5	8	10
대변조절(bowel control)		0	2	5	8	10
소변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 이동(wheelchair) ¹⁾		0	1	3	4	5
이동(chair/bed transfer)		0	3	8	12	15
성명		검사일자		점수 (총점 100점)		
성별		나이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주 : ¹⁾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 MBI 산출

분류	MBI 점수합계	독립수준
1	0 - 24	Total : 완전히 의존적임
2	25 - 49	Severe : 매우 의존적임
3	50 - 74	Moderate : 중등도의 의존적임
4	75 - 90	Mild : 약간 의존적임
5	91 - 99	Minimal : 최소의 도움이 필요함

서식 6

삶의질 평가(EQ-5D)

삶의질 평가(EQ-5D)

* 귀하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운동능력	☐ ①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 ②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 ③ 나는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2. 자기관리	☐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3. 일상활동 (예 :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또는 여가활동)	☐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4. 통증/불편	☐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5. 불안/우울	☐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점수	전산(PHIS)에서 산출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EQ-5D 산출식 : $y = 1 - (0.050 + 0.096 \times M2 + 0.418 \times M3 + 0.046 \times SC2 + 0.136 \times SC3 + 0.051 \times UA2 + 0.208 \times UA3 + 0.037 \times PD2 + 0.151 \times PD3 + 0.043 \times AD2 + 0.158 \times AD3 + 0.050 \times N3)$	

* EQ-5D 도구란?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건강상태 측정도구로 삶의 질 평가도구 중 하나

* EQ-5D 점수는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됨

* 산출 : -0.171~1(점수가 클수록 삶의 질이 높음)

* 참조(EQ-5D 점수 평균)

대국민		장애인
만19세 이상	만 70세 이상	
0.965(+ 0.001)	0.890(+ 0.005)	0.660(±0.23)
〈2020 국민건강통계〉		〈2019 CBR사업 만족도 조사〉

* 2020년 만족도 조사 미실시

EQ-5D 산출식 :

$$y = 1 - (0.050 + 0.096 \times M2 + 0.418 \times M3 + 0.046 \times SC2 + 0.136 \times SC3 + 0.051 \times UA2 + 0.208 \times UA3 + 0.037 \times PD2 + 0.151 \times PD3 + 0.043 \times AD2 + 0.158 \times AD3 + 0.050 \times N3)$$

※ 삶의질 점수계산방식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질가중치연구(남해성, 2007, 질병관리본부)에서 도출된 보정식을 이용함

※ 지역사회중심재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해당 산출식을 적용하여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됨

※ 변수정의

변수명	정 의
M2	운동능력이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M3	운동능력이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SC2	자기관리가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SC3	자기관리가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UA2	일상활동이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UA3	일상활동이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PD2	통증/불편감이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PD3	통증/불편감이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AD2	불안/우울이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AD3	불안/우울이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N3	'수준3'이 하나라도 있을 때 1, 나머지는 0

서식 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명	
구 성 일	년 월 일
변 경 일	년 월 일
변경내용	〇〇〇위원(〇〇기관) → 〇〇〇위원(〇〇기관)

• 구성

연번	위원명	기관명(구분)	직 위	연락처	비고
1		〇〇(행정기관)			위원장
2		〇〇(공공기관)			부위원장
3		〇〇(의료기관)			간사
4		〇〇(복지시설)			위원
5		〇〇(장애인시설)			위원
6		〇〇(보조기기센터)			위원
7		〇〇(장애인단체)			위원

• 역할

기관명	역 할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식 8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록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안건	
회의내용	
결정사항 및 추후계획	
건의사항	

서식 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평가지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평가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평가일자							평가자명				
주면접자											
평가방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의뢰기관명				의뢰자명						의뢰자연락처	

1. 건강관리(진단, 치료, 재활, 간호 등)의 필요성

발병일	년 월		주진단명				
사용중인 보조기기	○무 ○해당 없음						
	○유	지체/뇌병변	☐ 손보호기 ☐ 어깨보호기 ☐ 하지보호기 ☐ 척추보호기 ☐ 지팡이 ☐ 보행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_____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디스플레이 ☐ 바코드리더기 ☐ 광학문자판독기 ☐ 점자라벨기 ☐ 점자프린터 ☐ 화면낭독 S/W ☐ 화면확대 S/W ☐ 흰지팡이 ☐ 점자/음성시계 ☐ 확대경 ☐ 기타()				
		청각장애	☐ 보청기 ☐ 인공와우 ☐ 골전도헤드폰 ☐ 문자송수신전화기 ☐ 음성증폭기 ☐ 시각 및 진동 신호기 ☐ 기타()				
		기타	☐ 기타()				
병력(수술, 만성질환 등)	○ 무 ○ 유						
	질환명		완치유무		치료상황		
			○완치 ○미완치 ○모름				
의사소통	☐ 가능(□구어 □수어 □필담) ☐ 부분적으로 가능(□구어 □수어 □필담 □몸짓) ☐ 불가능						

근력	우상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 모름(평가 불가능)
	좌상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 모름(평가 불가능)
	우하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 모름(평가 불가능)
	좌하지)	☐ 정상	☐ 약화	☐ 완전마비	☐ 모름(평가 불가능)
관절구축	상지)	☐ 어깨(좌, 우) ☐ 정상	☐ 팔꿈치(좌, 우) ☐ 모름	☐ 손(좌, 우)	
	하지)	☐ 고관절(좌, 우) ☐ 정상	☐ 무릎(좌, 우) ☐ 모름(평가 불가능)	☐ 발목(좌, 우)	
연하장애	☐ 있음(식이: ☐ 연하곤란식 ☐ 경관영양 ☐ 정맥영양) ☐ 없음 ☐ 모름(평가 불가능)				
언어장애	☐ 해당없음 ☐ 실어증 ☐ 조음장애				
영양상태	☐ 양호 ☐ 불량 : 이유)				
호흡상태	☐ 정상 ☐ 기침 ☐ 잦은 상기도 감염 ☐ 호흡곤란 ☐ 기타:				
	☐ 기관절개관 ☐ 인공호흡기 사용(사유: 기관절개관 사용, 수면유도 무호흡)				
배뇨	상태	☐ 이상없음 ☐ 배뇨곤란(참지못함, 잦은배뇨, 느낌없음) ☐ 기타()			
	방법	☐ 자연배뇨 ☐ 기저귀, 기스모 ☐ 도뇨관(간헐적, 지속적) ☐ 기타()			
배변	상태	☐ 이상없음 ☐ 변비(회 / 일) ☐ 설사 ☐ 실변(배변느낌 유 무) ☐ 기타			
	방법				
피부 위생	☐ 양호 ☐ 불량 ☐ 욕창(부위 : 상태 : 예: 소독중, 병원통원)				
통증	☐ 유(부위: 강도: (0 1 2 3 4 5 6 7 8 9 10) ☐ 무				
운동기능	☐ 와상상태(거동불능) ☐ 침대에서 옆으로 누울 수 있음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음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기대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음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앉은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음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가능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의존적 실내보행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독립적 실내보행 (☐ 보조기기 사용 ☐ 보조기기 미사용) ☐ 실외보행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 계단 이동 가능 (☐ 독립적 ☐ 보조기기 사용 ☐ 도움)				

건강검진 (최근 2 년)	검진 유무 ☐ 유(마지막 검진일:) ☐ 무 ☐ 모름		
	검진 내용 ☐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 암검진 ☐ 구강검진 ☐ 기타) ☐ 종합건강검진 ☐ 모름 ☐ 해당없음		
	유소견 : 유소견 관리 :		
	검진받지 못한 이유 ☐ 경제적인 이유 ☐ 병·의원 예약이 어려워서 ☐ 이동이 불편해서 ☐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 장애 특성에 맞는 검사를 받기 어려워서 ☐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 기타 _____		
	검진희망 ☐ 유(검진 내용) ☐ 무		
	주장애 및 질병 관리	장애(주 진단명)와 관련된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 ☐ 유 ☐ 무(1-1)	
(1-1) 주장애와 질병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 필요여부 ☐ 유 ☐ 무			
장애인건강주치의 필요여부 ☐ 유 ☐ 무			
정서	☐ 안정 ☐ 불안정(☐ 분노 ☐ 공격 ☐ 불안 ☐ 강박 ☐ 우울 ☐ 수면장애 ☐ 기타:(· · ·)) ☐ 평가 불가능		
정신과 진단 및 치료 유무	진단유무	☐ 무 ☐ 유 () ☐ 모름	
	치료유무	☐ 무 ☐ 유 () ☐ 모름	
자살	☐ 자살생각(빈도: 시기:) ☐ 자살시도(시기:) ☐ 생각, 시도 경험 없음 ☐ 평가 불가능		
육구 재점검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질병(장애), 건강 관련 추가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참고: 지적, 자폐성 장애의 경우 구토, 소화불량, 식도염, 잦은 복통 등 확인 필요 2)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2. 건강관리의 장애물			
의료서비스가 필요할때 병의원 이용 여부	☐ 유 ☐ 무		
	병의원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 경제적인 이유 ☐ 병·의원 이용절차가 불편해서 ☐ 교통이 불편해서 ☐ 증상이 가벼워서 ☐ 의료기구 및 시설이 장애인에게 맞지 않아서 ☐ 시간이 없어서(직업, 가사 및 자녀돌봄으로 인해) ☐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 기타 _____		
외출시 주 이동방법	☐ 자가용 ☐ 장애인콜택시 ☐ 대중교통 ☐ 구급차 (☐ 119 ☐ 사설) ☐ 도보 ☐ 휠체어(수동, 자동) ☐ 기타		
	이동시 어려운 점:		
응급상황발생시, 도움 요청	☐ 어려움이 없다 ☐ 도움 요청할 지원체계가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 도움을 요청할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 한다 도움처 : _____		
주거개조의 필요성	주택개조의 필요성		
	공간	개조 필요 유무	개조가 필요한 내용
	주거 진입	☐ 무 ☐ 유	
	현관	☐ 무 ☐ 유	
	거실	☐ 무 ☐ 유	
	방 1	☐ 무 ☐ 유	
	방 2	☐ 무 ☐ 유	
	욕실	☐ 무 ☐ 유	
	화장실	☐ 무 ☐ 유	
	주방	☐ 무 ☐ 유	
기타	☐ 무 ☐ 유		
민간의료보험	☐ 유 ☐ 무 ☐ 모름		

주소득원	☐ 근로소득 : ☐ 정보보호조금 : ☐ 가족지원 : ☐ 후원 등 기타 : ☐ 모름					
재산	☐ 주택 : ☐ 자동차 : ☐ 금융 : ☐ 부채 : ☐ 기타 : ☐ 모름					
육구 재점검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는 추가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3. 자기 건강관리 역량강화 필요성						
기초 일상생활	영역	수행능력				
		불가능	많은 도움 필요	중간정도 도움필요	경미한 도움 필요	독립적 가능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입기					
약물복용 관리	☐ 해당없음 ☐ 약복용중(약물명:) ☐ 잘함 ☐ 보통 ☐ 못함(구체적:) ☐ 약물명 모름					
구강관리	치아상태	저작기능 의치유무	☐ 가능 ☐ 무	☐ 불완전 ☐ 유(□완전틀니 □부분틀니)	☐ 불가능	
	구강관리	☐ 잘함 ☐ 보통 ☐ 못함(구체적:) 기타 특이사항:				
흡연(최근 1년)	☐ 매일 피움 ☐ 가끔피움 ☐ 피우지 않음 ☐ 기타					
음주(최근 1년)	1 회음주량	☐ 1~2 잔 ☐ 3~4 잔 ☐ 5~6 잔 ☐ 7~9 잔 ☐ 10 잔 이상				
	음주횟수	☐ 월 1 회미만 ☐ 월 1 회 ☐ 월 2~4 회 ☐ 주 2~3 회 ☐ 주 4 회 이상				
낙상 (최근 1년)	☐ 경험 없음 ☐ 경험 있음() ☐ 모름					

의료결정능력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결정 능력 □능력있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결정능력이 전혀 없음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돕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유(구체적으로:) □무				
자기건강관리 능력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음 □타인의 도움이 조금 필요함 □타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함				
	돌봄자, 외부 자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능력 □매우잘함 □잘함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				
	병식과 장애수용 □병식 있고 장애수용이 되었음 □병식 부족하거나 없고 장애수용에 어려움 있음 □평가불가능				
육구 재점검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건강관리 관련 추가적인 자원 또는 지원체계가 있으신가요? 3)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4. 주돌봄자와 자원의 반응역량 강화 필요성					
가족관계	나이	동거	경제활동	건강/장애	당사자와의 관계, 지지정도
.	.	.	.	.	.
.	.	.	.	.	.
.	.	.	.	.	.
주 돌봄자 돌봄수행정도	주돌봄자 1			주돌봄자 2	
	시간: □충분 □보통 □불충분			시간: □충분 □보통 □불충분	
	지식: □충분 □보통 □불충분			지식: □충분 □보통 □불충분	
	의지: □충분 □보통 □불충분			의지: □충분 □보통 □불충분	
	건강: □건강 □보통 □건강안 좋음			건강: □건강 □보통 □건강안 좋음	
비공식적 자원	□친인척 : □이웃: □종교: □친구: □기타: □없음				

작성안내

항목	작성방법
사례관리번호	시스템 자동 생성
대상자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무	· 시스템 자동 연동되어 기록됨
평가일시	· 평가를 실시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 · 재사정을 한 경우에는 재사정 평가 일시를 기록
평가자명	· 평가를 실시한 담당자 이름을 작성 · 평가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주사례관리자를 앞에 작성하고, 나머지 평가자 모두를 작성 · 표기방법) 김00/이00, 박00
주면접자	· 면담을 한 대상자를 작성 · 표기방법) 예) 모, 장애인활동지원사
평가방법	· 평가방법 형태를 체크
의뢰기관명	· 접수경로에서 자동 연동 됨
의뢰자명	· 의뢰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작성
의뢰자 연락처	· 의뢰한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작성
1. 건강관리(진단, 치료, 재활, 간호 등)의 필요성	
발병시기	· 주 진단명 발병시기 작성 ·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참조
주 진단명	· 주 진단명에 체크 ·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참조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으로 기록
사용중인 보조기기	· 사용중인 보조기기 유무를 체크하고, '유'로 체크한 경우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모두 체크 · (필요시)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참고
병력	· 대상자의 과거 수술력, 만성질환, 기타 질환을 기록 (주진단명, 동반장애에 체크했던 건 제외하고 기록) · 질환명에 따른 현재 완치유무와 현재의 치료상황을 서술 · 완치유무 : 완치, 미완치, 모름으로 기록 · 치료상황 : 예) 주 2회 물리치료, 약 복용 중, 월 1회 항암치료 등 · 모름때나 해당없을때는 질환명에 '모름', '해당없음'이라고 기록
의사소통	·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체크하고 가능한 경우 표현방법도 체크

항목	작성방법														
근력	- 대상자의 근력상태를 좌우 상지, 좌우 하지로 구분하여 체크 - 용어 설명 <table> <tr> <th>용어</th><th>설명</th></tr> <tr> <td>정상</td><td>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근력 상태</td></tr> <tr> <td>악화</td><td>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근력 상태</td></tr> <tr> <td>완전마비</td><td>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td></tr> </table>	용어	설명	정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근력 상태	악화	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근력 상태	완전마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용어	설명														
정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근력 상태														
악화	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근력 상태														
완전마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관절구축	- 관절구축은 관절 주위의 연부조직, 인대, 근육, 관절 부분의 제한으로 관절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된 경우를 의미함 - 상하지 신체 부위별 관절구축이 있는 부위를 체크(중복체크 가능) - 관절구축이 정상일때는 '정상'에 체크 - 피면접자도 모르고, 평가자도 평가하기 어렵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연하장애	- 연하장애란 음식물 삼킴기능과 관련된 신경, 근육의 기능적 이상으로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사래 걸리는) 상황임 - 연하장애 유무를 체크 -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름에 체크														
언어장애	- 의사소통 상태를 체크 - 용어 설명 <table> <tr> <th>용어</th><th>설명</th></tr> <tr> <td>실어증</td><td>뇌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이해 및 표현능력이 상실된 경우</td></tr> <tr> <td>조음장애</td><td>단어를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td></tr> </table>	용어	설명	실어증	뇌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이해 및 표현능력이 상실된 경우	조음장애	단어를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용어	설명														
실어증	뇌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이해 및 표현능력이 상실된 경우														
조음장애	단어를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영양상태	- 영양상태를 체크 - 불량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영양불량의 이유를 기록 예) 저작능력이나 연하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음식 섭취 제한 돌봄자의 지원 부족으로 다양한 영양음식 섭취 제한 등														
호흡상태	- 호흡상태를 체크(중복체크 가능) - 용어 설명 <table> <tr> <th>용어</th><th>설명</th></tr> <tr> <td>정상</td><td>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td></tr> <tr> <td>기침</td><td>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기침으로, 예를 들어 수면이나 식사에 방해를 주는 경우</td></tr> <tr> <td>잦은 상기도 감염</td><td>반복적인 감기나 폐렴 등을 겪는 경우</td></tr> <tr> <td>호흡곤란</td><td>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이 어려운 경우</td></tr> <tr> <td>인공호흡기 사용</td><td>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공호흡기의 자가소유, 대여, 국가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 있음</td></tr> <tr> <td>기타</td><td>그 외 의미있는 호흡 상태에 대해 기술, 예 : 무호흡, 과호흡 등</td></tr> </table>	용어	설명	정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기침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기침으로, 예를 들어 수면이나 식사에 방해를 주는 경우	잦은 상기도 감염	반복적인 감기나 폐렴 등을 겪는 경우	호흡곤란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이 어려운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공호흡기의 자가소유, 대여, 국가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 있음	기타	그 외 의미있는 호흡 상태에 대해 기술, 예 : 무호흡, 과호흡 등
용어	설명														
정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기침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기침으로, 예를 들어 수면이나 식사에 방해를 주는 경우														
잦은 상기도 감염	반복적인 감기나 폐렴 등을 겪는 경우														
호흡곤란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이 어려운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공호흡기의 자가소유, 대여, 국가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 있음														
기타	그 외 의미있는 호흡 상태에 대해 기술, 예 : 무호흡, 과호흡 등														

항목		작성방법	
배뇨		· 배뇨상태를 체크	
		·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자연배뇨	수의적으로 배뇨하는 경우
		기저귀, 기스모	자연배뇨 능력과 무관하게 기저귀나 기스모를 착용하는 경우
		유치도뇨관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	그 외 의미있는 배뇨 상태에 대해 기술
배변		· 배변상태를 체크	
피부위생		· 피부상태를 체크	
		· 욕창이 있는 경우에는 욕창부위와 욕창 상태(피부발적, 수포, 피부궤양 등)를 기록	
통증		· 통증 유무를 체크	
		·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부위와 통증 강도를 작성하며, 통증 강도는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강도로 통증이 없는 경우를 0, 지금까지 겪어 본 가장 큰 통증을 10으로 하여, 현재 상태를 물어서 표기함	
운동기능		· 운동능력을 체크	
		· 인터뷰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관찰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용어 설명	
		용어	설명
		독립적	보조기 사용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경우
		보조기기 사용	보조기 사용시 가능한 경우
		도움	타인의 도움하에 가능한 경우
건강검진	유무	·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수검하기 때문에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함	
		· 건강검진 여부에 체크	
		·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건강검진일을 기록	
		· 건강검진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모름'에 체크	
	내용	· 받은 건강검진 항목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 국가건강검진인지 그 이외의 종합건강검진인지 체크	
		· 건강검진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모름'에 체크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	
	유소견	· 검진을 받은 경우에, 유소견이 있었다면 유소견 내용을 기술 예) 고혈압 진단	
		· 유소견을 관리 받았는지, 현재 받고 있는지 기술 예) 고혈압 약 복용 중, 저염식 식이 중	

항목		작성방법																									
	받지 못한 이유	·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검진희망	· 추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원하는지 유무에 체크 · 수검을 희망할 때, 희망하는 검진 항목 기술 예) 일반건강검진, 위암검진																									
주장애 및 질병 관리	진료 여부	· 주장애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지 유무 체크																									
	진료 필요	· 현재 진료를 받고 있지 않다면, 정기적 진료를 필요로 하는지 유무 체크																									
	주치의 필요	· 장애인건강주치의 연계 원하는지 유무에 체크																									
정서		· 현재 관련있는 정서 상태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 안정 상태인지 불안정 상태인지를 체크하고, 불안정 상태인 경우에는 세부 상태를 체크 · 용어 설명																									
		<table><tr><th colspan="2">용어</th><th>설명</th></tr><tr><td colspan="2">안정</td><td>평온한 상태 장애(질병)을 받아들였으며 관리와 적응을 위해 노력</td></tr><tr><td rowspan="7">불안정</td><td>분노</td><td>장애(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가 난 정서상태</td></tr><tr><td>공격</td><td>분노를 넘어 공격적 행동까지 이어진 상태</td></tr><tr><td>불안</td><td>이유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감, 걱정, 근심</td></tr><tr><td>강박</td><td>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되는 상태(잦은 손씻기, 반복적 확인 등)</td></tr><tr><td>우울</td><td>기분의 저하와 함께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td></tr><tr><td>수면 장애</td><td>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잤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등(불면증,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td></tr><tr><td>기타</td><td>기타 정서 상태를 기술</td></tr><tr><td colspan="2">평가 불가능</td><td>심한 인지저하, 언어 표현의 어려움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td></tr></table>		용어		설명	안정		평온한 상태 장애(질병)을 받아들였으며 관리와 적응을 위해 노력	불안정	분노	장애(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가 난 정서상태	공격	분노를 넘어 공격적 행동까지 이어진 상태	불안	이유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감, 걱정, 근심	강박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되는 상태(잦은 손씻기, 반복적 확인 등)	우울	기분의 저하와 함께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	수면 장애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잤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등(불면증,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기타	기타 정서 상태를 기술	평가 불가능		심한 인지저하, 언어 표현의 어려움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용어		설명																							
		안정		평온한 상태 장애(질병)을 받아들였으며 관리와 적응을 위해 노력																							
		불안정	분노	장애(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가 난 정서상태																							
			공격	분노를 넘어 공격적 행동까지 이어진 상태																							
			불안	이유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감, 걱정, 근심																							
			강박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되는 상태(잦은 손씻기, 반복적 확인 등)																							
			우울	기분의 저하와 함께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																							
			수면 장애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잤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등(불면증,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기타	기타 정서 상태를 기술																										
평가 불가능		심한 인지저하, 언어 표현의 어려움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정신과 진단 및 치료 유무		· 정신과 진단을 유무에 대해 체크하고 진단받은 질환에 대해 기록 · 정신과 치료받은 경험 유무를 체크 · 모름 : 피면접자가 알지 못할 때 체크																									
자살		· 자살생각과 시도 경험에 대한 평가 · 용어 설명																									
		<table><tr><th colspan="2">용어</th><th>설명</th></tr><tr><td colspan="2">자살생각</td><td>자살을 하고 싶어하고 실행하려는 의도나 계획을 가진 경우</td></tr><tr><td colspan="2">자살시도</td><td>자살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td></tr><tr><td colspan="2">생각, 시도 경험없음</td><td>자살생각이나 시도 없었을 때 체크</td></tr><tr><td colspan="2">평가불가능</td><td>인지나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td></tr></table>		용어		설명	자살생각		자살을 하고 싶어하고 실행하려는 의도나 계획을 가진 경우	자살시도		자살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생각, 시도 경험없음		자살생각이나 시도 없었을 때 체크	평가불가능		인지나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용어		설명																							
		자살생각		자살을 하고 싶어하고 실행하려는 의도나 계획을 가진 경우																							
		자살시도		자살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생각, 시도 경험없음		자살생각이나 시도 없었을 때 체크																									
평가불가능		인지나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항목		작성방법
		· 자살생각을 한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언제쯤 했는지를 기록 · 자살시도를 했던 시기를 기록, 여러번일때는 최근 1~2개를 기록
욕구 재점검	1) 건강 관련 추가적 으로 불편한 부분	· 질병(또는 장애)관리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추가적으로 재점검하는 질문 · 진단, 검사 : 질병(또는 장애)와 관련하여 검사 및 진단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 입원, 치료 : 질병(또는 장애)관리를 위한 입원이나 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 의료상담 : 질병(또는 장애) 관리를 위한 의료적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 방문의료 : 물리적 환경의 제약과 심한 신체적 제약으로 병원의 접근이 어려워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의 방문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 재활치료 : 장애와 관련하여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체크
	2) 가장 우선 해결되길 바라는 점	·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해결우선순위 욕구를 파악 예) 보건소에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깨 통증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2. 건강관리의 장애물		
병의원 이용 여부		·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할때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
외출시 이동 방법		·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보건소 방문, 재활체육시설 등을 방문 시 이동방법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응급상황시 도움요청		·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체크 · 도움처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서술 예) 00교회 목사, 요양보호사, 가족 등
주거 환경	개조 유무	· 낙상 예방, 의료접근성 향상, 독립적 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을 개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체크 · 공간별 개조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
	필요 내용	· 개조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현관 : 휠체어 진입을 위해 경사로 설치 욕실 :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및 핸드레일 설치 · 기타 : 조명의 적절성 파악하여 낙상의 위험 방지 필요
민간의료보험		·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비보험) 유무 체크 · 의료비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아도 됨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항목		작성방법
주소득원		·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 ·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정 내 소득내용을 작성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재산		·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욕구 재점검	1)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부분	· 기타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기록 (예) 주거환경 개선을 했을 때,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 이동지원이 필요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살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
	2)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	·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해결우선순위 욕구를 파악 예) 외출할 때 누군가 동행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3. 자기 건강관리 역량강화 필요성		
기초일상생활		·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수행능력을 체크
약물복용관리		· 복용 중인 약물 명을 기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처방전이나 약봉투의 약물정보를 기재 · 대상자가 약물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를때는 모름에 체크 ·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없음에 체크 · 약물복용하거나 약물관리를 잘 하는지를 체크 · 약물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못하는 상황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여러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중복예상되는 약물이 있음 약이 정리되지 않아 복용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구강관리		· 구강 위생관리를 정도를 체크 · 위생관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못하는 상황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근력 등의 기능상의 문제로 입을 벌리는게 어려워 양치가 어려움. 욕실까지 이동이 어렵고 돌봄자의 적극적인 케어가 부족 · 기타 특이사항 : 구강상태에 대한 기타 정보를 기재 예) 전체 틀니, 부분 틀니, 충치로 인한 통증
흡연 (최근 1년)		· 최근 1년 동안 흡연 경험을 체크
음주 (최근 1년)		· 최근 1년 동안 음주 경험과 1회 음주량, 음주 횟수를 체크

항목		작성방법
낙상		· 최근 1년동안 낙상 경험 유무에 체크 · 낙상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 6개월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둔부 타박상, 손목 골절 발생 · 피면접자도 모르고, 의뢰자, 관련 자료에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모름'에 체크
의료 결정 능력	결정 능력	·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체크
	결정 지원자	·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체크 · 결정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어머니, 장애인복지관 담당사회복지사
자기 건강 관리 능력	관리 능력	·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체크
	소통 능력	· 건강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가족, 돌봄자, 외부자원들(사례관리자, 의료종사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체크
	병식과 장애 수용	· 병식은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관리방법을 아는 능력을 의미 · 자신의 질병에 대한 병식 유무에 체크 · 대상자가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의 문제로 병식을 체크할 수 없을때에는 '평가불가능'에 체크 · 자신의 질병과 장애에 대한 심리적 수용정도를 파악
욕구 재점검	1) 건강 관리를 하기위해 추가적으로 불편한 부분	·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기록 예) 건강관리를 해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혼자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의 제한
	2) 추가적인 자원 또는 지원체계	· 건강관리 관련 추가적인 자원 또는 지원체계가 있는지 기록
	3) 우선적으로 해결 되기를 바라는 점	·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해결우선순위 욕구를 파악 예) 치통이 있지만 도움을 청할 때가 없어 참고 견디고 있음

항목		작성방법														
4. 주돌봄자와 자원의 반응역량 강화 필요성																
가족 정보	·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기록. 단,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대상자에게 의미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기록 · 하위영역에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울 때는 ‘모름’으로 기록 · 기록 방법															
	<table><tr><th>용어</th><th>방법</th></tr><tr><td>가족관계</td><td>예) 부, 모, 아들, 딸, 손자</td></tr><tr><td>나이</td><td>예) 80세</td></tr><tr><td>동거</td><td>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td></tr><tr><td>경제활동</td><td>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td></tr><tr><td>건강/장애</td><td>건강할때는 건강으로 기록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때는 주요 질병명이나 장애유형을 기록</td></tr><tr><td>관계/지지 정도</td><td>지지적(원만)/소원(무관심, 연락안됨)/갈등/기타</td></tr></table>		용어	방법	가족관계	예) 부, 모, 아들, 딸, 손자	나이	예) 80세	동거	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	경제활동	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	건강/장애	건강할때는 건강으로 기록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때는 주요 질병명이나 장애유형을 기록	관계/지지 정도	지지적(원만)/소원(무관심, 연락안됨)/갈등/기타
	용어	방법														
	가족관계	예) 부, 모, 아들, 딸, 손자														
	나이	예) 80세														
	동거	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														
	경제활동	유, 무로 작성하거나 o, x로 표시														
	건강/장애	건강할때는 건강으로 기록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때는 주요 질병명이나 장애유형을 기록														
관계/지지 정도	지지적(원만)/소원(무관심, 연락안됨)/갈등/기타															
돌봄수행정도	· 주돌봄자가 2명 이상일때는 각각 작성 · 주돌봄자 1 : 예)아들, 주돌봄자 2 : 예)장애인활동지원사 · 용어 설명															
	<table><tr><th>용어</th><th>설명</th></tr><tr><td>시간</td><td>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td></tr><tr><td>지식</td><td>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필요한 돌봄지식(질병이해, 건강관리방법, 돌봄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td></tr><tr><td>의지</td><td>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고자하는 의지 정도에 대한 질문</td></tr><tr><td>건강</td><td>주돌봄자의 건강문제가 대상자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주돌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td></tr></table>		용어	설명	시간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지식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필요한 돌봄지식(질병이해, 건강관리방법, 돌봄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의지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고자하는 의지 정도에 대한 질문	건강	주돌봄자의 건강문제가 대상자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주돌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				
	용어	설명														
	시간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지식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는데에 필요한 돌봄지식(질병이해, 건강관리방법, 돌봄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의지	주돌봄자가 대상자를 돌보고자하는 의지 정도에 대한 질문														
건강	주돌봄자의 건강문제가 대상자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주돌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															
비공식적 자원		· 대상자에게 지원(도움)을 주고 있는 친인척, 이웃, 종교, 친구, 기타 등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 기타에는 구체적으로 기술 · 비공식 자원이 없을 때에는 ‘없음’에 체크														
이용 중인 지역사회자원		·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중인 지역사회자원을 기관 유형별로 기술 · 이용중인 기관명과 지원받고 있는 지원 내용을 기술 · 이용중인 지역사회자원이 없을 때에는 ‘없음’이라고 기록														
욕구 재점검	1) 건강관리를 하기위해 추가적으로 불편한 부분	· 건강관리 관련 돌봄자나 가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														
	2)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	·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해결우선순위 욕구를 파악														

항목		작성방법
5. 기타 복지 지원의 필요성		
기타 복지지원의 필요성		· 가족 내 안전, 교육, 고용, 권익보장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한 경우에 체크 예) 고용(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파악되어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할 때 직업재활-직업훈련 및 취업
사정 종합 결과표		
욕구	1. 진단 및 치료 자원의 접근	· 건강관리에 있어 진단 및 치료 필요도와 요구도에 대한 사정 · 진단 및 치료 필요(욕구)가 있을 경우, 건강관리에 있어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의료 기관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물리적 제한의 문제로 인한 방문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도와 요구도가 있는 경우 등 사정 · 진단, 치료, 재활, 간호 등을 제외한 기타 건강관리의 필요도가 있는 경우 사정
	2. 건강 관리와 유지 환경조성	· 건강관리의 장애물로 주거 및 안전 상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여가/문화 활동 참여 등 지원필요도와 요구도, 참여에 장애물이 있는지 사정 · 기타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요구도와 이에 대한 참여에 장애물이 있는지 사정
	3. 자기 건강관리 역량강화	· 건강관리를 위한 자원에 대한 정보(예: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회건강검진,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 방문재활 등)와 자원 활용하는 능력, 건강관리를 위한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능력, 병식, 건강관련하여 의사결정능력 등을 사정 등을 사정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필요도와 요구도에 대한 사정 ·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사정
	4. 주돌봄 자와 자원의 반응역량 강화	· 건강관리를 위한 주돌봄자의 돌봄수행역량도, 돌봄수행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필요도와 요구도에 대한 사정 · 건강관리를 위한 주돌봄자의 돌봄 제공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와 수용의 정도를 사정 · 주돌봄자와 지역사회 자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사정
	5. 기타 복지 욕구	·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위에 기술한 욕구 이외의 복지욕구 사정 · 추가로 복지 필요(욕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하는데의 필요한 내용 기록
강점, 자원		· 건강관리에 있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기술 예) 건강관리 동기, 건강관리 성공 경험, 건강관리 지지체계 등 예) 예전에 다니던 재활병원의 치료사와의 관계가 좋음 10년 이상 이용하던 복지관이어서 시설구조를 잘 알고 있어 혼자 방문하여도 이용가능함

항목	작성방법
한계점	· 건강관리에 있어 장애물(한계점)을 기술 예) 건강관리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낮은 동기 등 예) 지역 내 자원의 고갈, 지원체계의 소극적 태도 등 예)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이 2시간을 제한되어 있어 병원 진료시 장시간 머물 경우 대처가 어려움 예) 재활치료 중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며 재활 치료를 거부함.
우선순위	·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 변화되길 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기록 · 우선순위는 대상자, 돌봄자, 의뢰자, 사례관리자와 합의된 우선순위를 하되, 대상자가 원하는 우선순위와 건강권과 직결된 욕구를 우선으로 함 · 기록방식 : 1, 2....
종합의견	· 욕구사정을 하계된 근거를 제시 · 사정이 미진하거나 더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을 첨언 · 향후 사례관리 방향이나 지원 방법 등을 제시 · 사정 과정에서 알게된 대상자의 특이점 및 진행과정에서의 유의점을 기술
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욕구 및 강점, 자원,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체크

사정 종합 결과표		
영역	욕구 (건강보건관리 어려움)	우선순위
1. 진단 및 치료 자원의 접근 (건강관리 필요성)		
2. 건강관리와 유지 환경조성 (건강관리 장애물)		
3. 자기 건강관리 역량강화		
4. 주돌봄자와 자원의 반응역량 강화		
5. 기타 복지지원의 욕구		
강점, 자원		
한계점		
종합의견		
대상자 선정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미선정 (사유: ☐ 타기관 의뢰 ☐ 대상자 거부(미동의 대상자) ☐ 일반건강보건관리대상자)	

서식 10

경과지록지

경과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일자		담당자	
상담 방법	○ 내소 ○ 방문 ○ 전화 ○ 온라인 ○ 기타()		
상담 대상자유형	□ 대상자 □ 보호자 □ 기관 담당자 □ 기타()		
상담 대상자			
내 용			

서식 11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 점검 결과	영역	계획	서비스명	시작 일자	종료 일자	횟수	제공 기관	이행여 부	변경 내역	변경 사유	
향후 계획											
비 고											

서식 12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사후관리 기록지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사후관리 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작성일자		
상담방법	☐ 내소(내원) ☐ 가정방문 ☐ 전화 ☐ 온라인 ☐ 기타()	
대상자 주요구 확인	기존 욕구	
	현재 욕구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후 검토의견		
비고		

작성안내(수정)

항목	작성방법
작성일자	매 점검시 점검일자를 기록
점검자 서명	점검한 담당자 서명을 작성
주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주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를 기록(시스템 등록시 자동 연계)
상담방법	대상자와 상담 방법(내소(내원), 방문, 전화 등) 기록
대상자 주욕구 확인	사례관리 대상자의 기존 욕구를 작성하고 현재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
모니터링 내용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작성
모니터링 후 검토의견	모니터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의견 작성

서식 13-1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지역사회서비스 의뢰서 I

※ 기관에 연계를 위하여 서면의뢰 시 작성

의뢰일자			의뢰하는 기관			의뢰자명			전화번호			
의뢰 받는 기관	형태	☐ 보건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케어안내창구 ☐ 복지기관 ¹⁾ ☐ 상급종합병원 ☐ 기타 의료기관 ☐ 장애인건강주치의 ☐ 기타 ²⁾										
	기관명											
	주소	시(도) 구(군) 동(면) 까지만 기재										
기본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전화 번호	환자				보호자						
	행정 주소지											
	퇴원 후 거주지 (실거주지)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 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장기요양등급		☐ 해당없음 ☐ 신청 (○ 신청예정 ☐ 진행 중 ☐ 완료 : 등급) ☐ 기 등급자 : 등급 ☐ 추후 재 의뢰										
가구 및 돌봄	돌봄제공자	☐ 본인 ☐ 가족(관계:) ☐ 유급 간병인 ☐ 요양보호사 ☐ 기타(관계:)										
	가구형태	☐ 1 인가구 ☐ 부부가구 ☐ 자녀동거 ☐ 기타()										
건강 수준	진단명					발병일	년 월 일					
	만성질환	☐ 없음 ☐ 당뇨 ☐ 고혈압 ☐ 기타 ()										
	인 지 (MMSE)	() / 30점										
	통 증	☐ 없음 ☐ 있음(부위:) ☐ 간헐적 ☐ 지속적										
	피 부	☐ 양호 ☐ 불량 ☐ 욕창(부위: 단계:)										
	보행능력	☐ 완전자립 ☐ 도움필요 ☐ 걷지 못함										
	보조기구	☐ 도보 ☐ 지팡이 ☐ 보행기 ☐ 휠체어 ☐ 기타()										
	화장실 사용하기	☐ 화장실 (□완전독립 □도움필요) ☐ 기저귀 ☐ 이동식변기 ☐ 기타()										
	식사 하기	기능	☐ 완전독립 ☐ 도움필요 ☐ 행위 발생 안함									
		연하 장애	☐ 없음 ☐ 있음									

대상자 요구 사항		
보호자 요구 사항		
희망 서비스 (중복 선택 가능)	☐ 조기적응프로그램	☐ 장애이해하기 ☐ 일상생활 동작관리 ☐ 장애별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 관절운동, 근력운동 ☐ 보행운동 ☐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 장애별 자조모임 ☐ 동료상담 ☐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소모임 등
	☐ 자원연계 서비스	☐ 가족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보건소 내 연계서비스 등(방문, 금연, 절주 비만 등)
	☐ 기타	
첨부 서류 (중복선택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기능평가결과 ☐ 기타 ()	
상기인을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뢰일: 년 월 일 담당자 _____ (연락처:)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연계 계획에 동의합니다. 환자 성명 _____ (서명:)		

- 1) 복지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관, 자활센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장애인스포츠허브
- 2) 기타 : 복지기관을 제외한 민간서비스단체 등

서식 13-3

서비스 회송서

서비스 회송서

의뢰일자		의뢰하는기관		의뢰자명		전화번호	
의뢰 받는 기관	형태	○ 보건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케어안내창구 ○ 복지기관 ¹⁾ ○ 상급종합병원 ○ 기타 의료기관 ○ 장애인건강주치의 ○ 기타 ²⁾					
	기관명						
	주소	시(도) 구(군) 동(면) 까지만 기재					
기본 사항	성명 /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전화번호	환자		보호자			
	행정 주소지						
	퇴원 후 거주지 (실거주지)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 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기본사항	방문일자	년 월 일					
	방문자	☐ 사회복지사 ☐ 환자 ☐ 보호자 () ☐ 기타 ()					
	방문목적						
환자 및 보호자 요구사항							
희망 서비스 (중복선택 가능)	☐ 조기적응프로그램		☐ 장애이해하기 ☐ 일상생활 동작관리 ☐ 장애별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 관절운동, 근력운동 ☐ 보행운동 ☐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 장애별 자조모임 ☐ 동료상담 ☐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소모임 등				
	☐ 자원연계 서비스		☐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보건소 내 연계서비스 등(방문, 금연, 절주 비만 등)				
	☐ 기타						
첨부파일							
상기인을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연계 계획에 동의합니다. 환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서식 1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만족도 조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시는 자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오직 통계 처리만을 위해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 년 월 일

응답자 : _____(인)

설명자 : _____(인)

조사 지역

_____시/도 _____사군구 _____보건소(보건지소)

※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경제상태는? ① 상 ② 중 ③ 하 ④ 무응답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무직 ② 자영업 또는 농업 ③ 직장인 ④ 학생
 ⑤ 보수를 받지 않는 일(자원봉사 등) ⑥ 주부 ⑦ 기타 _____
5. 장애의 종류는?
 ① 뇌병변장애 ② 지체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기타 _____
6. 장애의 장애 정도는?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③ 기타(예비장애인)

I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관련

1. 지난 한달(30일)동안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건강이 나쁘다 ② 건강이 나쁜편이다 ③ 비교적 건강하다
④ 매우건강하다

2. 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까? ()

- ①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완전의존) ②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③ 약간 도움이 필요하다 ④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완전독립)

3.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3-1. '예'라고 답한 경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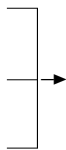
- ① 배우자 ② 부모·자녀·형제 등 가족 ③ 요양보호사 ④ 활동보조인
⑤ 기타()

4. 귀하는 혼자서 외출할 수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5.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외출을 하셨습니까? ()

- ① 거의 매일
② 주 1~3회
③ 월 1~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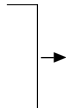


5-1. 외출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중복선택 가능

- ① 병원 진료 ② 산책, 가벼운 운동
③ 지역시설 이용 및 행사참여 ④ 친척, 친구, 이웃방문
⑤ 쇼핑(물건사기 등) ⑥ 통근·통학
⑦ 기타()

- ④ 1년에 10회 이내
⑤ 전혀 외출하지 않음



5-2.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중복선택 가능

- ①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② 외출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없어서
③ 교통이 불편해서
④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⑤ 기타()

6. 지난 2주간(14일) 만성, 급성질환, 사고, 중독 등으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꼈던 날은 총 며칠이나 됩니까? ()

- ① 1~3일 ② 4~6일 ③ 7~9일 ④ 10~13일 ⑤ 14일(매일)
⑥ 없음 ⑦ 모름

II 서비스 이용 관련

1. 올 해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다? ()

- ①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월 1회 ⑤ 월 2~3회
⑥ 분기별 1회(연 4회) ⑦ 연 1회 ⑧ 기타 _____

2. 제공받은 재활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2-1. 아니오인 경우, 서비스를 더 제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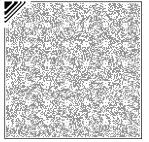
- ① 이동이 어려워서 ② 적절한 서비스가 없어서 ③ 시간이 부족해서
④ 참여제한이 있어서 ⑤ 기타 _____

3. 주로 어떤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까? ()

- ① 보건소 내소 ② 가정방문 ③ 전화상담 ④ 기타 _____

4. 주로 어떤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까?

구분	세부프로그램	이용빈도(회)
① 건강관리 서비스	① 배뇨·배변관리	연 _____ 회
	② 욕창·피부관리	연 _____ 회
	③ 영양관리	연 _____ 회
	④ 구강관리	연 _____ 회
	⑤ 통증관리	연 _____ 회
	⑥ 연하관리	연 _____ 회
	⑦ 호흡관리	연 _____ 회
	⑧ 만성질환관리	연 _____ 회
	⑨ 기타	연 _____ 회



구분	세부프로그램	이용빈도(회)
②재활훈련 서비스	①재활운동교육 ②일상생활동작훈련 ③관절구축예방교육 ④2차장애예방교육 ⑤생활안전교육 ⑥기타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③사회참여 서비스	①외출/나들이/체험 ②동료상담/자조모임 ③스포츠/레크레이션 ④가족소모임 ⑤기타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④자원연계 서비스	①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②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③의료기관과연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④장애인복지관과 연계 ⑤자활센터와 연계 ⑥장애인단체와 연계 ⑦행정기관과 연계 ⑧교육기관과의 연계 ⑨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⑩장애인 운전 지원 ⑪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⑫보조기기센터와 연계 ⑬건강검진 지원 ⑭기타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연____회
⑤자기역량 서비스	①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②기타	연____회 연____회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서비스		연____회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연____회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연____회

Ⅲ 서비스 만족도 관련

1. 귀하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다음은 서비스 세부만족도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2. 서비스 과정 만족도

평가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담당자는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충분히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담당자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서비스의 주 당 진행 횟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⑤ 서비스의 1회 당 진행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3. 서비스 결과 만족도

평가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제공받은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제공받은 서비스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주위사람들은 서비스를 통해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내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 구성원들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⑤ 제공받은 서비스가 나에게 적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4. 서비스 체감 만족도

평가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서비스 이용에 소요한 시간 및 노력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내가 제공받은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제공받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5.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평가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무슨일이 있을 때 쉽게 사업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내가 필요한 형태(방문, 내소, 전화 등)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	------------------------

IV 대상자 평가

1.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수행정도 \ 평가항목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①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0	1	3	4	5
②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③ 식사(feeding)	0	2	5	8	10
④ 용변(toilet use)	0	2	5	8	10
⑤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수행정도	평가항목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정 도도움 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 으로 수행
⑥	착탈의(dressing)	0	2	5	8	10
⑦	대변조절(bowel control)	0	2	5	8	10
⑧	소변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⑨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⑩	휠체어 이동(wheelchair) ¹⁾	0	1	3	4	5
⑪	이동(chair/bed transfer)	0	3	8	12	15
점수(총점 100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주: ¹⁾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2. 삶의 질(EQ-5D)

평가항목	수행정도
①운동능력	☐ ① 나는 걷는 데 지장이 없다 ☐ ② 나는 걷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 ③ 나는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②자기관리	☐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 데 지장이 없다 ☐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③일상활동 (예 : 일, 공부, 가사일, 여가 활동 등)	☐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④통증/불편	☐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⑤불안/우울	☐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점수	전산(PHIS)에서 산출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3. 나의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표현하는 것을 돕고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100'으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상태를 '0'으로 표시한 눈금자를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눈금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건강상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상태

점수(총점 100점)	점
-------------	---

* 기타 개선할 사항이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식 15

비대면 건강보건관리서비스 평가

기본정보(이름/성별/나이 표기 필요)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일자	년	월	일
	키 (cm)	몸무게 (kg)	BMI()	전화번호	☐ 대상자: ☐ 보호자:				
장애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발달 ☐ 기타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주진단명	☐ 직접 기재()				
의사소통	☐ 완전가능 (표현방법:)			☐ 부분적 가능(표현방법:)			☐ 불가능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도움 필요 ☐ 도움 필요 없음				
만성질환 관리									
유무	종류	질환 이해 여부		약물 복용 여부		약물 복용정도		주기적 병원원 진료 여부	
☐ 있음	☐ 고혈압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당뇨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고지혈증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우울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비만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기타()	☐ 이해함 ☐ 이해 못함		☐ 약물 복용 ☐ 미복용		☐ 잘함 ☐ 못함		☐ 진료 ☐ 미진료	
☐ 없음									
만성질환 관리필요여부		☐ 필요 ☐ 필요없음 (비고) 현재 만성질환 관리 방법 등 추가사항 작성							
장애 관리(2 차 장애예방)									
유형	장애유무		상태				관리유무		
육창	☐ 없음 ☐ 있음		☐ 상태(stage): _____ ☐ 부위				☐ 관리 ☐ 미관리		
배뇨장애	☐ 없음 ☐ 있음		☐ 배뇨곤란(참지 못함, 잦은 배뇨, 느낌 없음 등)				☐ 관리 ☐ 미관리		
배변장애	☐ 없음 ☐ 있음		☐ 변비 ☐ 실변				☐ 관리 ☐ 미관리		
낙상경험 (최근 1 년)	☐ 없음 ☐ 있음		☐ 시기 () ☐ 내용 ()				☐ 관리 ☐ 미관리		
연하장애	☐ 없음 ☐ 있음		☐ 음식종류()				☐ 관리 ☐ 미관리		
통증유무	☐ 없음 ☐ 있음		☐ 부위() ☐ 강도 (0 1 2 3 4 5 6 7 8 9 10)				☐ 관리 ☐ 미관리		
			☐ 부위() ☐ 강도 (0 1 2 3 4 5 6 7 8 9 10)				☐ 관리 ☐ 미관리		
			☐ 부위() ☐ 강도 (0 1 2 3 4 5 6 7 8 9 10)				☐ 관리 ☐ 미관리		
관절구축	☐ 없음 ☐ 있음		상지	☐ 어깨 ☐ 팔꿈치 ☐ 손	☐ 좌 ☐ 우 ☐ 좌 ☐ 우 ☐ 좌 ☐ 우	☐ 관리 ☐ 미관리			
			하지	☐ 고관절 ☐ 무릎 ☐ 발목	☐ 좌 ☐ 우 ☐ 좌 ☐ 우 ☐ 좌 ☐ 우				
운동기능	☐ 외상상태(거동불능) ☐ 의존적 실내보행		☐ 앉아있을수 있음 ☐ 독립적 실내보행		☐ 기립가능 ☐ 실외보행		☐ 관리 ☐ 미관리		
장애관리 필요여부		☐ 필요 ☐ 필요없음 (비고) 현재 장애 관리 방법 등 추가사항 작성							
서비스 제공여부 및 동의									
서비스 제공 동의	☐ 동의						☐ 비동의		
서비스 제공여부	☐ 해당						☐ 미해당		
기타의견 작성									

서식 16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종결지**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종결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발병일:						

단기목표	
장기목표	
향후계획	
대상자변화 (성과)	
종결유형	☐ 장기목표 달성 ☐ 단기목표 달성 ☐ 이관 ☐ 상황호전() ☐ 연락두절 ☐ 이사 또는 사망 ☐ 자체종결 ☐ 거절이나 포기()
비 고	

서
식

참고

사례관리 시 참고 서류

〈참고 1〉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대상자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번호	질 문	응답	
1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가?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를 위하여 스스로(또는 도움을 받아서) 약물복용, 병원방문 등 건강관리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2번 문항으로)
	* 예로 응답한 경우 정보제공, 복지관 등 연계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2번 문항으로		
2	보건의료적 복합문제가 있는가?		
	☐ 주된 장애로 집중치료 필요 ☐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필요 ☐ 기타 _____	☐ 예 (3문항으로)	☐ 아니오
3	돌봄자가 있는가?	☐ 예 (4번문항으로)	☐ 아니오
4	필요시 병원방문 등 의료적 관리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필수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원하는 서비스 없음 ☐ 병원 외래 등 기존서비스 이용 ☐ 기타()
	* 예로 응답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최종 분류 *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사유 체크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분류 전 최종 서비스 요구도 확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담당인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가능(선정사유 작성)

작성안내

번호	항목	작성방법
1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가?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를 위하여 스스로(또는 도움을 받아서) 약물복용, 병원방문 등 건강관리가 가능한가?	건강관리를 위하여 스스로(또는 도움을 받아서) 약물복용, 병원 방문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
2	보건의료적 복합문제가 있는가?	장애 또는 질병으로 집중치료, 긴급입원, 검사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작성
3	돌봄자가 있는가?	대상자의 가족, 친척, 돌봄지원사 등 돌봄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4	필요시 병원방문 등 의료적 관리가 가능한가?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방문 등 의료적 관리가 스스로(또는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지 확인하여 작성
필수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가 있는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최종 분류 전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 파악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사유 체크

〈참고 2〉 서비스 계획

서비스 계획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서비스 제공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공방법
☐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장애인건강 보건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만성질환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운동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영양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구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정신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건소 CBR지원	☐ 사업 역량강화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자원연계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교육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정보제공서비스	☐ 리플릿, 책자제공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사업안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기관안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편의제공서비스	☐ 이동지원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동행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서비스 예약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돌봄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주거지원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 재활의료서비스	□ 성인재활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소아청소년재활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재활교육 및 훈련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조기기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건강검진 사후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애인건강주치의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서비스	□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 보건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복지서비스 등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의료동행서비스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보건 및 건강상담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여성장애인건강관리교실	□ 임신출산 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직접제공(□대면 □비대면) □ 연계
	□ 기타 _____	□ 서비스명 : _____	□ _____
세부서비스 계획			

〈참고 3〉 서비스 제공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서비스 제공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공일자	제공방법	제공자	종료
☐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					☐
☐ 장애인건강 보건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만성질환관리				☐
		☐ 운동관리				☐
		☐ 영양관리				☐
		☐ 구강관리				☐
		☐ 정신건강관리				☐
		☐ 기타 _____				☐
		☐ 보건소 CBR지원	☐ 사업 역량강화			
	☐ 자원연계지원					☐
	☐ 교육지원					☐
	☐ 기타 _____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정보제공서비스	☐ 리플릿, 책자제공				☐
		☐ 사업안내				☐
		☐ 기관안내				☐
		☐ 기타 _____				☐
	☐ 편의제공서비스	☐ 이동지원				☐
		☐ 동행서비스				☐
		☐ 의료서비스 예약				☐
		☐ 돌봄서비스				☐
		☐ 주거지원서비스				☐
		☐ 기타 _____				☐
	☐ 기타 _____	☐ _____				☐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 서비스	□ 재활의료서비스	□ 성인재활의료서비스				□	
		□ 소아청소년재활의료서비스				□	
		□ 재활교육 및 훈련				□	
		□ 보조기기				□	
		□ 기타 _____				□	
	□ 건강검진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 건강검진 사후건강관리				□	
	□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애인건강주치의서비스				□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 기타 _____	□ _____				□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서비스	□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 보건서비스				□	
		□ 의료서비스				□	
		□ 복지서비스 등				□	
		□ 의료동행서비스				□	
		□ 보건 및 건강상담				□	
		□ 기타 _____				□	
	□ 여성장애인건강관리교실	□ 임신출산 건강관리				□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 기타 _____				□	
	□ 기타 _____	□ 서비스명 : _____	□ _____				□
	세부서비스 계획						

〈참고 4〉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세부서비스 제공 기록지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자	
장애정보	장애유무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유						
	무	(○ 신청예정 ○ 신청중 ○ 미신청)(입력:) 발병일:					
작성일자							
대상자요구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예정일:			서비스 종결 예정일:			

일시				장소			
방법	☐ 대면(☐ 내소 ☐ 가정방문 ☐ 기타_____) ☐ 비대면(☐ 유선 ☐ 온라인 ☐ 기타_____)						
협력기관	기관명			부서명 (진료과)			
	성명/직위	/		연락처/이메일			
대상자 욕구 및 목적							
제공 내용							
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필요시 추가 작성]							
미등록 참석자	☐ 가족 ☐ 활동지원사 ☐ 기관 관계자 ☐ 기타				미등록 참석인원	명	
강사정보	기관명			부서명			
	성명/직위	/		연락처/이메일			
	교육자료	☐ 자료명 ☐ 자료명		☐ 자료형태 ☐ 자료형태	☐ 업로드 ☐ 업로드		

〈참고 5〉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동의서 및 계획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동의서 및 계획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계획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 일정	서비스 시작 예정일 _____, 서비스 종결 예정일 _____		
서비스 제공계획	우선 순위	영역	계획
	종합평가 결과표 자동연계	종합평가 결과표 자동연계	
비고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상기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사례관리 계획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더 나은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들과 본인 및 가족의 기초정보 및 서비스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년 월 일 가족(돌봄자): (서명) 관계:
 년 월 일 사 례 관 리 자: (서명)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 발 행 일 2024년 3월
-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편집·인쇄 / 대승사